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목 차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영양]

 주요 변경내용	5
I. 개요	13
1. 사업목적 및 목표	14
2. 추진배경	15
3. 법적근거 및 추진경과	26
II. 추진방향	29
1. 추진전략	30
2. 추진체계	31
III. 사업내용	33
1. 건강식생활 실천 국민 인식 제고	34
2.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	35



IV. 사업지침 39

1. 영양플러스사업 40
2. 건강과일바구니사업 104
3.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 영양관리사업 111
4. 어르신 영양관리사업 115

V. 행정사항 123

1. 영양플러스사업 현황 및 실적보고 124
2. 현장 모니터링 126
3. 사업 설명회 126

VI. 참고자료 127

VII. 영양플러스사업 관련 서식 139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영양]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영양]



주요 변경내용





주요 변경내용

구분	2020년(개정 전)	2021년(개정 후)	비고	쪽수	
2. 개요					
2. 추진 배경	영양관련 지표현황				
	성과지표 현황 및 통계치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영양분야 성과지표		15~25	
3. 추진 방향	추진전략				
	사업영역 및 세부사업	어린이 및 청소년 ●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기반 어린이 영양관리사업	어린이 및 청소년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교실 기반 어린이 영양관리사업	30	
5-1. 영양플러스사업					
2. 대상 선정 기준 및 방법	1.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기준	※ 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	※ 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 수유부(영유아는 예외)는 중복 수혜 불가하므로 사전안내 필요	42	
	건강보험료 기준	➡ 2020년 가구규모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표) - <표 생략>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된 실질적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으로 관리시스템에 입력	➡ 2021년 가구규모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표) - <표 생략> 1) <삭제> 1)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으로 관리시스템에 입력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 소득표 (80%,65%)	43
	가구원수 선정	●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이 때 2촌의 개념은 해당 대상자 및 배우자(영유아의 경우 해당 대상자 부모 또는 보호자)를 기준으로 함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대상 영유아(태아 포함) - 임산부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 배우자는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미혼자녀(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자녀는 제외)	가구원의 범위 개정	44

구분	2020년(개정 전)	2021년(개정 후)	비고	쪽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여 산정함 - 대상자나 배우자의 부모(또는 영유아의 조부모) 및 형제자매(또는 영유아부모/보호자의 형제자매)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지만 건강보험증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정함 ● 태아도 가족 수에 포함됨 ●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2촌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자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 시킬 수 있음 ※ 포함된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하여 소득기준(건강보험료 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가족 수에 근거하여 판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부모의 이혼으로 영아의 형제자매가 이혼한 다른 부(조부모 등 포함) 또는 모(외조부모 등 포함)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 임신부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 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이 부양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영유아의 부모(또는 임신부 및 배우자)와 동일한 경우라도 가족 수에 산정하지 않음 ● 가구원수 포함 대상 기준에 포함 <삭제> ● <삭제> 		
<p>건강 보험료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증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를 통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한 후, 사본을 보관함 ※ 당해 연도 발급일자 건강보험증을 제출 ※ 행정정보공공이동센터를 통하여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열람한 경우 사본을 보관하지 않음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한 서류로 이용할 수 있음 ● 건강보험증과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의 대조를 통해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료가 조사되도록 하여야 함 ※ 국제결혼자의 주민등록 조화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을 제출함 ● 세대 내 가입자(피부양자 제외)가 2인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함 - 동일 가입유형(모두 직장 가입자 또는 모두 지역 가입자)인 경우 : 합산액을 직장 또는 지역 보험료 기준치와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동일) ● 건강보험료 산출 - 원칙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부모 중 한명이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 :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모가 각각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 : 부모의 보험료 합산*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 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부모 중 1인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A)이고, 다른 1인은 배우자가 아닌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B)의 피부양자로 등록 : A보험료와 B 보험료합산 - 부모가 다른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록 : 해당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모가 각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 : 부모가 피부양자로 각각 등록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p>건강보험료 산출 사례 및 맞벌이가구 합산방법 개정</p>	<p>44</p>

구분	2020년(개정 전)	2021년(개정 후)	비고	쪽수
	- 다른 가입유형(직장+지역 가입자 가구)인 경우 : 합산액을 혼합(직장+지역) 보험료 기준치와 비교			
영양평가 종류별 영양위험 요인 판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시 유의사항> 신설 ※ 빈혈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영양섭취상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본 사업지침에서 제시하는 영양 위험요인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여 대상자가 보유한 위험 요인을 최대한 파악하고,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영양상담교육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 단, 평가 진행이 어렵거나 평가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평가가 가능한 항목의 평가를 시행하여 영양위험요인을 파악하도록 함 		47
3) 영양섭취 상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정기준 ● 영양소 섭취상태에 의한 영양위험 판정은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영양소섭취 기준(DRI, 2015)에 근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정기준 ● 영양소 섭취상태에 의한 영양위험 판정은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영양소섭취 기준(DRI, 2020)에 근거함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영양섭취 판정기준 	2020 한국인영양소 섭취기준 반영	52
3. 대기자 관리				
우선순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자 명단에 등록된 유아나 출산·수유부가 대상자 등록 시점에 이미 자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음 - 영아나 임신부의 경우 유아나 출산·수유부로 전환하여 등록할 수 있음 - 또한 대기자로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경우, 대기자 등록 당시 영양 평가를 실시하였더라도 대상자 등록을 위해 자격재평가가 필요함 ※ 대기자 접수 시 우선순위 원칙과 대기 중 자격기간이 만료되면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자 명단에 등록된 유아나 출산·수유부가 대상자 등록 시점에 이미 자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음 - 영아나 임신부의 경우 유아나 출산·수유부로 전환하여 등록할 수 있음 - 또한 대기자로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경우, 대기자 등록 당시 영양 평가를 실시하였더라도 대상자 등록을 위해 자격재평가가 필요함 ※ 대기자 접수 시 우선순위 원칙과 대기 중 자격기간이 만료되면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 		55

구분	2020년(개정 전)	2021년(개정 후)	비고	쪽수
		※ 유아 및 출산수유부의 경우는 대기 중 자격기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최소 사업 참여기간인 6개월을 고려하여 대기자로 등록 관리할 것을 권장		
2. 대상 선정 기준 및 방법	추가 우선순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도 건강보험료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의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도 건강보험료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의 65%) 		56
	4. 자부담 대상 판정 및 적용			
	자부담 판정 건강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도 건강보험료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의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도 건강보험료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의 65%) 		57
3. 대상자 관리	3. 대상자 영양상태 평가 및 자격변동 관리			
	대상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인정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음 (생략) 관할 보건소에서 제공받은 식품을 교환 또는 판매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인정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음 (생략) 관할 보건소에서 제공받은 식품을 교환 또는 판매,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대상 자격이 취소된 경우 사업재등록 불가함 - 3회 이상 사전연락 없이 영양교육이나 보충식품을 받지 않은 경우 - 자격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 제공받은 보충식품을 교환 또는 판매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대상 자격이 취소된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전체 사업재등록 불가함 - 3회 이상 사전연락 없이 영양교육이나 보충식품을 받지 않은 경우 - 자격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 제공받은 보충식품을 교환 또는 판매, 타인에게 제공 하는 경우 <p>※ 단, 적용 시에는 사업 참여 전에 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 지도록 해야 함</p>		65
4. 영양 교육 상담	1. 영양교육 및 상담의 원칙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방법 : 집단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 교육 보건소 별 지역특성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위의 3가지 방법을 이용한 적절한 영양교육 및 상담 계획 수립 최소한 1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접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대면 교육을 실시 보충식품을 지원받지 않지만 관내 임신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영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는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최소한 1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접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교육 및 상담 실시 (현행과 같음) 		67

구분	2020년(개정 전)	2021년(개정 후)	비고	쪽수
2.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온라인 영양교육 과정 개설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영양교육과정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으나, 다음의 사항을 권장함 - (우선순위 대상) 출산 1개월 내 출산부, 맞벌이 부모 가정, 후기 (32~40주) 임신부, 세 자녀 이상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 (참여 횟수) 최소 사업 참여 기간 6개월 기준으로 최대 2회 ※ 폭염, 혹한, 미세먼지 등의 날씨, 질병 등의 문제 발생 시에도 적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영양교육과정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음 -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방법(이수 기준 등)에 따라, 사전에 대상자에게 온라인 교육과정 시스템 사용 방법 등 안내를 실시하고, 보건소별 대상자 교육 관리기준과 일정에 맞는 활용계획 수립 필요 ● <2020년도 신규 교육과정 추가> 	온라인 교육과정 우선순위 대상 및 참여 권장 횟수 삭제	73
2. 식품별 관리기준				
우유 종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수우유가 아닌 일반우유를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보건소의 방침에 따라 일반 우유 섭취가 불가능한 대상에게 특수우유, 호상요구르트, 두유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수우유가 아닌 일반우유를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보건소의 방침에 따라 일반 우유 섭취가 불가능한 대상에게 특수우유, <삭제>, 두유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생략) 		86
4. 보충식품의 전달 방법				
수령 확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대상자에게 정확히 배달되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식품공급업체는 반드시 대상자로부터 수령확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보건소에 보고함 ● 대상자가 식품공급업체나 보건소 등에서 물건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수령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수령확인증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대상자에게 보충식품이 정확히 배달되었는지, 또한 대상자가 보충식품을 수령하였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식품공급업체는 반드시 대상자로부터 수령확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보건소에 보고함 ● 대상자가 식품공급업체나 보건소 등에서 물건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수령확인증을 받아야 함 ※ 단, 대상자가 수령확인증에 직접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문자 또는 유선확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보충식품 전달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코로나19로 인해 대면배송 및 수령증확인증 활용이 어려움	90
대상자 선정 및 관리 관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Q. 임마가 임신 중 사업에 참여하였던 영아의 등록 시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마가 임신 중 사업에 참여하였던 영아는 별도의 평가 없이 출생 후 자동등록이 되고 생후 6개월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일(식품배송 시작)은 가능한 생후 6주 이내로 할 것을 권장합니다. 		98
6. 질의 및 답변				

구분		2020년(개정 전)	2021년(개정 후)	비고	쪽수
	소득판정 관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출산 휴가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산출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산휴가는 휴직이 아니고 '재직인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건강보험료 산출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99
6. 행정사항					
1. 사업 현황 실적 보고	주요 입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력마감 기한 : 반기별 보고 ('20년 7월 15일/ '21년 1월 15일) ※ 당해 연도 대상자 관리 정보 입력은 매년 말일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력마감 기한 : 반기별 보고 ('21년 7월 15일/ '22년 1월 15일) ※ 당해 연도 대상자 관리 정보 입력은 매년 말일 마감 		124
7. 참고자료					
1. 사업 관련 활용 가능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도 신규 개발매체 추가 		128
8. 영양플러스사업 관련 서식					
	서식 2-1 (필수)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등록 서약서	I. 영양플러스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사항	I. 영양플러스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사항 - (생략) - <u>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는 조제유지원 사업(영유아 대상) 및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임산출산수유부 대상) 등 식품을 지원받는 유사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u>		150

주요변경내용

I. 개요

II. 추진방향

III. 사업내용

IV. 사업지침

V. 행정사항

VI. 참고자료

VII. 관련 서식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영양]

I



개요

- 1 사업목적 및 목표
- 2 추진 배경
- 3 법적근거 및 추진경과

I 개요

1 사업목적 및 목표

■ 목적

-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명 증가를 위한 최적의 영양관리 및 식습관 개선
 - 적절한 영양관리와 영양교육을 통한 의식개선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만성질환 예방 및 삶의 질 향상

■ 목표

- 건강식생활 실천율 제고
- 건강 체중 유지/관리 인구비율 유지
-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강화
 - ※ 보건소별 영양사업 목표는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지표로 설정

■ 국민 영양상태 관련 지표 및 현황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및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영양 분야) 성과지표 각각의 최근 통계치는 아래와 같으며, 본 성과지표의 달성을 위하여 영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성과지표 〉

목표	성과지표	구분	현황 (2019) ¹⁾	목표치 (2021)
건강식생활 실천 인구 비율 증가 또는 유지	1. 적정 수준의 지방 섭취 인구 비율 증가	조율	57.5%	50.0%
	2. 나트륨 2,000mg/일 이하 섭취 인구 비율 증가	조율	26.6%	31.0%
	3. 적정 수준의 당 섭취 인구 비율 증가	조율	-	80.0%
	4. 과일·채소 500g/일 이상 섭취 인구 비율 증가	조율	31.3%	41.2%
	5.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 이용 인구 비율 증가	조율	28.8%	30.0%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강화	6. 아침결식률 감소	조율	28.1%	18.0%

1)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국민건강통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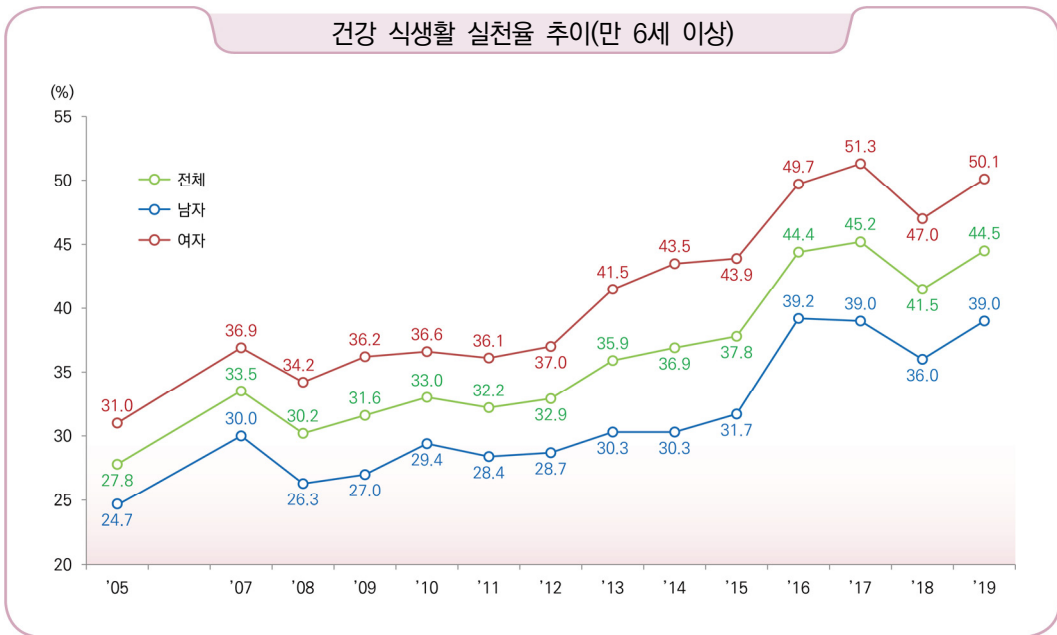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 영양 분야 성과지표 〉

연번	성과지표	현황 (2018)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1	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분율(대표지표)	96.9%	95.0%	97.0%
2	소득 1-5분위 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격차(형평성 대표지표)	11.4%p	-	7.0%p
3	포화지방산을 적정수준으로 섭취하는 인구 비율 (만3세이상)	56.5%	-	74.0%
4	나트륨을 1일 2,300mg 이하로 섭취하는 인구비율 (만9세 이상)	33.2%	30.8%	42.0%
5	과일/채소를 1일 500g이상 섭취하는 인구비율(만 6세 이상)	29.3%	41.2%	41.0%
6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이용률(만7세이상)	26.4%	30.0%	31.7%
7	건강 식생활실천율(만6세 이상)	41.5%	48.6%	50.6%
8	칼슘 적정수준 섭취하는 인구 비율 (만1세 이상)	16.5%	21.0%	21.0%
9	비타민 A 적정수준 섭취하는 인구비율 (만1세 이상)	11.4%	49.2%	24.0%
10	영양섭취부족 노인 인구비율 (75세 이상)	18.5%	26.3%	12.0%
11	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률	13.1%	12.0%	11.0%

※ 각 성과지표는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형평성 지표를 선정

1 건강 식생활 실천율

- 건강 식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국민의 비율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은 44.5%로 전년 대비 3.0%p 증가한 수치를 나타냄(HP2030 목표치 50.6%)
- 특히 여성의 경우 50.1%가 건강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남성(39.0%)보다 11.1%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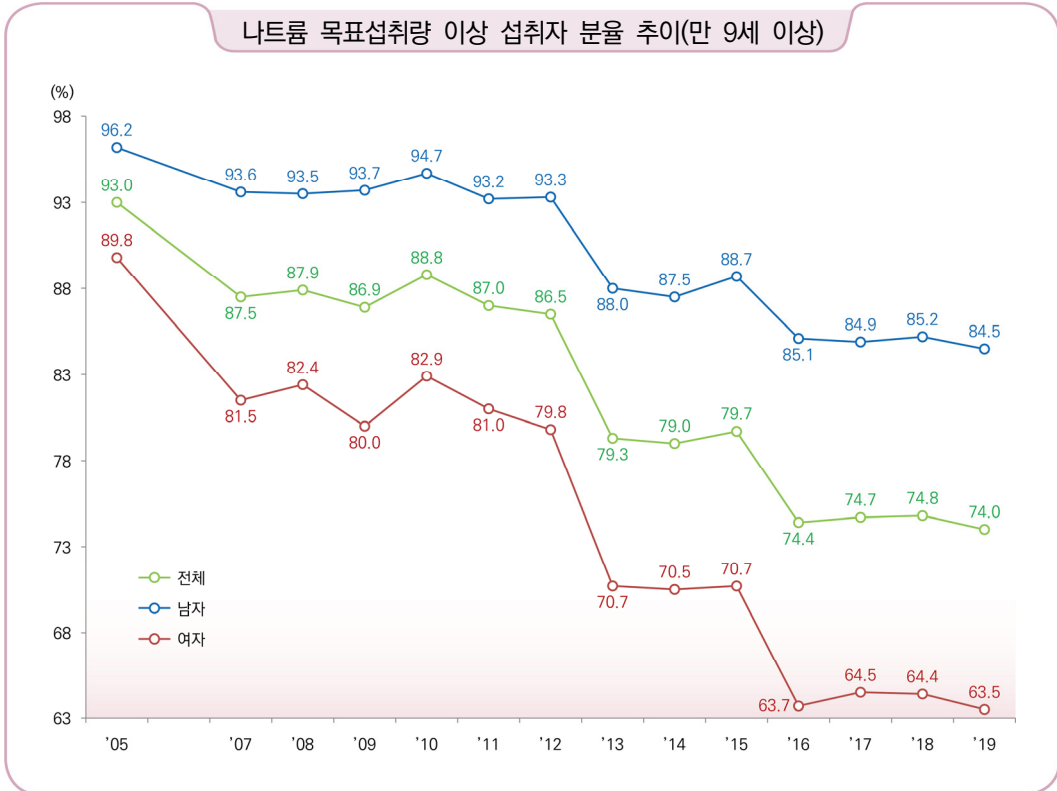


- ※ 건강 식생활 실천율 : 지방, 나트륨, 과일/채소, 영양표시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분을
- (지방) 지방 섭취가 지방 에너지적정비율 내 해당
 - (나트륨) 1일 섭취량이 2,000mg 미만
 - (채소·과일) 과일류와 채소류 섭취량 합계가 500g 이상
 - (영양표시 이용여부)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를 읽는 지 여부에 '예' 로 응답

※ 자료출처 : 2019 국민건강통계

2 나트륨 과잉섭취

- 2012년까지 꾸준히 86.5% 이상 유지되었던 나트륨 과잉 섭취자 비율은 2013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6년부터는 74%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만 9세 이상 국민의 상당수(74.0%)가 여전히 나트륨을 기준치 이상 과잉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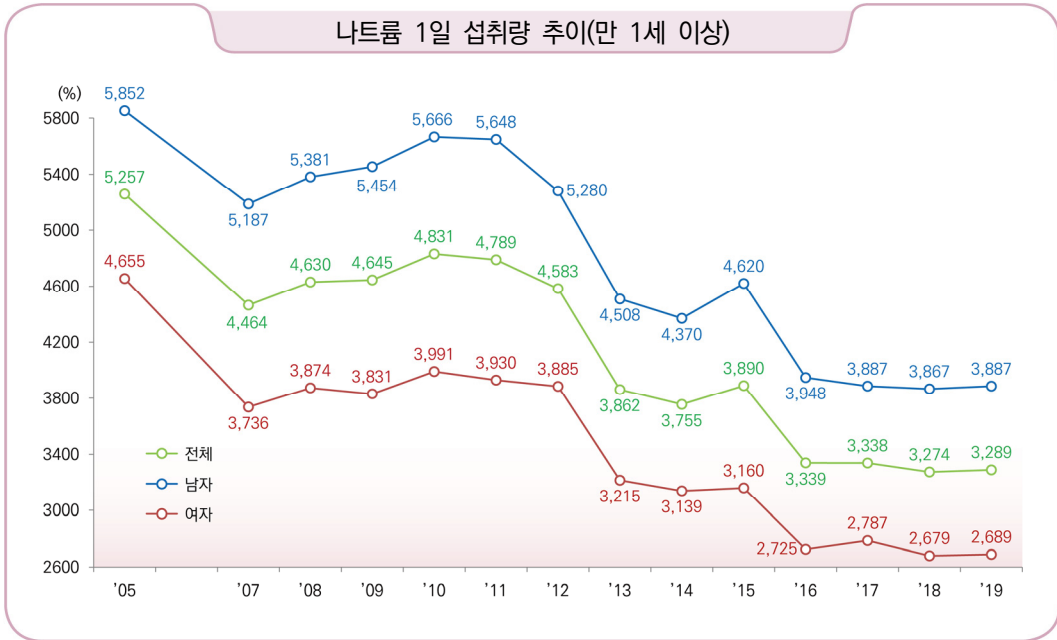


※ 9세 미만은 나트륨 목표섭취량이 없으므로 9세 이상에 대해 산출

※ 목표섭취량 : 제8기 1차년도(2019) 2015 한국인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15)

※ 자료출처 : 2019 국민건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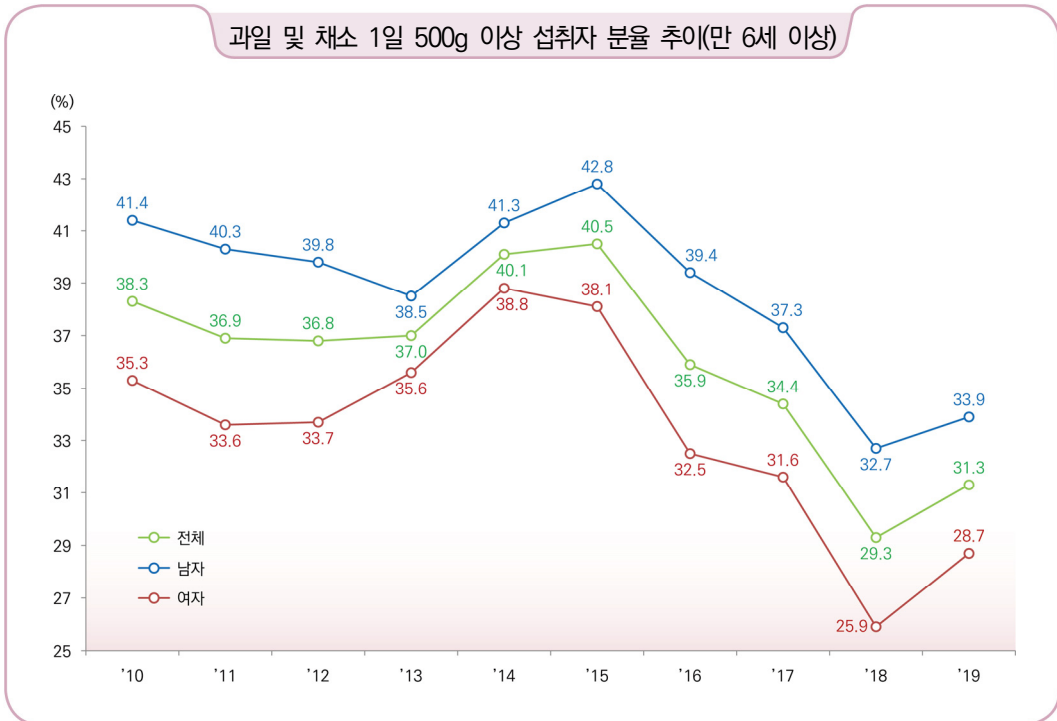
- 나트륨 1일 섭취량 또한 2013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9년 기준 약 3,300mg 정도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0 한국인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정한 만성질환 위험감소를 위한 나트륨 섭취기준인 2,300mg보다 약 1,000mg을 과잉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출처 : 2019 국민건강통계

3) 과일 및 채소 섭취

- 과일 및 채소를 1일 500g 이상 섭취하는 인구 비율은 2015년 이후로 감소하는 경향으로, 2019년 기준 31.3%인 것으로 나타남(HP2030 목표치 : 41.0%)
- 특히, 소득수준 1-5분위의 과일 및 채소 1일 500g 이상 섭취자 분율 격차는 10.6%p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과일 및 채소 섭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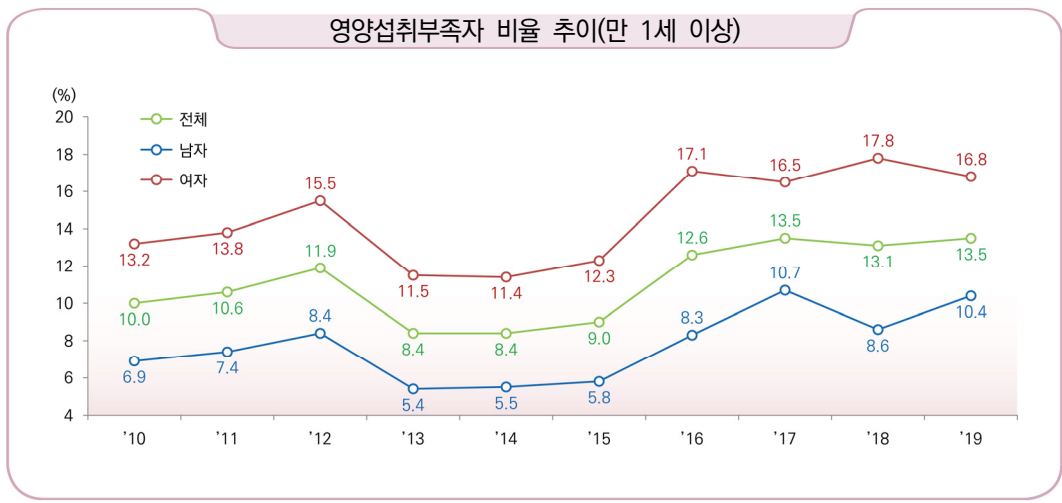


※ 과일류와 채소류 섭취량 합계가 1일 500g 이상인 섭취자 분율

※ 자료출처 : 2019 국민건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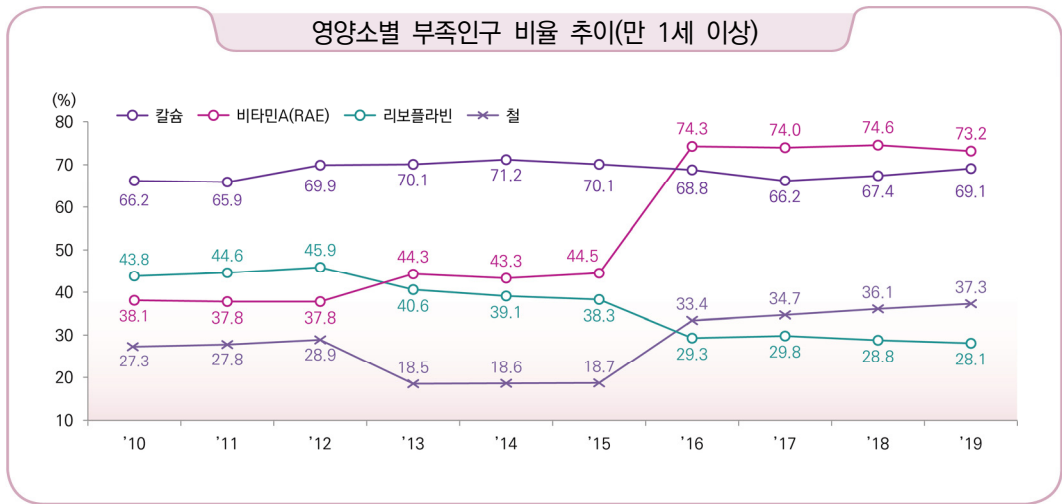
4 영양섭취부족 인구 비율

- 영양섭취부족 인구 비율이 2014년 이래 다시 증가하는 경향으로, 2018년 기준 13.1%인 것으로 나타남



※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 에너지 섭취 수준이 필요추정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평균필요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분율,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 자료출처 : 2019 국민건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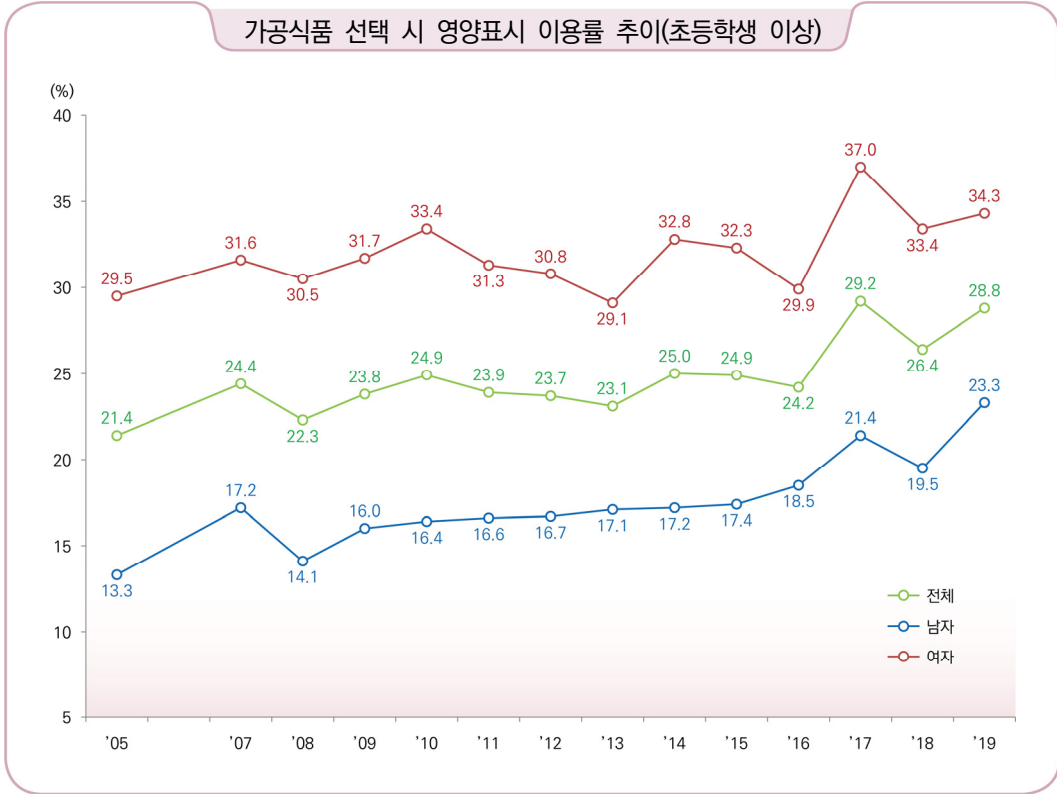
- 그 중 비타민 A, 칼슘의 영양소 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분율은 각각 73.2%, 69.1%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비타민 A는 2015년까지 레티놀 당량(Retinol Equivalents, RE)으로 산출해왔으나, 2016년부터 레티놀 활성 당량(Retinol Activity Equivalents, RAE)으로 산출,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 자료출처 : 2019 국민건강통계

5 영양표시 이용률

- 가공식품을 사거나 고를 때 영양표시를 활용하는 인구비율은 28.8%로 2018년 대비 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HP2030 목표치 :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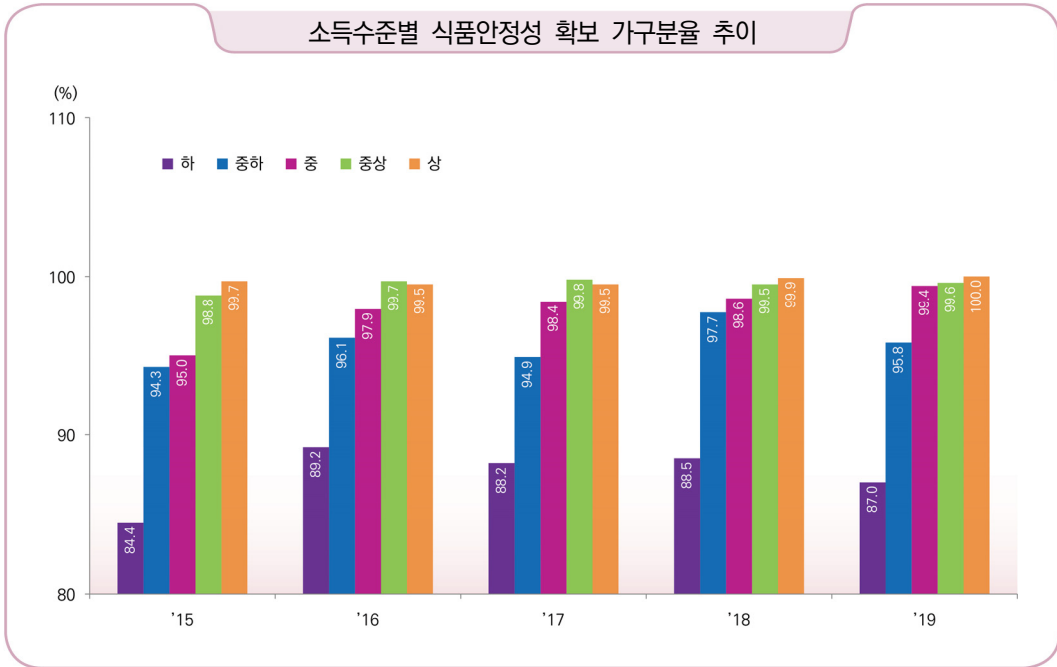


※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 이용률 :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를 읽는 비율

※ 자료출처 : 2019 국민건강통계

6 식품안정성 확보

- 식품안정성이 확보된 가구 비율은 2019년 96.5%(전체)로 나타남(HP2030 목표치 : 97.0%)
- 소득수준 1-5분위의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 비율 격차는 13.0%p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HP2030 목표치 : 7.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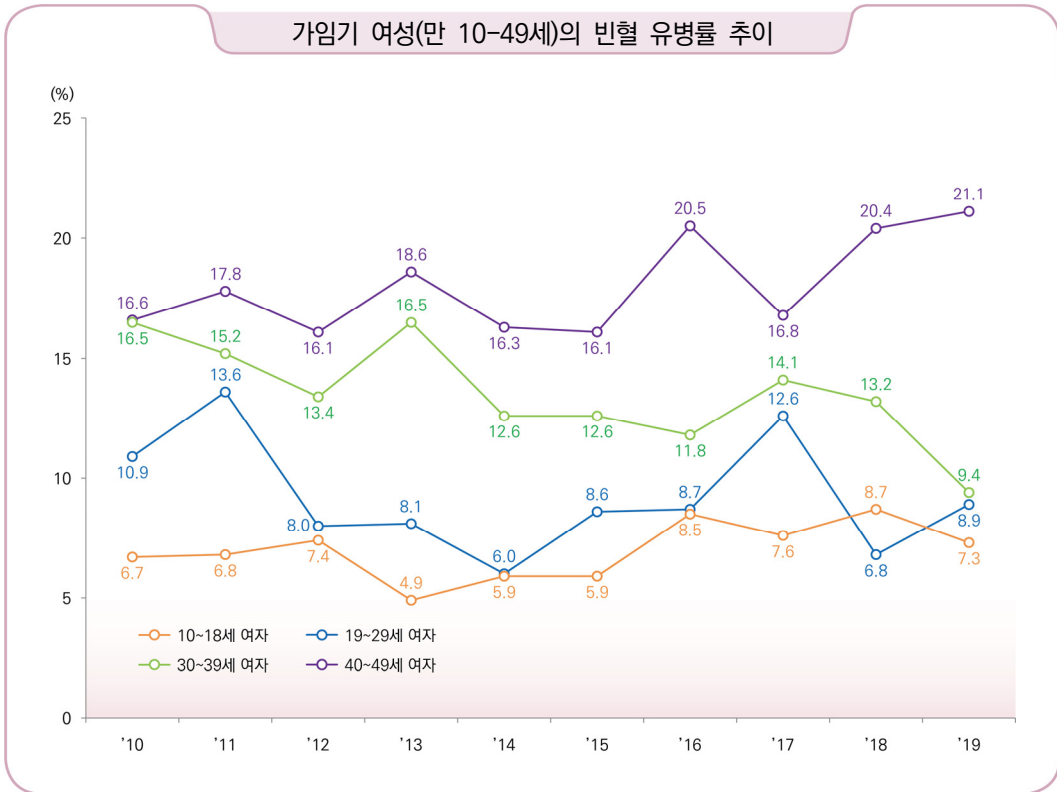
※ 소득수준 :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오분위로 분류

※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비율 : 가구원 중 식품구매를 주로 담당하는 1명에게 최근 1년간의 가구 식생활 형편을 물었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지 못했다'로 응답한 비율

※ 자료출처 : 2019 국민건강통계

7 가임기 여성 빈혈 유병률

- 2019년 기준 가임기 여성(10-49세)의 빈혈 유병률은 12.6%로 나타남
-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빈혈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HP2030 목표치(가임기 여성 빈혈 유병률 11.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40-49세 여성(21.1%)의 빈혈 유병률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빈혈 유병률 : 현재 빈혈(헤모글로빈 기준)을 가지고 있는 비율

* 여성 빈혈 판정 기준(헤모글로빈(g/d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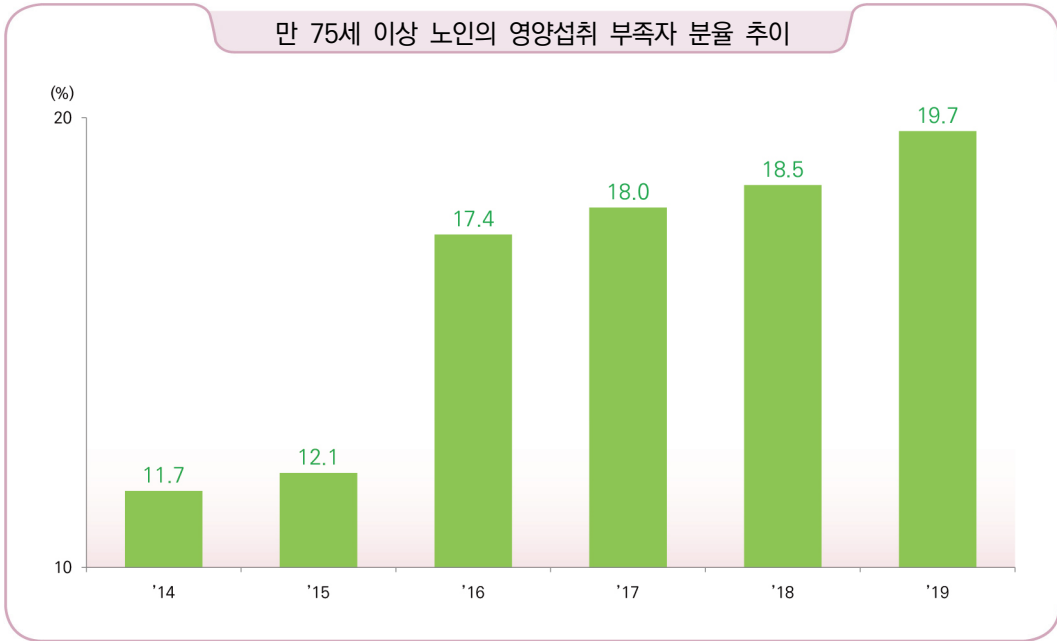
: (10-11세) 11.5미만, (12-14세) 12미만, (15세 이상 비임신여성) 12미만, (임신여성) 11미만

※ 조사방법 :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측정

※ 자료출처 : 2019 국민건강통계

8 영양섭취부족 노인인구 비율

- 만 75세 이상 노인 중 영양섭취부족 인구 비율은 2019년 19.7%로 2014년(11.7%) 기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HP2030 목표치 : 12.0%)



※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 에너지 섭취 수준이 필요추정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평균필요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7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 조사방법 : 식품섭취조사표를 활용, 24시간 회상법으로 조사한 섭취음식의 종류 및 양으로부터 산출

※ 자료출처 : 2019 국민건강통계

■ 법적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영양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영양교육사업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 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영양·식생활 교육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식생활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 추진경과

- 1995년 :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후 시범 보건소를 통해 영양사업 실시
- 2004년 :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영양지원제도 도입 연구
- 2005년 : 건강증진기금 확충에 따라 전국 보건소로 건강증진사업이 확대되면서 영양사업 영역이 필수사업으로 수행, 영양플러스 시범사업('05년~'07년)을 실시함
 -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시범사업에서 전국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공분야에서 영양사업의 추진 체계 확대
 - 영양플러스 사업의 적용 가능성 검토 및 사업안의 수정·보완
- 2008년 :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전국 단위에서의 본 사업 실시
- 2011년 : 건강위험군에 대한 건강증진 및 신체활동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신체활동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실시
- 2013년 :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영양분야, 영양플러스사업 및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해당하는 영양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영양분야'로 통합 추진
- 2018년 : 영양플러스사업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LMS 시스템 도입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영양]

II



추진방향

1 추진전략

2 추진체계

II 추진방향

1 추진전략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분야는 지자체에서 계획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하며, 아래 사업영역별 세부사업 예시를 참고로 지역의 건강 형태 및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기획·추진함

사업영역		세부 사업
건강식생활 실천 국민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트륨 또는 당류 섭취 줄이기 캠페인 • 국민공통 식생활 지침 홍보 및 실천 캠페인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임산부 및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플러스사업* • 어린이집·유치원 기반 영양관리사업 • 다문화가족 대상 영양관리사업
	어린이 및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초등 돌봄교실 기반 어린이 영양관리사업 • 학교 기반 영양관리사업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협력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 영양관리사업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영양관리사업 • 실버건강식생활사업(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영양관리사업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표시제도 시행·모니터링 • 학교 주변 그린푸드 존 시행·모니터링 • 건강음식점 시행·모니터링

* 우선 권장사업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내 영양플러스사업 내실화 및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의해 우선 수행 및 지속적 확대 권장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영양]

III



사업내용

- 1 건강식생활 실천 국민 인식 제고
- 2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

Ⅲ 사업내용

1 건강식생활 실천 국민 인식 제고

■ 사업 목적

- 만성질환 예방 및 효과적인 영양·식생활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과 홍보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건강실천 환경조성에 기여

■ 사업 대상

- 지역사회 전체 및 생활터별(학교, 직장 등)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
 - 지역사회 요구도 또는 건강관련 문제의 진단결과에 따라 영양 위험요인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함. 단, 일관성 있고 체계적 사업 운영 필요

■ 사업 내용

가. 내용

- 영양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맞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및 캠페인 추진
- 대상별 식생활 지침 및 최신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의 내용을 참조하여 국민영양관리기본 계획의 세부추진과제 중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영양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권장

※ 예시

- 성인 및 노인 대상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실천법 홍보
- 청소년 대상 음료류(당류) 섭취 줄이기 캠페인 실시

나. 추진방법

- 홍보 및 캠페인 전략
 - 언론홍보 : 신문, 방송 등
 - 온라인 홍보 : 웹사이트 이용,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블로그 등)
 - 캠페인 : 홍보·체험관, 전시관운영, 가두행진 및 피켓홍보 등
 - 기타 : 현수막, 전광판, 포스터, 옥외광고, 배너·패널 전시, 버스·지하철 광고 등
- 지자체 관련 부서 등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지도자 양성을 통하여 주민의 자발적, 지속적 참여를 적극 권장함
- 홍보 및 캠페인 주제는 중앙 및 시·도와 함께하고, 건강기념일(보건의 날, 임산부의 날, 영양의 날, 비만예방의 날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권장함

2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

■ 사업 목적

- 생애주기별 맞춤 영양교육·상담, 영양관리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개인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올바르게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 사업 대상

- 각 생애주기별 지역주민
 - 생애주기 구분 :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전체
 - 특성 구분
 - 건강취약 대상자 :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다문화 및 새터민, 독거노인, 장애인, 비만·만성질환자,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인 대상자, 노숙인 등
 - 서비스 지점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사회복지시설, 무료 경로식당 등

■ 사업 내용

- 생애주기별, 특성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영양 및 식생활에 대한 단독 주제의 사업보다 주민에게 맞춤 복합적 건강행태(신체활동, 비만예방, 절주 등) 접근 프로그램을 권장함
- 서비스 지점은 보건소 내, 생활터 접근, 가정방문 등이 있으며, 가급적 생활터 접근을 통한 사업 운영을 권장함

가. 임산부 및 영유아

● 영양플러스사업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관리 능력 배양

●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

- 보건소 내소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올바른 영양정보 제공 및 상담
- 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사업, 모유수유교실 등과 연계 가능
-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고운맘카드 발급 금융기관 등과 연계하여 영양·식생활 및 보건소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산

● 어린이집·유치원기반 영양관리사업

- 영유아기 영양사업을 통하여 바른 식생활 인식과 식습관 형성 도모
- 영유아 영양교육 프로그램 실시, 어린이집 등에 정기적 영양교육 자료지원,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부모 대상 영양교육 병행 실시권장
-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을 경우, 식단·위생관리·교육 프로그램·교육 매체 등을 협력하여 활용하는 등 효율적 사업수행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관내에 있는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사업대상을 체계적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장함

나. 어린이 및 청소년

●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영양관리사업

- 지역아동센터 참여 대상자별 채소·과일 섭취 증대(건강과일바구니사업) 등 건강식생활 확산,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당, 지방, 나트륨 저감화, 건강체중 인식 등 영양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제공
- 급·간식 등의 식단, 위생 지원 등은 관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진행

● 학교기반 영양관리사업

- 학교 내 영양교사 연계 건강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제공, 영양강사 지원, 학부모 교육 연계 및 건강학교 프로그램 내 영양관리 지원
- 건강학교, 영양친화학교, 체험교실, 체험박람회 연계 등과 협력하여 진행

다. 성인

-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사업
 - 건강검진결과와 건강위험군으로 판정받은 지역사회 주민 대상으로 건강 문제 인식 및 건강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검진결과와 질환관리 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 건강검진결과 비만·만성질환 건강위험군에 대한 영양상담 제공, 보건소 내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만성질환자에 대해 영양상담 및 영양프로그램 제공
 - 성인 특성별 성별(남 - 청년기, 중장년층, 여 - 폐경기, 가임기 등), 생활터별(가정, 직장 - 사무직, 노동직 등) 등에 따른 맞춤형 영양관리프로그램 제공

라. 노인

- 어르신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 섭취 부족 영양소, 독거어르신 영양관리, 위생적 음식관리, 보관 방법 등 영양교육 및 어르신 조리실습(장보기 및 조리방법) 등의 영양교육 교실 운영
 - 노인의 거동 정도에 따라서 단체교육 및 가정방문을 통한 개인 상담을 실시하여, 맞춤형 영양관리 제공
 - 관내 복지관에 급식메뉴 및 영양정보 게시물 등을 제공하는 연계 사업 진행
 -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식생활 환경을 점검하여 영양중재 제공
 - 노인복지시설, 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노인건강식생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조리교실의 경우 관내 문화센터, 학교 등과 협력하여 진행
- 실버 건강식생활사업
 - 식품구입과 조리 등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식생활관리서비스(공동부엌 실습교육·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영양교육) 및 과일·우유 등의 간식도시락 제공

마. 기타

- 다문화가족 영양관리사업
 -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단위 집중 영양관리 프로그램 운영
 - 관리대상자 선정 및 1년 단위 집중관리, 영양플러스 사업과 연계 추진
 - 다문화가족 조리교실 운영
 - 이유식 만들기, 일상적 한식 조리 등, 상용 식품의 활용, 가구 구성원에 따라 차별화 된 내용의 조리 교실 운영, 보건소, 인근 대학 연계 혹은 지역 내 조리학원 등 활용
 - 다문화가족 대상 조리교실 운영 및 영양문제 유형별 다국어 교육자료 보급(중국계, 필리핀계, 몽골계, 캄보디아계 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식생활, 육아, 문화적응 등 수행
 - 건강가정지원센터, 영양플러스 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과 연계, 대학의 기존 사회공헌 프로그램 활용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영양]

IV



사업지침

- 1 영양플러스사업
- 2 건강과일바구니사업
- 3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사업
- 4 어르신 영양관리사업

IV-1 영양플러스사업

1 개요

1 사업목적 및 목표

■ 사업 목적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신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 목표

- 취약계층 임신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2 사업 성과

■ 연차별 사업 수혜대상자 수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수행 보건소(개소)	245	250	251	252	252	252	253	250	252	252	252	252
수혜 대상자수(명)	74,406	86,605	87,449	90,869	88,926	88,504	90,244	87,312	83,988	82,045	78,755	73,333

■ 수혜대상자의 사업 만족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만족도 점수(점)	87.5	89.3	89.6	90.7	91.2	91.2	91.3	91.5	91.6	92.5	92.8	93.6

3 사업 흐름도



2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1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자격판정

영양플러스사업의 대상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대상 분류, 소득 및 영양위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의 참여 신청 접수 후 자격 여부를 판정함

➔ 대상자 선정기준

분류	기준
대상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 만 6세(생후 72개월 미만)까지 임신부 출산·수유부 <p>* 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p>
거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 * 본 사업은 가정단위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
소득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지역의 여건에 따라, 소득판정 기준치 하향 조정 가능
영양위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예외)는 중복 수혜 불가하므로 사전안내 필요

가. 대상자 구분기준

구분	기준
영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후 만 1세 ~ 만 6세(72개월 미만)까지
임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나. 소득수준

□ 소득판정 원칙

- 가구의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지역 여건에 따라, 소득판정 기준치 하향 조정 가능
 - 예 :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로 소득기준 설정(본 안내서 56쪽 참조)

□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금)으로 판정
-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기준치 이하인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건강보험료 기준치 : '기준 중위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¹⁾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470,000	84,793	48,962	85,605
3인	3,187,000	109,494	99,230	110,271
4인	3,901,000	134,046	125,647	135,612
5인	4,606,000	159,583	160,445	161,571
6인	5,303,000	182,541	190,479	185,377
7인	5,998,000	206,575	220,777	209,941
8인	6,693,000	233,144	254,052	237,681
9인	7,388,000	257,849	284,709	263,923
10인	8,082,000	278,094	309,041	286,737

1)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으로 관리시스템에 입력

➡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영유아(태아 포함)
- 임산부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 ※ 배우자는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 영유아의 경우 해당 대상자 부모 또는 보호자를 기준으로 함
- 미혼자녀(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자녀는 제외)
 - ※ 단, 부모의 이혼으로 영아의 형제자매가 이혼한 다른 부(조부모 등 포함) 또는 모(외조부모 등 포함)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 임산부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 자녀, 손자녀 등)
 - ※ 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이 부양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영유아의 부모(또는 임산부 및 배우자)와 동일한 경우라도 가족 수에 산정하지 않음

● 영유아가 단독가구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 혹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현재 보호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대상자격을 얻을 수 있음(가정위탁 아동 포함)

- ※ 가정위탁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함 (아동복지법 제3조)

● 사업 담당자는 가족 수 및 가구원의 확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주민등록정보 및 전산 호적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 건강보험료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

● 건강보험증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를 통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한 후, 사본을 보관함

- ※ 당해 연도 발급일자 건강보험증을 제출
-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열람한 경우 사본을 보관하지 않음
-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한 서류로 이용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산출

- 원칙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활용
- 부모 중 한 명이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 :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모가 각각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 : 부모의 보험료 합산
 -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부모 중 1인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A)이고, 다른 1인은 배우자가 아닌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B)의 피부양자로 등록 : A보험료와 B보험료 합산
- 부모가 다른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록 : 해당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모가 각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 : 부모가 피부양자로 각각 등록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건강보험료 감면대상자의 경우 소득판정 시 감면된 금액을 적용함
 - ※ 건강보험료 감면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국가유공자 중 상이 등급), 생활이 지극히 어려운 세대(사업장 화재, 부도, 재산경매, 압류), 농어업인 경감, 도서·벽지 경감,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
- 자부담 여부 판정 및 소득판정의 편의를 위해 다음 사항에 관련된 증명 서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기록하도록 함
 -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여부
 - 차상위계층 대상 여부

□ 자격확인을 위한 기본서류

구분	확인서류
가구원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¹⁾ ● 가족관계증명서²⁾
소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³⁾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⁴⁾
임신·출산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⁵⁾

1)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이용을 통해 관련 정보 열람 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족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확인 필요
 3)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우, 건강보험 고지서로 소득확인 대체 가능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 기타 확인 서류 등
 5)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중 1개 이상의 서류로 확인

□ 기타 서류

- 건강보험료만으로 소득을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다음의 자료 중 한 가지 이상의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참고할 수 있음
 -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미과세 증명,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월급명세서, 고용주가 발행하는 고용·임금발행서 등의 증명서 등
- 임신부의 경우 임신 및 출산여부 확인을 위해 다음의 증빙서류 중 1개 이상을 제출하도록 함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 ※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를 제외하며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신부는 자료제출 생략 가능

➡ 건강보험료의 변동에 대한 처리

- 건강보험 유형 혹은 납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건강보험 가입유형 및 납부액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 육아휴직, 질병에 의한 휴직 및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휴직을 모두 포함함
 - 단,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시 가구소득을 확인하여 판정함

구분	제출 서류	급여여부	확인서류
1개월 미만	해당없음	-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소득없음으로 간주
		유급	최근 월 급여액 X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보수월액의 3.43%(’21년 기준)

※ 보수월액에 산정되지 않는 경우 : 보수퇴직금, 현상금, 육아휴직 수당, 보훈급여 수당(국가유공자) 등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 12조 참조)

※ 휴직증명서는 휴직 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하며, 휴직 수당은 무급으로 처리

● 가구원이 퇴직한 경우

- 퇴직증명서 제출 시 퇴직상태의 가구소득을 인정할 수 있음
- 단, 다음 월 지역·직장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으로 변동 내용을 재확인함
-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해당기간까지의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함
 - ※ 국민건강보험법 제 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참조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예 : 군인)

- 신청 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함

●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달의 경우

- 최근 월분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나, 평상시의 건강보험료와 상이할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액(혹은 평상시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소득 관련 기타 사항

-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나 증명서류로 파악되지 않는 지원자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함
 -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구청 사회복지사 협조 의뢰
 - ※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또는 보건소장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며, 영양위험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대상자격을 판정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등 협조를 통하여 대상자 발굴 필요
- 대상자의 자격재평가 시에 소득을 재판정하여 자격 여부를 재판정함
 - 사업에 참여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소득재판정도 자격평가 유보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 최초 사업 참여일로부터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자격재평가를 유보하고 대상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 ※ 단,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였거나, 소득의 변화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득재판정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영양위험요인 기준

➡ 영양위험요인(nutritional risk) 보유 여부 판정

① 빈혈검사 :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측정	② 신체계측 : 신장 및 체중 측정
③ 영양섭취상태조사 : 24시간 회상법	④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 영양평가 종류별 영양위험요인 판정 기준

평가종류	판정기준
빈혈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중 헤모글로빈 검사 시 빈혈로 판정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혈판정 기준은 WHO 기준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신체계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에서 저체중, 저신장,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신장 백분위수가 10백분위수 미만 • 연령별 체중 백분위수가 10백분위수 미만 • 신장별 체중 백분위수가 10백분위수 미만 • 연령별 BMI 백분위수가 10백분위수 미만 • 표준체중에 대한 비율이 80% 미만 • 임신·출산·수유부에서 BMI에 의해 저체중으로 판정된 경우 (BMI 18.5미만) ⇒ BMI = 체중(kg)/(신장(m))²
영양섭취 상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문제 영양소의 섭취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EER)의 75% 미만이거나 •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티아민, 비타민C 중 한 가지라도 섭취량이 평균필요량(EAR) 미만인 경우
기타 영양 위험요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신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신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빈혈검사

- 생후 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별도의 영양평가 없이 어머니의 영양위험요인 적용 가능
- 임신부의 경우, 철분제 섭취로 인해 정확한 빈혈 검사가 어려우므로 가구의 소득수준이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 되면 영양위험요인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사업에 참여한 임신부가 출산한 영아의 경우, 생후 6개월까지 별도의 영양평가 없이 사업의 대상자로 자동 등록 가능(단, 여건 상 즉시 대상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대기자로 분류할 수 있음)

※ 영양섭취상태조사

- 기타 상담에 의해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

※ 본 사업지침에서 제시하는 영양위험요인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여 대상자가 보유한 위험요인을 최대한 파악하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영양상담교육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 단, 평가 진행이 어렵거나 평가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평가가 가능한 항목의 평가를 시행하여 영양위험요인을 파악하도록 함

1) 생화학적 검사

㉠ 판정기준

- 혈중 헤모글로빈 검사결과 빈혈로 판정된 경우 영양위험요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함
- 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혈액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모체의 위험요인을 적용할 수 있음
- 빈혈 판정 기준은 WHO 기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 WHO 빈혈판정 기준 :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를 기준으로 함

구분	기준	구분	기준
6-59개월 영아 및 아동	11g/dL 미만	임신부	11g/dL 미만
5세 아동	11.5g/dL 미만	출산부 및 수유부	12g/dL 미만

㉡ 빈혈검사 시 유의사항

- 보건소 내 검사실(임상병리실)과 연계하여 빈혈판정을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사업 참여를 위해 빈혈검사에 동의해야 하는 것을 정확히 설명하고, 등록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함
 - 대상자가 보건소 검사수행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수행한 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안내함
 - 휴대용 헤모글로빈 측정기를 사용할 경우 의료인에 한해 검사가 가능함
- 대상자의 빈혈 검사결과에 대해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 ※ 빈혈측정기에 헤모글로빈 검사 결과 출력기를 연결하여 검사결과를 출력한 후 대상자의 확인서명 후 보관
 - ※ 출력기가 없는 경우, 즉시 측정결과를 용지에 기록한 후 대상자의 확인서명 후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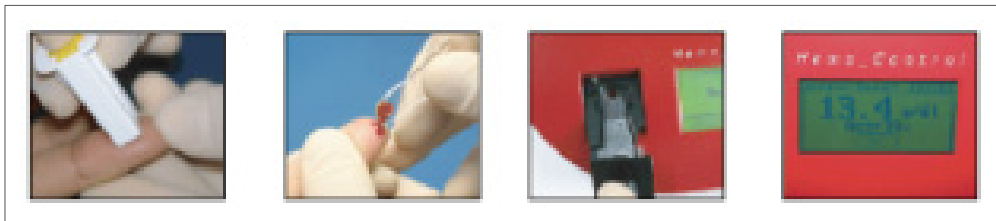
㉢ 헤모글로빈 측정방법(휴대용 헤모글로빈 측정기 사용 시)

- 손가락의 채혈할 부위를 먼저 가볍게 마사지하여 손을 따뜻하게 함
- 채혈하기 전 채혈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닦음. 이때 정확한 검사를 위해 소독을 위해 바른 알코올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림
- 채혈침(Lancet)을 사용하여 채혈할 때에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검사에 충분한 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혈액을 짜내는 방식으로 채혈하지 않도록 함
- 처음 나오는 혈액은 마른 솜으로 닦은 후, 그 다음 나온 혈액을 큐벳에 채움 이때 반지를 착용한 손가락에서는 채혈하지 않도록 함
- 혈액이 큐벳 겉면에 묻지 않도록 혈액을 채운 큐벳의 아래쪽을 마른 솜으로 닦아줌
-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검사결과가 9g/dL 미만인 경우 및 기타 필요시 반복하여 검사를 실시함

➡ 휴대용 헤모글로빈 측정기 사용 시 유의사항

- 측정기의 전용 채혈침(Lancet)을 사용하도록 함
- 테스트 큐벳은 습도에 민감하므로 반드시 지정된 통에 보관하고 뚜껑을 꼭 닫아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함
- 장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컨트롤 큐벳을 이용하여 장비 시리얼 번호와의 일치 여부를 장비 사용 전에 반드시 점검하도록 함
- 컨트롤 큐벳은 반드시 지정된 상자에 보관하고 만약 병원에서 검사한 혈당치와 비교하여 오차가 크거나, 허용범위를 많이 벗어날 경우 장비 구입 업체에 연락하여 문의 하도록 함
- 테스트 큐벳의 optical eye는 측정 시 센서가 통과하는 부위이므로 절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며 이물질이 생긴 큐벳은 사용하지 않도록 함
- 헤모글로빈 측정 후 측정기의 광학센서 부분을 면봉으로 닦아 관리하고, 일정 기간마다 점검을 실시하여 오차를 줄이도록 함

➡ 휴대용 헤모글로빈 측정기를 이용한 헤모글로빈 측정 방법



2) 신체계측

▷ 판정기준

- 영아 및 유아의 경우 연령별 신장, 연령별 체중, 신장별 체중 또는 BMI가 10백분위수 미만 혹은 이상체중 대비 실제체중 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것으로 판정함
※ '2017 소아 및 청소년 표준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소아청소년 신체발육표준치 제정 위원회)'에 근거하여 판정함
- 임신·출산·수유부의 경우 현재 신장과 체중에 의한 BMI가 18.5 미만인 경우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것으로 판정함

▷ 신체계측 시 유의사항

- 여름과 겨울의 옷 무게에 따라 체중 측정값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겉옷과 신발 등을 벗고 속옷 (또는 가벼운 옷)만 착용한 상태에서 체중을 측정하도록 함
- 영유아의 체중계측 시 기저귀와 옷 무게로 인한 차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특히, 반드시 기저귀가 젖지 않은 상태에서 체중을 측정하여야 함

3) 영양섭취상태조사

▷ 판정기준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의 섭취부족으로 판정된 경우나 기타 상담에 의해서 부적절한 식품 섭취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자격을 주어짐
- 영양소 섭취상태에 의한 영양위험 판정은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DRIs, 2020)에 근거함
-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EER)의 75% 미만이거나,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C 중 한 가지라도 그 섭취량이 평균필요량(EAR :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영양섭취부족으로 판정함
- 이에 의한 대상별 영양섭취 판정기준은 52쪽에 있는 표와 같음. 각 해당 기준 미만을 섭취하는 경우에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함
※ 단, 유아의 경우 영양섭취상태조사에 의해 문제 영양소의 섭취부족으로 판정하는 것은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성장도표'에 근거한 연령별 신장, 연령별 체중, 신장별 체중 또는 BMI가 10~25백분위수에 속하는 대상자의 경우만으로 제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㉞ 영양섭취량 산출 방법

- 영양소섭취조사는 식품섭취조사표, 식품섭취조사 평가지를 활용하여 섭취량뿐 아니라 섭취 패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도록 함
 - ※ 대상에 따라 하루의 섭취량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일 혹은 3일간의 영양섭취상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영양섭취상태 조사 시 실물크기 모형 및 책자 활용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내의 영양플러스 관리시스템과 데이터 연동되는 웹 기반의 영양솔루션 (<https://www.khidi.or.kr/nss>,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공)을 이용함

㉞ 영아의 영양섭취결과 입력

- 조제분유의 섭취량 입력
 - 분유 섭취량 입력 시에는 영양솔루션 DB(DataBase)에 포함된 조제분유 성분을 확인한 후 입력함
 - ※ 대부분의 경우 분말의 양으로 입력하도록 되어있음
 - 영양솔루션 DB에 포함되어 있는 조제분유 중 대상자가 섭취한 분유의 종류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선택하거나, 상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값으로 별도의 식품코드를 생성하여 이용함
- 모유수유의 섭취량 입력
 - 영양솔루션에 모유수유의 양을 입력하는 것은 생략하며, 모유수유를 제외한 나머지 식품의 섭취내용만 입력함
-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자격 판정에 이용할 수 있으나 영양 교육·상담을 위해 다른 대상과 마찬가지로 식품섭취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대상별 영양섭취 판정기준

대상 분류	연령	임신 구분	열량 <kcal>	단백질 <g>	칼슘 <mg>	철 <mg>	비타민A <μg RAE>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니아신 <mg>	비타민 C<mg>
			EER 75% ¹⁾	EAR ²⁾							
유아	1-2세	-	675	15	400	4.5	190	0.4	0.4	4	30
	3-5세	-	1,050	20	500	5	230	0.4	0.5	5	35
임신부	15-18세	1분기 ³⁾	1,500	45	700	19	500	1.3	1.3	14	90
		2분기 ³⁾	1,755	57							
		3분기 ³⁾	1,838	70							
	19-29세	1분기 ³⁾	1,500	45	550	19	510	1.3	1.3	14	85
		2분기 ³⁾	1,755	57							
		3분기 ³⁾	1,838	70							
	30-49세	1분기 ³⁾	1,425	40	550	19	500	1.3	1.3	14	85
		2분기 ³⁾	1,680	52							
		3분기 ³⁾	1,763	65							
출산부	15-18세	-	1,500	45	700	11	450	0.9	1	11	80
	19-29세	-	1,500	45	550	11	460	0.9	1	11	75
	30-49세	-	1,425	40	550	11	450	0.9	1	11	75
모유 수유부	15-18세	-	1,755	65	700	11	800	1.2	1.4	13	115
	19-29세	-	1,755	65	550	11	810	1.2	1.4	13	110
	30-49세	-	1,680	60	550	11	800	1.2	1.4	13	110

- 1) 필요추정량(EER) : 에너지 필요추정량을 평가기준으로 이용함에 있어 필요추정량의 75%미만을 판단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는 값을 영양부족으로 판단
- 2) 평균필요량(EAR) : 대상 집단을 구성하는 건강한 사람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
- 3) 임신부의 임신구분은 '1분기 1-13주', '2분기 14-28주', '3분기 29-출산'으로 구분하여 적용

4)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 빈혈, 신체계측, 영양섭취조사 외 영양위험요인

- ‘기타 영양위험요인’에 해당하는 항목은 초기 대상자격 판정에만 적용됨
 ※ 단, 영아관련 조항인 식생활 위험 요인이 남아있는 경우 자격재평가 시에도 적용이 가능함

1. 영양학적 요인

- (임신부) 조산, 사산, 자연유산, 저체중아 혹은 선천성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경우
- (출산·수유부) 저체중아 출산경력이 있는 경우
- (임신·출산·수유부) 다태아 이상을 임신 혹은 출산한 경우
- (영아)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 (영아) 저체중아로 출생한 경우(출생 시 몸무게 2.5kg 미만)

2. 식생활 요인

- (생후 3개월 미만 영아) 이유식 도입한 경우
- (생후 6개월 이상 영아) 이유식 도입하지 않은 경우
- (영아) 12개월 이전에 시유를 먹이는 경우
- (영아) 신장, 체중, 신장별 체중 혹은 BMI가 10~25백분위수에 해당하는 영아 중 월령에 비해 수유횟수나 양이 적은 경우

모유수유아		조제유아	
개월	기준치	개월	기준치
생후 2개월 미만	8회 미만/24시간	생후 0-3개월	600ml 미만/24시간
생후 2-6개월	6회 미만/24시간	생후 4-6개월	780ml 미만/24시간

3. 기타 예외조항

- (생후 6개월 이하 모유수유 영아) 어머니가 영양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 이 경우 영아는 어머니와 같은 우선순위군으로 적용
- (수유부) 영아가 영양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 이 경우 수유부는 영아와 같은 우선순위군으로 적용
- (영아) 어머니가 임신 중 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 생후 6개월까지 별도의 영양평가 없이 사업의 대상으로 자동 등록
- (기타) 담당영양사의 상담에 의해서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의 판정을 위해 식품군별 섭취 상태나 식생활 체크리스트지를 참고로 할 수 있음

5) 타 기관 검사자료 적용

- 대상자 신청 시 최근 1달 이내에 빈혈여부나 신장, 체중에 대해 타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에서 측정된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하면 이를 영양위험요인 판정을 위한 측정치로 인정할 수 있음
 ※ 측정방법의 차이 등으로 보건소에서 다시 검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 측정된 결과를 이용함
 ※ 유아의 병력 때문에 철분제 등을 복용하여 헤모글로빈수치가 정상으로 측정되는 경우, 대상자 신청 시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의 진단서 혹은 검사결과지를 근거로 빈혈위험요인 기준 충족여부 판정 가능

2 대상자 모집 및 관리

■ 선정주기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 판정은 지속적으로 실시함

※ 보충식품 공급은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월별 1차 발주가 끝난 후, 대상자로 등록되면 등록된 다음 달부터 보충식품을 공급함

■ 대상자 수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월 평균 관리대상자 수가 최소한 당해 연도 예산상 계획 대상자 수와 동일하거나 혹은 그 이상이 되도록 함
- 보건소별로 한 가구당 참여대상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를 적용할 경우 가구 내 모든 대상에 대해 영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

■ 홍보

-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구 취약계층 담당자의 협조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함
 -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함

* 홍보방법 예시

- 방송, 신문,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
-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홍보(모자보건사업 등 타 사업과의 연계)
- 관내 산부인과 및 소아과의 협조를 얻어 의료기관에 유인물을 비치하고, 의료기관 이용자에 대해 홍보

3 대기자 관리

■ 우선순위의 적용

대상자 선정기준(거주, 생애주기, 소득 기준 등)을 만족하는 경우 대상자격이 인정되지만, 확보된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기자 명단을 확보하고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우선순위 기준

구분	기 준
우선순위 1	•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우선순위 2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우선순위 3	•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우선순위 4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우선순위 5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우선순위 6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유아
우선순위 7	•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6개월까지)

※ 영양의학적 위험 :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신체계측이나 혈액검사를 통해 판정된 영양위험 및 임신/출산경력관련 사항 등 기타영양위험요인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 : 한 가지 이상의 영양소 섭취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및 기타 식생활 요인과 관련된 영양위험 요인을 말함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미 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중 우선순위의 재판정은 실시하지 않으며, 대상자별 자격 만료 기간까지 대상자격이 유지됨
- 대기자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대기자 등록 메뉴를 활용하여 명단을 관리하여야 함
- 대기자 명단에 등록된 유아나 출산·수유부가 대상자 등록 시점에 이미 자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음
 - 영아나 임신부의 경우 유아나 출산·수유부로 전환하여 등록할 수 있음
 - 또한 대기자로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경우, 대기자 등록 당시 영양평가를 실시하였더라도 대상자 등록을 위해 자격재평가가 필요함
 - ※ 대기자 접수 시 우선순위 원칙과 대기 중 자격기간이 만료되면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
 - ※ 유아 및 출산수유부의 경우는 대기 중 자격기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최소 사업 참여기간인 6개월을 고려하여 대기자로 등록 관리할 것을 권장

■ 추가 우선순위

○ 추가 우선순위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65%)

가구원 수 ¹⁾	기준 중위소득 65%(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²⁾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007,000	69,016	23,243	69,718
3인	2,590,000	89,069	58,319	89,626
4인	3,170,000	109,494	99,230	110,271
5인	3,742,000	129,761	119,161	131,102
6인	4,309,000	148,183	145,418	150,077
7인	4,873,000	168,195	171,434	170,536
8인	5,438,000	188,208	197,468	191,093
9인	6,002,000	206,575	220,777	209,941
10인	6,567,000	228,860	248,783	233,144

1)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으로 관리시스템에 입력

- 아래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음
 - 소득수준이 더 낮은 가구
 - 예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대상자를 우선 선정(단, 영양위험요인 기준은 동일 적용)
 - 동일한 소득수준에서 영양의학적 위험요인(빈혈, 저체중 등) 보유자
 - ※대기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게 대상자 선정
- 다음의 경우, 지자체 여건·실정에 맞게 추가 우선순위 부여가 가능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통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요청된 대상
 - 과거 영양플러스사업 참여경험이 없는 대상
 - 유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유아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다태아,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다문화가족 등
- 신청대기자 명단 관리 시 소득이 더 낮은 신청대기자에게,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됨
 - ※ 신청대기자 수가 많은 경우, 등록일에 따라 혹은 일정 기간(예 : 분기별, 혹은 상·하반기 등)으로 나누어 우선 순위를 적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

4 자부담 대상 판정 및 적용

■ 보충식품비 자부담 적용 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하도록 함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부담 대상에서 제외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자
- 차상위계층 증명 자료 제출자(45쪽 관련 서류 참조)
- 가구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 단, 지자체 여건 및 내부 협의에 따라 기타 적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 자부담 적용 대상자 판정

- 자부담 적용 대상자 판정은 대상자 등록 시 및 자격재평가 시 소득 (재)판정과 함께 실시함
- 자부담 적용 대상자 판정 후 다음 판정 시까지는 기 판정된 결과를 적용하며 자부담 적용 대상 변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자부담 대상 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 65%)

가구원 수 ¹⁾	기준 중위소득 65%(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²⁾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007,000	69,016	23,243	69,718
3인	2,590,000	89,069	58,319	89,626
4인	3,170,000	109,494	99,230	110,271
5인	3,742,000	129,761	119,161	131,102
6인	4,309,000	148,183	145,418	150,077
7인	4,873,000	168,195	171,434	170,536
8인	5,438,000	188,208	197,468	191,093
9인	6,002,000	206,575	220,777	209,941
10인	6,567,000	228,860	248,783	233,144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관리시스템에 입력

㉠ 자부담금 입금 방법

- 대상자의 자부담금은 식품공급업체에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식품공급업체와의 계약 시 자부담금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식품공급업체에서 대상자로부터 자부담금을 수령하기 위해 CMS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나, 수령 방식은 시·군·구 보건소와 식품공급업체와의 협의 하에 다른 방식을 이용할 수 있음
- 단, CMS계좌이체 또는 대량출금업무 이용계약 등을 도입하여 자체입금관리가 가능한 경우 보건소에서 자부담금을 관리하여도 무방함

㉡ 자부담금 납부일

- 자부담 적용대상자는 자부담금을 매월(월 1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납부일은 1차 식품발주일 10일 전까지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식품공급업체와 협의가 가능함

㉢ 자부담 금액 산정

- 식품패키지별 월 단가의 10%를 자부담 금액으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식품패키지 단가가 월별로 변화하는 경우
 - 동일한 패키지 내에서 단가가 변화하는 경우, 각 패키지별 연평균 월 단가를 산정함
 - 패키지 1, 2의 경우에는 수유형태(모유수유·혼합수유·조제유) 별로 연평균 금액을 산출함
 - 분유종류 등 세부 식품선택에 따라 대상자 개인별 총 식품비가 달라지는 경우, 개인별 자부담 금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평균가를 산출하여 패키지별·수유형태별로 동일한 금액을 산정함
 - 패키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예 : 2→3 패키지로 변동) 변동된 패키지에 따른 자부담금액을 적용함
- 식품패키지별 월 단가 산출 시, 배송비 등 보충식품비로 지출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할 수 있음

㉣ 자부담 미납에 대한 처리

- 자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해당 월의 보충식품 공급을 중지할 수 있음
- 자부담금이 미납된 대상에 대해 사전 공지하여 입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함
- 사전 공지 후 1차 식품발주일 5일 전까지 자부담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보충식품 공급을 중지할 수 있음

㉤ 자부담 관련 기타 사항

-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방비(시·도, 시·군·구비), 후원금 및 기타 기금 등에 의해 자부담을 대체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자부담 대상인데 자부담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음

3 대상자 관리

1 대상자 선정 직후 수행사항

■ 대상자 등록

- 대상 자격이 있음이 판정된 경우, 대상자 등록 서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으로써 등록을 완료함
 - 담당자는 반드시 대상자 서명용지의 각 항목에 대해 대상자에게 설명
 - 대상자는 각 항목을 읽고, 각 항목에 확인 표시
 - 서명용지 하단에 대상자와 담당자의 서명을 하여야 대상자 등록이 완료
 - ※ 단, 개인정보처리 동의서(필수)로 작성하고, 사업 대상자에게 모두 서명 받아야 함

■ 사업 설명 및 설문조사

➡ 대상자 선정 직후 실시할 조사·교육 내용

구분	세부내용
사업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의무사항 안내 ● 영양교육의 중요성 및 참여 원칙·방법 교육 ● 보충식품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섭취보관 방법 및 기타 주의사항 교육 - 배송 관련 사항 안내 ● 사업 지침과 별개로, 지역의 상황에 따른 내부규정 안내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지식 및 태도 설문조사 실시(사업초기평가)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등록 서약서 서명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작성 ● 기타 사업 관련 중요 공지사항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는 사업 대상자 전원에게 반드시 서명 받아야 함

- 사업 참여 전·후의 비교를 위해 사업 참여 전에 실시해야 하는 조사를 실시함
 - ※ 영양지식과 태도 평가 등
- 모든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영양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함을 알리고, 첫 교육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야 함

- 대상자에게 보건소와 식품공급업체간의 약속된 식품 배송일을 알려주고, 보충식품 이용 시 주의 사항을 설명해야 함. 특히 다음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 되도록 함
 - 식품을 배달받았을 때 식품의 유통기한과 상태를 잘 살피고 이상이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함
 - 시유와 달걀, 당근은 반드시 받는 즉시 냉장 보관하도록 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교육함
 - 멸균우유와 오렌지주스도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도록 하며, 기타 식품도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교육함
- 분유의 공급 때문에 모유수유 대신 조제유를 선택하지 않도록, 모유수유를 우선적으로 권유함
 - ※ 완전모유수유부의 경우 보충식품 수혜기간이 더 길고, 식품패키지 내용이 추가됨을 알려주어야 함
- 사업에서 제공하는 분유가 이전에 사용하는 분유와 다른 종류인 경우
 - 처음에는 새로운 분유를 기존의 분유에 소량만 첨가하여 사용하며, 반응을 살피면서 점차 배합 비율을 달리하면서 새로운 분유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
 -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 공급을 일시 중단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소량을 시도하도록 하며, 계속해서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 해당 보건소로 보고하도록 함
 - ※ 이러한 적응 기간 중에는 분유의 양을 본래 공급해야 할 분량의 1/2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6-12개월 영아용 식품패키지 2에서 달걀은 전란을 공급하되, 영아에게는 반드시 노른자만 주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노른자도 소량씩 서서히 도입 하도록 함
- 시판분말이유식은 가능한 한 공급하지 않음
 - 가정에서 이유식을 만들어 먹일 수 있도록 쌀, 달걀, 당근 및 감자를 공급하도록 대상자를 최대한 설득하여야 함
 - 시판분말이유식의 경우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 있는 것이므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줄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을 교육함
- 시판분말이유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쌀, 달걀, 당근 및 감자를 공급하지 않음
 -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판분말이유식을 공급하되, 제품에 표시된 기준량의 1/2이상은 공급할 수 없음
 - ※ 이 경우 가정식 이유식에 섞어 영양소를 보충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임을 설명하여야 함
 - ※ 한 숟가락만 시도하고 반응을 살핀 후 점차 양을 늘려 나갈 것을 개인별로 교육하여야 함

2 대상자 참여기간

■ 생애주기별 사업 참여 자격기간

- 다음의 대상자 구분별로 해당 자격기간이 정해지며, 맞춤형 사업 서비스가 제공됨

구분	해당 기간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 생후 만 1세 ~ 만 6세(72개월 미만)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 참여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자격 재평가를 실시함

* 단, 임신부의 경우 임신기간 내 참여기간이 6개월이 넘더라도 자격 재평가를 생각할 수 있으며, 대상자 영양관리를 위한 식생활 평가 및 상담은 시행할 수 있음

➡ 최대 사업 참여 기간

- 대상자의 사업 수혜 기간은 총 1년을 넘지 않도록 함
 - 단, 대상자가 최대 사업 수혜기간(1년)을 경과하였음에도 영양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전문가위원회(보건소장, 의사, 영양전문가 등 5인 이상)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수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이때 관련 증빙서류는 보관하여야 함
 - 타 보건소에서 연계된 대상자의 경우, 이전 보건소에서의 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 유아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만 66개월 이하인 유아로 대상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3 대상자 영양상태 평가 및 자격변동 관리

■ 평가내용

㉠ 영양상태 평가

- 영양·건강상태의 평가는 대상자 선정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함
 - 신체계측 : 신장 및 체중
 - 생화학적 검사 : 빈혈 판정(헤모글로빈)
 - 영양섭취상태조사 : 24시간 회상법

※ 대상자가 사업 퇴락 이전에 집중관리 및 타 기관·전문가 연계를 통해 영양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대상자 영양지식 및 태도조사

- 첨부된 설문양식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영양지식 및 태도를 사업 전 및 종료 후에 조사함

㉢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 첨부된 설문양식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 각 보건소별로 첨부된 양식 이외에 대상자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 평가시기에 따른 평가항목

구분	평가시기	평가항목
사업초기평가 (사업 참여 전)	대상자 선정 시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영양지식·태도 조사
자격재평가	대상자 등록 후 6개월 시점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 소득(재)판정 *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되어 퇴락하는 경우, '사업종료평가'의 평가항목 모두 실시
사업종료평가 (사업 참여 후)	대상자 퇴락 시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영양지식·태도 조사, 사업만족도 조사

■ 자격재평가

➔ 자격재평가와 관련한 사항

- 참여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자격 재평가를 실시함
 - ※ 단, 임신부의 경우 임신기간 내 참여기간이 6개월이 넘더라도 자격 재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대상자 영양 관리를 위한 식생활 평가 및 상담은 시행할 수 있음
- 자격만료일 이전 한 달의 기간 동안 자격재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격재평가를 자격 만료일부터 한 달 이후까지 연기할 수 있음
- 자격재평가 시기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의료기관 혹은 보건기관에서 측정된 검사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자격재평가를 위한 측정치로 인정할 수 있음

➔ 자격재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처리

- 대상자의 사업 참여 종료(퇴락)
 - 대상자격 만료 시의 최종평가 결과나 자격재평가 결과가 영양상태가 향상되고 식생활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 사업을 종료할 수 있음
 - 대상자격 만료 기간까지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됨. 단, 평가결과 영양위험이 남아 있는 경우 영양교육에는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 자격재평가 결과로 대상자격 지속

- 자격재평가 결과 영양문제가 남아있는 경우 대상자격을 유지하며, 평가결과를 영양교육·상담에 반영하여 재인정기간 내에 영양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
- 충분한 기간 동안 사업에 참여하였는데도 영양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그 예는 다음과 같음
 -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관리 및 상담
 -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과의 연계
- 자격재평가 결과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된 경우라도, 식생활 개선 정도가 충분치 않거나, 즉시 퇴락하면 영양문제를 다시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가위원회(전문가 5인 이상)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해당대상자의 수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증빙서류 보관)

➡ 유산 또는 사산한 임신부에 대한 처리

- 사업에 참여 중이던 임신부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별도의 영양평가 없이 출산부로 패키지를 변경하여 대상자격이 유지됨
 - ※ 임신부로 참여한 기간과 출산부로 참여한 기간을 합하여 총 참여기간을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출산부로 변경한 후에는 자격재평가가 아닌 종료평가 실시
-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이 출산부로 참여하다가 임신한 경우에는 자격재평가를 통해 임신부로 변경하여 등록할 수 있음

■ 대상자의 퇴락 및 대상자격 취소

➡ 사업 참여 종료

- 대상자가 자격재평가 결과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상 자격기간이 만료된 경우
 - 영아와 임신부의 경우 자격기간 만료 시, 영아 → 유아, 임신부 → 출산·수유부로 전환하여 대상자격 유지 가능
 - 임신부가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 출산부 범주에 포함되어 대상자격 유지 가능
- 대상 자격기간 만료 후에도 영양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 지속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사후관리 실시

➡ 사업 참여 종료에 따른 처리

- 대상자 자격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참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혜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 사업 참여 종료 시에는 영양평가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인정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다른 관할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이사 전 지역에서의 자격은 취소)
 - 본인이 사업 참여를 중단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 ※ 이 경우, 3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라면 사업종료평가를 실시함
 - 3회 이상 사전 연락 없이 영양교육이나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 ※ 단, 자격 취소 이전에 연락을 취하여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야 함
 - ※ 3회 지각을 1회 결석으로 간주하는 등 지각에 대한 규칙 적용 가능함
 - 자격재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여 대상자격을 인정받았음이 밝혀진 경우
 - 관할 보건소에서 제공받은 식품을 교환 또는 판매,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 대상 자격 정지의 처리

- 대상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타 지역 체류가 길어져 자격기간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해당 지역으로 돌아와 자격을 유지시키고 싶은 경우, 대기자 수 및 보충식품비 등의 보건소 여건에 따라 내부규칙을 정할 수 있음
 - 단, 산후조리 및 결혼이민자가구의 고향방문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일시정지 기간은 3개월 미만으로 한정하고, 횟수는 대상자당 1회로 제한함
 - 또한, 대상자 선정 시의 구분변화 및 사업종료평가 일정은 변동되지 않음

■ 퇴록한 대상자의 재등록

- 퇴록한 대상자의 사업재등록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 퇴록자의 사업재등록 기준은 대상자에게 사업 참여 시점부터 공지하여 일관되게 운영되어야 함
 - 퇴록 후 영양문제가 다시 악화되면 해당 보건소의 신청대기자 접수 상황 및 보건소의 여건에 따라 2회에 한해 대상자로 재등록이 가능함
 - ※ 타 지역 보건소 참여 경력을 포함하여 사업재등록 횟수를 산정함
 - 차상위계층 이하의 재등록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권장함 단, 사업에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퇴록 후 1년이 경과해야 하며, 재등록 후 보충식품 제공기간은 6개월로 한정함
 - 퇴록한 대상자 중 임신부로 재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등록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퇴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임신 시 마다 자격기준에 부합하면 재등록이 가능함

*

임신부 재등록

- 임신부로 재등록하는 경우 사업수혜기간은 자격 만료 시점인 출산 후 6주까지로 제한함
- 단, 출산 예정일까지 2-3개월 미만 참여하게 될 경우 출산·수유부로 전환 가능하며 총 사업 수혜 기간은 6개월로 한정함

- 단, 농촌 및 도농복합지역은 대기자 등 자체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 신청대기자 등 자체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식품 제공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대상자격이 취소된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전체 사업재등록 불가함
 - 3회 이상 사전연락 없이 영양교육이나 보충식품을 받지 않은 경우
 - 자격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 제공받은 보충식품을 교환 또는 판매,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 ※ 단, 적용 시에는 사업 참여 전에 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

■ 타 지역과의 연계

- 대상자가 거주지를 옮긴 경우, 옮긴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사업에서 대상자격이 유지되도록 연계함
 - 전 지역 보건소로 해당대상자 관련 서류를 요청(공문 시행)하면, 해당보건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사업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해당대상자가 즉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 사업관련 서류 : 가구·대상자 기본정보, 영양상태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 영양교육·상담 기록, 기타 대상자 관련 서류 일체
- ※ 예산 등 여건으로 즉시 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신청대기자 명단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함

* 타 지역 연계 시 주의사항

- 대상자 연계 시 종료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관리시스템에서 종료 처리함
 - 타 보건소에서 연계된 대상자의 경우, 이전 보건소에서의 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 사업재등록의 경우, 타 지역 보건소의 참여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함
 - 이사 온 지역의 소득기준 및 우선순위에 맞추어 소득재판정 및 자격재평가를 실시함
 - 기타 자부담 적용을 비롯한 모든 규정은 새로 이주한 지역의 사업운영 원칙을 따르도록 함
-
- 관할 지역 내 거주자 분 아니라 타 지역 거주 대상자의 사업 신청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해당 보건소에 대상자 접수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영양 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함
- ※ 국무조정실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 혁신방안(지역제한규제 정비과제)> 방침

4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 자격판정을 위해 제출된 서류나 결과자료는 개인별 또는 가구별로 보관하고 대상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함
- 대상자 개인자료의 기록을 위해서는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한 보건소 별로 세부사항을 추가·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대상자 개인에 관한 자료는 사업 대상자격 판정 및 사업진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 자료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4 영양교육 및 상담

1 영양교육 및 상담의 원칙

■ 개요

- 교육방법 : 집단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 교육
- 보건소 별 지역특성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위의 3가지 방법을 이용한 적절한 영양교육 및 상담 계획 수립
- 최소한 1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접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교육 및 상담 실시
- 보충식품을 지원받지 않지만 관내 임신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영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는 홍보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영양교육 목표

-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 대상자 개개인의 영양문제를 해소함
- 지속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 대상자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킴

➔ 영양교육 대상

- 임신부, 수유부 및 출산부
- 영아 및 유아의 부모·보호자
- 교육이 가능한 유아의 경우 가능한 한 유아 대상자 본인까지 포함

➔ 영양교육 방법

- 영양교육은 개별 상담과 집단 교육 및 가정방문교육을 적절히 병행하여 실시하며 각 보건소에서는 사업 초기에 영양교육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대상범주 별로 바람직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과 모유수유를 촉진·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됨

➔ 영양교육 주기

- 최소한 1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대면하여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지역사회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의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접촉하도록 함

➡ 영양교육 주요내용

- 대상자 특성 및 영양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 방법을 교육함

- 사업설명회 - 영양플러스사업 목적 및 참여 방법
- 보충식품 이용 방법 - 식품 섭취·관리, 위생, 조리실습 등
- 식생활·영양관리
 - 대상별 식생활지침, 이유식 도입·진행방법, 모유수유 실천방법* 등
 - * 모유수유 교육 대상(임신·출산부)의 경우 필수 수행함
 -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교육(빈혈, 저체중, 비만, 편식 등)
- 식사계획 방법 - 식사구성안

➡ 기타 영양교육 원칙

- 영양교육의 제공 및 참여 상황에 대하여 기록하고, 개인별 파일에도 영양 교육 및 상담의 참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 영양교육 및 상담은 모든 대상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함
- 대상자의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피교육자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함
- 효과적인 영양교육을 위해 연간 교육 계획 및 각 교육별 교육안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되도록 함

■ 집단교육

- 소그룹(10명 이내) 교육을 권장
 - 1회 교육 시간은 20-30분 정도가 적당
 - 이론교육과 함께 대상자가 참여하는 활동(activity)을 포함
 - 개인상담을 병행할 것을 권장
 - 직장인 대상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등을 고려할 것을 권장
-
- 집단교육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한 번에 교육하기보다는, 가능한 여러 회로 나누어서 실시함으로써 소그룹에 대한 영양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
 -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이나 주말교육 실시 등 직장인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 시간이 계획되어야 함
 - 모든 대상자가 영양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며, 참여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
 - ※ 대상자가 사전에 연락 없이 무단으로 3회 이상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1회의 교육시간은 강의시간이 약 20-30분, activity가 약 20분 정도가 되도록 계획하는 것을 권장함

-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전반적 대상자 관리는 본 사업 전담영양사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1회성의 교육이 아닌, 사업기간동안 지속성을 갖고 진행되는 교육이 되도록 함
-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초빙강사를 이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예) 모유수유 시범·실습, 이유식 조리실습, 유아 구강교육 등
- 집단교육과 더불어 개인상담을 병행하여, 개별 대상의 영양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1회의 교육에서 대상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사전에 계획하여,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며, 반복적 교육이 되도록 계획함
-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대상자의 반응을 유도하고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소그룹 활동을 실시할 것을 권장함
- 교육 시 대상자와 시선을 맞추고 대상자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양방향의 교육이 되도록 배려하여야 함
- 매 회 교육에 대상자가 꼭 기억해야 할 주요 정보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교육을 끝맺기 전에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하도록 함
- 참가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과 언어로 교육하며 참가자의 영양적 요구와 흥미, 교육 정도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함
- 자녀를 동반하여 참석하는 경우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함
- 교육 전에 교육 리허설을 실시하고 교육 방법에 대해 담당자들 간 의견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함
- 안전한 교육이 되도록 사전에 교육장소를 점검하여야 함

■ 개인상담

- 대상자의 식생활 변화를 촉진하고 대상자 맞춤형 영양지도를 제공하기 위해, 집단교육 위주의 영양교육보다는 개인상담을 활성화하는 것이 적극 권장됨
- 개인상담은 사업 전담영양사에 의해 실시되어야 함. 상담의 경험이 없는 영양사의 경우, 사전에 경험 있는 영양사에 자문을 구하거나 상담에 참관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함
- 정기적 개인상담시간을 사전에 공지하고 대상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함
- 개인상담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 개인상담은 대상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되고 조용한 환경에서 실시하여야 함
- 상담 시작 전에 이전 상담 시의 상담 내용을 살펴본 후 해당 월의 대상자별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 상담 시에는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이나 대상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태도보다는 대상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함
- 매 회 상담을 시작할 때 부드러운 대화가 되도록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한 후 먼저 대상자 주변 환경의 변화나, 영양상태의 변화, 혹은 식생활 패턴의 변화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파악하고 나서 상담을 시작하도록 함
- 상담 시에는 「인사말 → 대상자 상태 파악 → 대상자와 함께 이 달의 목표 설정 → 목표 달성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 이 달의 목표 재확인 → 다음 상담일자 계획」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함
※ 대상자의 상황이나 필요에 맞게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가정방문 교육

- 대상자 선정 후 가능한 최소 1회 이상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가정의 상황을 파악하고 보충식품의 이용에 대한 교육 및 기타 개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장함
- ‘보충식품 보관 및 이용실태 기록지’ 및 영양교육에 필요한 도구를 지참함
- 보건소 타 부서 및 지역 내 대학, 기타 인력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함
※ 타 인력을 통해 정해진 양식에 따라 기본적인 식품보관상황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의 경우 전문인력이 재방문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음
- 가정방문교육 담당자(비정규직 영양사 포함)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기준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보건소 내 공용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 영양교육 및 상담 주요 내용

- 각 보건소에서는 영양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지침 내용을 바탕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함
- 중앙배포 교육자료의 내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이와 대치되는 내용을 교육하지 않도록 함
- 영양플러스 사업의 교육에 포함하도록 권장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양플러스사업 권장 교육내용

- ①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방법에 대한 교육
- ② 보충식품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
- ③ 대상구분별 식생활·영양관리
 - 영아 이유식 도입 및 진행방법
 - 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의 식생활·영양관리
 - 대상별 식생활지침
- ④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식생활관리
 - 빈혈, 저체중, 비만, 편식
- ⑤ 식사계획방법(식사구성안 활용 식사평가 및 식사계획)
- ⑥ 모유수유 촉진(우선순위 수행 권장)

➔ 교육내용별 권장 교육 방식

- 다음에 제시하는 교육 내용 중 필수 항목은 반드시 교육 및 상담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이고, 선택 항목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내용임
 - 단체 교육과 상담을 적절히 이용하여 필수항목이 교육되도록 함
- 모유수유 촉진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며, 모유수유 전문가 연계에 의한 대상자 교육 및 대상자 상담을 추진하는 것이 권장됨
- 한 주제에 포함된 내용을 한 번의 교육에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1회의 교육 내용은 너무 길지 않도록 적절한 분량으로 계획하여야 함

➔ 대상자별 교육커리큘럼(권장)

분 류	교육 내용	교육 방식(필수/선택)
기본교육 (모든 대상)	1.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방법 2. 보충식품을 이용한 음식 3. 식사계획방법(식사구성안) 4. 식품위생	(필수) 단체교육 (필수) 단체교육(배포자료 이용) (필수) 단체교육+실습 (선택) 단체교육
주요 영양문제별 교육	1. 빈혈(모든 대상) 2. 저체중(영아, 유아) 3. 비만(영아, 유아) 4. 편식(영아, 유아) 5. 변비(영아, 유아)	(필수) 소그룹 단체교육+activity (필수) 소그룹 단체교육+activity (필수) 소그룹 단체교육+activity, 온라인 교육 (필수) 소그룹 단체교육+activity, 온라인 교육 (선택) 소그룹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임신부 식생활/ 영양 관리	1. 임신부 식생활 지침 2. 임신 시 변화 3. 임신 시 체중변화/영양관리 4. 임신 중 위험요인 5. 모유수유 6. 산후조리	(필수) 단체교육+소그룹 토의, 개인상담, 온라인 교육 (선택) 단체교육, 개인상담 (필수) 개인상담+일부 단체교육, 온라인 교육 (필수) 단체교육, 개인상담, 온라인 교육 (필수) 전문가 단체교육+개인상담, 온라인 교육 (선택) 단체교육
출산부 및 영아 식생활/영양관리	1. 수유부 및 영아 식생활 지침 2. 모유수유 3. 이유보충식 도입 원칙 “우리 아이 무엇을 얼마나 먹일까?” 4. 이유식 만들기	(필수) 단체교육+소그룹 토의, 개인상담 (필수) 전문가 단체교육+개인상담, 온라인 교육 (필수) 개인상담+일부 단체교육, 온라인 교육 (필수) 단체교육+조리실습
유아 식생활/ 영양관리	1. 어린이 식생활 지침 2. 유아 영양관리 3. 우리 아이 간식으로 무엇이 좋을까? 4. 우리 아이 좋은 식습관 만들기 5. 치아 관리	(필수) 단체교육+소그룹 토의, 개인상담 (필수) 개인상담+단체교육, 온라인 교육 (필수) 개인상담+단체교육, 온라인 교육 (필수) 개인상담+단체교육, 온라인 교육 (선택) 타 사업 연계/전문가 초청교육
4-5세 유아용 교육자료(예시)	1. 식품 이름과 유래 알기 2. 식사구성안 알기 3. 식품위생-손씻기 4. 기타(간식, 편식, 식사예절 등)	단체교육+실습활동

➡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개설과목

- 영양플러스사업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서비스는‘EBS육아학교’ 웹사이트,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함
 ※ 자세한 이용 방법은‘영양플러스사업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시스템 매뉴얼’ 참조
-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운영 중, 불가피하게 보건소 내소가 어려운 경우(농번기, 출산, 맞벌이 가정 등) 본 온라인 영양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음
- 온라인 영양교육과정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음
 -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방법(이수 기준 등)에 따라, 사전에 대상자에게 온라인 교육과정 시스템 사용 방법 등 안내를 실시하고, 보건소별 대상자 교육 관리기준과 일정에 맞는 활용계획 수립 필요
- 영양플러스사업 대기자 및 수혜대상 범위 외 대상도 본 온라인 교육 과정 참여 가능함

주제	교육 내용
모유수유 성공비결	1. 모유수유의 효율성 2. 모유수유의 장점 3. 모유수유의 성공 조건 4. 모유수유의 기준선 5. 모유의 수유 기간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유방 관리	1. 모유수유를 위한 준비과정 2. 유방관리 이론 및 실천방법)
출산·수유부의 건강식생활	1. 출산 후 영양관리의 중요성 2. 출산·수유부의 식생활 지침 3. 수유부의 건강 밥상 포인트
이유식 성공비결	1. 이유식 손쉽게 시작하기 2. 이유식 실천 요령 3. 이유식, 이런 것이 궁금해요
유아식 성공비결	1. 유아식 손쉽게 시작하기 2. 유아기 주요 영양문제 3. 유아식, 이런 것이 궁금해요
영유아 변비 예방법	1. 변비란? 2. 배변의 기전 3. 변비의 원인, 기능적 변비의 발생원인 4. 변비의 예방 및 개선방법
임신기 영양관리 중요성	1. 임신기 영양 식사관리 중요성 2. 임신 단계별 올바른 영양관리(필수영양소) 3. 임신 주 피하여야 할 식품 4. 임신기 체중관리를 위한 식사

주제	교육 내용
임신기 체중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신기 체중관리 중요성 2. 바람직한 체중 증가량 3. 임신기 고혈압, 당뇨, 임신중독 등 위험 4. 출산 후 체중조절 필요성
영유아의 비만예방과 관리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체중, 비만 체크 2. 비만 원인 및 문제 3. 영유아 비만관리 유의점
유아 비만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 비만의 문제 식습관 2. 소아비만 사례 및 상담 방법
섭식행동 문제아동 행동 전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섭식문제의 원인 이해하기 2. 섭식행동(편식 등) 문제아동 행동전략
임산부와 영유아 평생건강을 위한 영양플러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양플러스란? 2. 영양플러스 참여 방법 3. 영양플러스 서비스 내용 4. 영양플러스 가족이 꼭 지켜야 할 약속
식품위생 및 보충식품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중독이란? 2. 식중독 예방원칙 3. 자주 발생하는 식중독 4. 보충식품 관리 및 보관방법
빈혈 예방과 조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빈혈의 원인 2. 빈혈 증상과 검사 3. 빈혈 예방과 조절 4. 철 보충제의 올바른 사용법
단계별 이유식 (이론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계별 이유식 시기 및 이유식 가이드라인 2. 단계별 이유식 제공 형태 및 제공 분량
단계별 이유식 (조리실습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기 이유식 레시피 2. 중기 이유식 레시피 3. 후기 이유식 레시피 4. 완료기 이유식 레시피
보충식품을 활용한 유아 간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기 간식의 필요성 2. 유아기 식습관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유아 보충식품 활용 레시피
식품알레르기 바로 알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알레르기 원인과 진단 2. 식품알레르기 증상과 경과 3. 식품 항원의 특징 4. 식품알레르기 관리방안

※ 다문화 가구 대상 번역 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 온라인 교육과정 연계 학습자료(PPT, 카드뉴스, 리플렛 등) 활용 가능

■ 영양교육 도구·자료

㉠ 중앙 배포자료

- 각 보건소에서는 중앙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이를 수정·보완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 중앙에서 배포하는 영양교육 자료에는 파워포인트 자료, 소책자, activity 자료, 마그넷, 상담용 시트지, 온라인 영양교육시스템 등이 포함됨
- 중앙배포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며 ‘자료실-발간자료’에서 직접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음

㉡ 보건소 개발 자료

- 중앙배포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교육하되 필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한, 기존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새로 개발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 각 보건소에서 자료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도록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대상자 영양문제의 해소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 교육 자료의 내용 인용 및 이미지 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개발된 자료는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

3 타 사업 등과의 연계

■ 의료기관과의 연계

- 대상자 중 심한 빈혈이나 질환 혹은 장애가 있는 경우 등 건강 및 영양상의 위험도가 높아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 및 의사에 소개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를 위해 본 사업의 대상자를 소개할 수 있는 보건소 내·외의 의사 및 의료 인력과 사전에 협의함
- 연계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여야 하며 이후의 진료 및 처치 진행상황에 대한 기록도 가능한 확보하도록 함

■ 타 기관 및 타 사업과의 연계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타 기관 혹은 타 사업과 적극적인 연계체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초기 및 사업 수행 중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장함
- 본 사업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연계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사업 홍보를 위한 타 기관과의 연계 : 시·군·구청, 관내 소아과 및 산부인과,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사(기초생활수급자 파악 및 대상자 추천), 지역 신문사 및 방송사 등
 - 보건소 내 타 사업을 통한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추천
 - 영양교육 특수주제를 위한 전문가 활용 : 모유수유, 구강교육, 임산부 운동, 유아체조, 아토피·식품알레르기 등
 - 영양교육을 위한 관련 사업과의 연계 : 모자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 영양교육 및 상담을 위한 연계 : 지역 내 대학 등
 - 가정방문교육을 위한 타 사업 및 타 기관과의 연계
 - 방문보건사업과의 연계
 - 지역 내 대학과의 연계 : 방문 보조 인력으로 활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
 - 이 외에 기타 다양한 연계방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연계 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함

5 보충식품의 공급

1 보충식품패키지

■ 개요

➔ 보충식품이란

-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공급하는 식품을 뜻함
- 보충식품만 먹으면 모든 영양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식품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보충식품 내용

➔ 보충식품 선정

- 보충식품은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 선정되었음

- 관리영양소별로 영양밀도가 높은 식품 공급원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관리영양소 : 에너지,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C
- 식품의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 품질과 선도가 유지가 용이하여야 함
-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어야 하며, 식품의 가격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함
- 사업수혜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식품이어야 함

■ 식품패키지 적용 세부사항

➔ 식품패키지의 종류

종류	대상	상세분류
식품패키지1	영아(생후 0~6개월미만)	모유수유/혼합수유/조제유
식품패키지2	영아(생후 6~12개월미만)	
식품패키지3	유아(만 1~6세까지)	-
식품패키지4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모유수유와 조제유를 함께하는 출산 후 여성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부터 보충 식품은 우유만 제공
식품패키지5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 후 여성	-
식품패키지6	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 모유수유를 실시하는 수유부	-

➡ 식품패키지 제공 기본원칙

- 식품패키지에 따라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공급
 - ※ 귤이 제철인 시기에는 귤을 우선으로 공급할 것을 권장하며, 오렌지주스를 제공할 경우, 가급적 100% 무가당 주스 등 첨가물이 없는 주스 선택
- 정의된 식품패키지별 구성 내용과 제공량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단, 특정식품을 자급자족하여 해당 식품이 남아 버리게 되는 경우나 본인이 양의 감소를 원하는 경우, 제공량을 감소시키거나 제외할 수 있음
 - ※ 이 경우,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 서명이 있는 확인서를 받아야 함

➡ 임신부가 출산한 영아의 경우 식품패키지 적용방법

- 어머니가 임신기에 대상자였거나 사업대상자격이 있었지만 대기자로 있어 자동으로 대상이 된 완전모유수유 영아의 경우 생후 6개월 미만까지는 공급되는 식품은 없음
 - ※ 단, 대상자로 등록하여 영아의 부모·보호자에 대한 영양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함
- 미숙아 혹은 성장발육이 느린 영유아의 식품패키지
 - 미숙아 혹은 성장발육이 느린 영유아의 경우, 실제 연령과 다른 패키지를 처방(역연령방식)할 수 있으며, 이는 의사 및 영양사와의 상담에 의해 결정함
 - ※ 대상자의 정확한 성장발육 상태 확인을 위하여, 의사의 소견서 확인 및 의사와의 사전 상담을 권장함

➔ 식품패키지별 구성 및 제공량(1인 1일 환산치)

기본 식품패키지						
식품명	식품패키지 1 (영아, 0개월 -6개월 미만)	식품패키지 2 (영아, 6개월 -12개월 미만)	식품패키지 3 (유아, 만1세 -만6세미만)	식품패키지 4 (임신· 수유부 ¹⁾)	식품패키지 5 (출산부)	식품패키지 6 (완전모유 수유부)
조제분유 ²⁾	필요량의 1/2까지	필요량의 1/2까지				
감자		25g	25g	50g	50g	50g
달걀 ³⁾		60g(노른자) ⁴⁾	60g	60g	60g	60g
당근		18g	18g	35g	35g	35g
쌀		45g	45g	90g	90g	90g
우유			400ml	400ml	200ml	400ml
검정콩			10g	15g	15g	15g
김			3g	3g	3g	3g
미역				2.5g	2.5g	2.5g
닭가슴살 통조림 ⁵⁾						27~30g
귤·오렌지 주스						귤 중 1개 주스 200ml

- 1)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제공
- 2) 모유수유를 우선적으로 권장하며, 필요량에 따라 제품에 표기된 권장섭취량의 1/2까지 제공
- 3) 달걀 60g(영양소 섭취기준 1인 1회 분량)은 달걀 1개로 계산하여 공급
- 4) 전란을 지급하되, 영아는 노른자만 먹도록 교육
- 5) 닭가슴살통조림의 경우, 닭가슴살을 진공(팩)으로 포장하여 제공 가능
 - * 닭가슴살, 두부, 호상 요구르트 등 냉장이 필요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냉장배송 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며,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해당 지역에서 담당하여야 함
 - * 또한, 식품 배송 즉시 유통기한과 식품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 각 식품패키지의 영양소별 주요 급원식품

영양소	식품패키지 1 (영아, 0개월 -6개월 미만)	식품패키지 2 (영아, 6개월 -12개월 미만)	식품패키지 3 (유아, 만1세- 만6세미만)	식품패키지 4 (임신·수유부)	식품패키지 5 (출산부)	식품패키지 6 (완전모유수유)
에너지	조제분유	쌀, 조제분유, 감자	쌀, 감자	쌀, 감자	쌀, 감자	쌀, 감자
단백질	조제분유	조제분유, 달걀노른자	달걀, 우유, 검정콩	달걀, 우유, 검정콩	달걀, 우유, 검정콩	달걀, 우유, 검정콩, 닭가슴살통조림
칼슘	조제분유	조제분유	우유, 검정콩	우유, 미역, 검정콩	우유, 미역, 검정콩	우유, 미역, 검정콩
철	조제분유	조제분유, 달걀노른자	달걀, 검정콩	달걀, 검정콩	달걀, 검정콩	달걀, 검정콩
비타민A	조제분유	조제분유, 당근	김, 당근	김, 당근	김, 당근	김, 당근, 굴
티아민	조제분유	쌀, 조제분유, 감자	쌀, 감자, 달걀	쌀, 감자, 달걀	쌀, 감자, 달걀	쌀, 감자, 달걀, 굴, 닭가슴살통조림
리보 플라빈	조제분유	조제분유	우유, 달걀	우유, 달걀	우유, 달걀	우유, 달걀
나이아신	조제분유	조제분유	검정콩	검정콩	검정콩	검정콩, 닭가슴살통조림
비타민C	조제분유	조제분유,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굴/ 오렌지주스

➔ 대체식품 내용 및 제공량(1인 1일 환산치)

- 제시된 기본식품 및 대체식품 외의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 되지 않음
※ 보충식품의 종류나 배송주기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지역 특성으로 인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함
- 지역별 특성 및 대상자의 요구도를 고려하여, 대체식품을 이용하여 식품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음
- 가능한 한 각 보건소에서는 각 대상구분 별 패키지의 내용을 통일하도록 함
- 각 식품별로 정해진 대체식품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한 식품패키지 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식품에 대해 동일한 대체식품을 중복 적용하지 않음

예 식품패키지3에서 감자와 검정콩의 대체식품으로 시리얼을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함

➔ 대체식품 구성 및 제공량

대체식품							
기본 식품명	대체식품명	식품패키지1 (영아, 0개월 -6개월 미만)	식품패키지2 (영아, 6개월 -12개월 미만)	식품패키지3 (유아, 만1세 -만6세미만)	식품패키지4 (임신·수유부)	식품패키지5 (출산부)	식품패키지6 (완전모유 수유부)
감자	국수류		- ¹⁾	100g/주	200g/주	200g/주	200g/주
	고구마		- ¹⁾	25g	50g	50g	50g
	시리얼		- ¹⁾	30g	30g	30g	30g
	채소류 및 과일류 ²⁾			전문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식품 선정			
당근	애호박, 서양호박		18g	18g	35g	35g	35g
	채소류 및 과일류 ²⁾			전문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식품 선정			
쌀	현미, 보리쌀, 찹쌀, 혼합잡곡			30g	45g	45g	45g
우유	호상 요구르트 ³⁾			80~100g	80~100g	80~100g	80~100g
검정콩	시리얼			30g	30g	30g	30g
	붉은 팥			10g	10g	10g	10g
	두부			60g	60g	60g	60g
	멸치			10g	10g	10g	10g
	닭가슴살통조림			9~10g	13~15g	13~15g	13~15g
김	채소류 및 버섯류 ²⁾			전문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식품 선정			
미역	채소류 및 버섯류 ²⁾			전문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식품 선정			
닭가슴살 통조림	참치통조림						27~30g
귤· 오렌지 주스	채소류 및 과일류 ²⁾						전문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식품 선정
영아용 생식품	이유식(분말)		하루표준량의 1/2이하				

- 1) 식품패키지2(영아, 6-12개월 미만)의 경우, 국수류·고구마·시리얼·귤(또는 오렌지주스)은 대체식품으로 적용 불가
- 2) 채소류 및 과일류 등을 대체식품으로 추가할 경우
 - 보건소 전문가위원회(영양전문가 1인 이상 필수 포함)를 구성·운영하여 대체식품 종류와 제공량, 배송 주기 등의 규정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전문가위원회는 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영양분과 위원 활용 권장
 - ※ 대체식품 선정 시 식품의 영양성분, 배송·보관 방법 및 단가 등에 유의하여 선정
 - ※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해당 지역에서 담당
- 3) 호상요구르트는 무가당 또는 당류 함량이 적은 플레인 제품으로 제공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유 제공량의 반 이상을 요구르트로 대체할 수 없음
(즉, 호상 요구르트는 '우유 200ml+호상 요구르트 1개(80~100g)'로 제공)
 - ※ 단, 식품패키지5(출산부)의 경우, 우유 제공량의 전체를 요구르트로 대체 가능

→ 대체식품 적용 시 유의사항

기본식품	대체식품	대체식품 적용
감자	국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자의 가격이 비싼 계절(봄 등)에는 대신 지급할 수 있음 영아용 식품패키지 2에서는 대체 불가
	고구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구마는 가격이 저렴한 계절에 한해 공급할 수 있음 영아용 식품패키지 2에서는 대체 불가
	시리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탕 함량이 높지 않으면서 철 함량이 100kcal 당 1.0mg 이상 강화된 제품 선택 영아용 식품패키지 2에서는 대체 불가
	채소류 및 과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위원회(영양 전문가 1인 이상 필수 포함) 운영을 통해 식품 선정
당근	애호박, 서양호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호박/돼지호박은 가격이 저렴한 계절에 한해 공급할 수 있음
	채소류 및 과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위원회(영양 전문가 1인 이상 필수 포함) 운영을 통해 식품 선정
쌀	현미, 보리쌀, 찰쌀, 혼합잡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미 또는 보리쌀로 제공하거나, 현미와 보리쌀을 혼합하여 제공할 수 있음 영아용 식품패키지 2에서는 대체 불가
우유	호상 요구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냉장배송 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며,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 철저 요망
검정콩	시리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탕 함량이 높지 않으면서 철 함량이 100kcal 당 1.0mg 이상 강화된 제품 선택
	붉은 팥	-
	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냉장배송 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며,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 철저 요망
	멸치	-
	닭가슴살통조림	-
김	채소류 및 버섯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과 미역은 비타민 A, B12 섭취를 위해 중요한 필수 공급 식품임 단, 어촌 지역 등 지역적으로 김, 미역이 흔한 경우 채소류 및 버섯류로 대체 가능
미역	채소류 및 버섯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위원회(영양 전문가 1인 이상 필수 포함) 운영을 통해 식품 선정
닭가슴살 통조림	참치통조림	-
귤·오렌지 주스	채소류 및 과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을, 겨울 등 가격이 저렴한 계절에는 귤을 공급하고, 봄, 여름 등 귤의 가격이 비싼 계절에는 100% 오렌지 농축과즙 주스를 공급할 수 있음 전문가위원회(영양 전문가 1인 이상 필수 포함) 운영을 통해 식품 선정
영아용 생식품	이유식(분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능한 한 대체하지 않음. 꼭 필요한 경우 쌀, 감자, 당근, 달걀 대신 시판분말이 유식을 기준량의 1/2 범위 내에서 공급할 수 있음. 이 경우 쌀, 감자, 당근, 달걀은 공급되지 않음

※ 식품패키지 구성 시 같은 종류의 식품이 중복 제공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함

㉞ 식품배송을 위한 제품 포장 단위의 선택

- 전달체계 및 저장기간을 고려하여 각 식품의 배달주기를 결정하며, 식품배달 주기에 따라 1회 배달 분량을 계산함
- 1회 배달 분량이 결정되면 실제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포장단위 중 제공되어야 하는 총량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허용량을 15%이상 초과하지 않는 분량으로 제공함
 - ※ 단, 시판되는 포장단위의 크기로 인해 분량을 맞추기 곤란한 경우나 작은 포장단위의 가격의 합이 오히려 더 높아 큰 포장을 선택함으로써 가격이 더 절약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㉞ 식품 공급량의 조정

- 1달은 일괄적으로 30일분으로 계산하거나, 실제 해당 월의 날짜 수를 반영 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공하여야 하는 날짜 수를 임의로 줄여서 지급할 수 없음
 - ※ 대상자가 식품 제공일 수를 줄여서 공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서명용지 추가협의사항에 서면 요청 문서 확보
- 가정방문이나 상담에서, 제공된 식품 중 일부에 대해 그 양을 대상자가 전량 섭취하지 못해 버리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한 영양상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섭취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교육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식품이 남아 버리게 되는 경우나 본인이 양의 감소를 원하는 경우 그 양을 일시적으로 줄여서 지급할 수 있음 (서면요청문서 확보)
 - 위의 경우와 같이 제공된 식품 중 일부를 줄여서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해진 대체 식품 범위 외의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등으로 일부식품을 줄이거나 제외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식품 배송 주기

- 저장기간을 고려하여 각 식품의 배달 주기를 결정하며, 배송주기는 다음과 같음
 - 감자, 달걀, 당근, 굴 : 유통기한 및 보충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배송함
 - ※ 대체식품으로 포함되어 있는 생식품 모두 포함
 - 우유 : 시유의 경우 약 2-3일에 1회, 혹은 매일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멸균우유의 경우 유통기간이 길더라도 1달에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공급함
 - 기타 식품(쌀,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오렌지주스) : 월 1회 배송함
- 퇴록 예정 대상자 중 월 1회 배송과 2회 배송 사이에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월의 패키지 배송분량을 모두 공급할 것을 권장함

2) 식품별 관리기준

■ 조제분유

➡ 모유수유 촉진을 위한 방침

- 모유수유를 촉진시키기 위해, 모유수유의 장점 및 세부 실천법을 교육하여 모유수유를 최대한 권유함

※ 완전모유수유의 경우에는 식품패키지 중 가장 많은 식품이 제공됨을 알려주어야 함

➡ 조제분유 제공 관련사항

- 수유방법을 파악하여, 완전모유수유·혼합수유·조제유 섭취 여부에 따라 개인별 조제분유 제공량을 결정함
- 모유수유의 권장을 위해 조제유는 분유회사에서 제시하는 표준섭취분량의 1/2 이하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즉, 조제유아인 경우 분유 회사에서 제시하는 하루 표준량의 1/2이하, 혼합수유아는 하루 표준량의 약 1/4 이하를 제공함

- 영아가 이전에 섭취하던 제품과 다른 조제분유를 받게 되는 경우
 - 처음에는 새로운 분유를 기존의 분유에 소량 섞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 배합 비율을 늘려감으로써, 새로운 분유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두도록 교육하여야 함
 -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 제공을 일시 중단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소량을 시도하도록 하며, 계속해서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 해당 보건소로 보고하도록 함
- 특수분유를 필요로 하는 대상은 제외할 수 있음
 - 이러한 대상의 포함 여부는 보건소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의료기관 등에 연계하여야 함

■ 시판분말이유식

㉠ 시판분말이유식 제공 방침

- 시판분말이유식은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꼭 필요한 대상의 경우에만 쌀, 감자, 달걀 및 당근 대신 공급 가능

㉡ 시판분말이유식 제공 관련사항

- 시판분말이유식은 회사에서 제시하는 하루표준량의 1/2 이하(대략 월 2캔 이하)로 제공함
-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한, 제공량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보건소별로 조정할 수 있음

㉢ 시판분말이유식 관련 대상자 교육사항

- 시판분말이유식은 가정에서 만드는 이유보충식에 첨가하여 영양소를 보충 하는 보충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교육하여야 함
- 영아가 시판분말이유식을 처음으로 섭취하게 되거나 기존에 섭취하던 제품과 다른 시판분말이유식을 받게 되는 경우
 - 처음에는 한 티스푼에서 시작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살피면서 점차 양을 늘려가도록 교육함
 - ※ 적응 기간 중에는 양을 줄여서 제공할 수 있음
- 시판분말이유식은 여러 가지 재료가 섞인 제품이므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여야 함
 -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 제공을 일시 중단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소량을 시도하도록 함
 - 계속해서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 제공을 중단하고 해당 보건소로 보고 하도록 하며 쌀·달걀·당근·감자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함

■ 조제분유 및 시판분말이유식 공통사항

㉠ 제품 선정

- 조제분유의 회사 및 제품의 선정은 보건소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가능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은 회사의 제품이며 질이 좋으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함. 그러나 최저가격인 제품을 선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1회 제공량과 유사한 포장단위를 제공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음
- 조제분유의 회사 및 제품은 대상자 개인별 선호도에 맞추지 않고 다수의 선호도를 감안하여 일괄적으로 한 개 혹은 몇 개의 제품으로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음

㉠ 제공 관련사항

- 1달에 1회의 빈도로 대상자에게 배달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유통기한이 넘었거나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지 않은 제품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신선한 제품으로 제공하여야 함
- 개봉 후의 유효기한도 확인하도록 하여, 유효기간 경과 시에는 즉시 이를 폐기하도록 교육함
- 대상자가 유통업체에서 직접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야 할 경우 보건소 담당자를 통하여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함

■ 우유

㉠ 우유 종류 선택

- 시유 중 원유나 멸균우유 중 선택할 수 있음
 - 원유의 경우 약 2-3일에 1회, 혹은 매일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멸균우유의 경우 유통기간이 길더라도 1달에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제공함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양의 우유를 한꺼번에 가정에 보관하여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 함
- 읍·면지역 등 대상자 가구가 넓게 분포되어있는 경우에는 멸균우유를 제공하는 것이 권장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수우유가 아닌 일반우유를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보건소의 방침에 따라 일반우유 섭취가 불가능한 대상에게 특수우유, 두유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대상자로부터 일반우유 섭취가 불가한 상황에 대한 관련 증명서류를 확보함

㉠ 제품 선정

- 우유 제조회사나 제품은 보건소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가능한 인지도가 높은 회사의 제품으로, 질이 좋으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최저가격의 제품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보건소 별로 우유는 회사 혹은 대리점과 직접 계약을 하거나, 유통 업체와 계약을 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섭취량이 낮은 경우 제공량의 조정

- 대상자가 제공한 우유를 다 섭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차적으로 섭취량을 늘릴 수 있도록 교육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식품이 남아 버리게 되는 경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 양을 일시적으로 줄여서 지급할 수 있음
- 우유 대신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 우유 관련 대상자 교육 사항

- 우유는 배달 후 냉장보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섭취하지 않도록 교육함
- 멸균우유도 개봉 후에는 냉장보관하고, 제품의 유통기한 및 개봉 후 유통 기한을 확인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섭취하지 않도록 교육함

■ 달걀

㉠ 제품 선정

- 달걀의 원산지, 회사 및 제품은 보건소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질이 좋으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최저가격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질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1회 제공량과 유사한 포장단위를 제공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음

㉠ 유통기한

- 유통기한을 감안하여 대상자가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고 섭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달주기를 선택함
- 최소한 배달 주기만큼의 유통기간이 확보된, 신선한 제품으로 제공하여야 함

㉠ 달걀 제공관련 대상자 교육사항

- 수령 즉시 유통기한을 확인하도록 함
- 반드시 냉장 보관하도록 하며, 이용 중에도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오래된 달걀을 섭취하지 않도록 교육함
- 영아의 경우(식품패키지 2) 반드시 달걀노른자만 섭취하도록 교육함

■ 당근·감자 및 굴

㉠ 제품 선정

- 당근과 감자 및 과일의 원산지는 보건소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질이 좋으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최저가격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가능하다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됨

㉠ 대체식품

- 식품패키지2(6-12개월 영아)의 경우, 감자 대신 국수류·고구마·시리얼·꿀(또는 오렌지주스)은 대체식품으로 적용이 불가함
- 채소류·과일류·버섯류 등을 대체식품으로 추가할 경우, 보건소 전문가위원회(영양 전문가 1인 이상 필수 포함)를 구성·운영하여 대체식품 종류와 제공량, 배송 주기 등의 규정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전문가위원회는 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영양분과 위원 참여 권장
 - ※ 대체식품 선정 시 식품의 영양성분, 배송·보관 방법 및 단가 등에 유의하여 선정
 - ※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해당 지역에서 담당
- 우유의 대체식품인 호상요구르트는 무가당 또는 당류 함량이 적은 플레인 제품으로 제공함
 -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유 제공량의 반 이상을 요구르트로 대체할 수 없음
(즉, 호상요구르트는 '우유200ml+호상 요구르트1개'로 제공)
 - ※ 단, 식품패키지5(출산부)의 경우, 우유 제공량의 전체를 호상요구르트로 대체 가능
 - ※ 호상요구르트, 두부 등 냉장이 필요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냉장배송 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며,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해당 지역에서 담당하여야 함
- 식품패키지6(완전모유수유부)의 경우, 꿀(또는 오렌지주스) 및 닭가슴살통조림은 기본식품 패키지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타 식품의 대체식품으로 중복하여 제공하는 것은 불가함
- 시리얼을 대체식품으로 선택할 경우, 설탕 함량이 높지 않으면서 철 함량이 100kcal 당 1.0mg 이상 강화된 제품을 선택하도록 함
- 대체식품에 대한 적절한 보관 및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기타 식품

- 기타식품이라 함은 쌀,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주스 등을 말함

㉠ 제품 선정

- 원산지, 회사 및 제품은 보건소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질이 좋으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최저 가격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질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1회 공급량과 유사한 포장단위를 제공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음
- 김의 경우 조미되지 않은 김을 공급하는 것이 권장하며, 보관 시 눅눅해지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 단위를 선택하고, 대상자에게 보관방법을 교육하여야 함
- 닭가슴살통조림의 경우, 닭가슴살을 진공(팩)으로 포장하여 제공 가능함
 - ※ 닭가슴살을 진공(팩)으로 포장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냉장배송 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며,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해당 지역에서 담당하여야 함
 - ※ 또한, 식품 배송 즉시 유통기한과 식품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㉞ 배달주기 및 기타 제공관련 사항

- 기타 식품은 1달에 1회의 주기로 대상자에게 배달할 수 있음
- 대상자가 유통기한이 넘었거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 배달주기 이상의 유통기한이 확보된 신선한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함

3) 보충식품의 검수방법

■ 보충식품 검수 주기

- 식품공급업체별로 매월 1회 이상, 식품배송 준비 과정에 사업 담당자가 방문하여 배달 식품의 검수를 실시하여야 함

■ 보충식품 검수방법

㉞ 식품검수

- 식품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다음 사항 검수
 - 공산품의 식품별 유통기한 및 포장상태 확인
 - 공산품 및 생식품의 식품 별 중량 검수
 - 생식품인 감자, 당근, 달걀의 품질 검수
 - 달걀 : 껍데기 상태, 접시에 깨뜨렸을 때 흰자·노른자 높이 등
 - 감자 : 모양, 크기, 외상, 자른 단면 검수
 - 당근 : 겉표면, 외상, 향기, 굵기, 자른 단면

㉞ 식품 보관 상태 및 배송차량 확인

- (식품보관) 냉장온도, 위생상태 등
- 배송 식품 운송 전 차량 내부 온도측정
- 배송 중 식품보관 온도 측정

㉞ 매장조사

- 매장 검수 : 가격 조사, 상품 질 비교
 - ※ 가격 조사 시 소·중·대형 마트 및 업체 3곳 이상 조사하여 평균가 적용 권장
- 식품공급업체 제공 납품단가와 매장 시세가를 조사하여 비교 후 차이 발생 시 조치

㉞ 검수서 작성

- 발주수량, 품질, 포장, 규격 상태 등의 검수서 작성
 - ※ 검수서 작성 후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함

4 보충식품의 전달방법

■ 보충식품 전달방법

- 보충식품은 가정배달방식이나 직접분배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역특성에 따라 보충식품을 가정에 배달하는 방법과 식품공급업체나 보건소 및 직장 등에서 대상자가 직접 식품을 수령하는 방식 중 하나를 대상자가 선택함
- 가정배달방식의 경우 유통업체 혹은 각 식품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식품공급업체에서 가정으로 배달하도록 함
- 휴가철, 산후 조리 등으로 집을 비워 배달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자가 식품공급업체나 보건소 등에 가서 물건을 수령하도록 할 수 있음
- 대상자에게 1회의 사전 통지 후 2회 이상 사후 방문에 의해서도 배달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직접 식품공급업체 혹은 보건소에서 수령함
※ 단, 이 경우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였다는 기록과 재방문 날짜를 남겨서 방문 사실을 알리도록 함

■ 보충식품 수령 및 교환

㉠ 수령 확인증

- 각 대상자에게 보충식품이 정확히 배달되었는지, 또한 대상자가 보충식품을 수령하였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식품공급업체는 반드시 대상자로부터 수령확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보건소에 보고함
- 대상자가 식품공급업체나 보건소 등에서 물건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수령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수령확인증을 받아야 함
※ 대상자가 수령확인증에 직접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문자 또는 유선확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보충식품 전달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 식품 확인 및 교환

- 배달 시 대상자로 하여금 식품의 종류와 양, 물품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식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환하여야 하며, 이를 교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식품공급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함
- 대상자가 식품을 임의로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발견되는 즉시 대상자 자격이 취소되고, 해당 월 식품 패키지를 회수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함

- 해당 월 혹은 정해진 기간에 식품을 다 섭취하지 못한 경우 유통기한에 유의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반드시 폐기하도록 교육함

㉞ 대상자 등록서명용지의 보충식품 관리내용

- 대상자에게는 대상자 등록서명용지에 명시된 다음의 보충식품 관리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이에 확인 서명하여야 함



보충식품패키지 관련 사항

- 나/내(가 보호 중인) 아이에게 처방되는 보충식품 패키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 보충식품만 먹는다고 하여 영양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보충식품을 다른 식품과 함께 다양하게 이용 하여야 영양위험이 개선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보충식품의 안전한 수령과 변질 예방을 위해, 보충식품 배달기사와의 약속시간을 지켜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시간에 배달기사가 도착하였으나 대상자가 이를 2회 이상 지키지 않은 경우 식품공급업체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보충식품은 본인 혹은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수령 즉시 검수하고 확인 서명을 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보충식품 검수 시에는 1. 종류와 수량 확인, 2. 유통기한 확인, 3. 식품의 상태(신선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야 교환이 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당일엔 연락을 하지 않아 수령 당시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 보충식품은 올바른 보관방법에 따라 바르게 보관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부주의로 식품이 변질·파손된 경우에는 교환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 보충식품을 임의로 다른 식품이나 물건으로 교환하거나 판매 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것은 범법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고, 발견되는 즉시 대상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보충식품의 제품 선정 및 분량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운영지침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일정 원칙·범위 내의 식품만 공급 가능하므로, 대상자가 다른 식품이나, 공급 가능한 범위 밖의 다른 제품을 원할 경우, 그러한 요구가 수용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충식품 중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식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식품을 제외하고 식품패키지가 처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식품패키지 이용 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12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달걀 흰자는 알레르기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식품패키지 2에서 제공되는 달걀 중 노른자만 섭취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영아의 경우 보충식품 중 이전에 섭취하지 않았던 식품을 줄 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여 서서히 양을 늘려가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혼합수유 및 조제유수유 영아의 경우 분유가 이전에 먹던 제품과 다르다면, 기존 제품과 혼합하여 서서히 그 비율을 증가시켜가며 적응기간을 가져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보충 식품은 가능한 한 공급받은 해당 월에 섭취하도록 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폐기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5 식품공급업체의 선정 및 관리

■ 식품공급업체 선정

* 식품공급업체 선정 원칙

식품공급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각 시·도 및 시·군·구 원칙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실시

- 본 사업 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선정방법을 선택 및 필요한 조건을 설정함
 -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최저가낙찰제보다는 업체의 기술능력과 가격 등을 모두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제를 권장함
 - ※ 업체자격(예시) : 「식품위생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해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업종 또는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5212)]업종 등 신고를 득한 업체
 - 계약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 향상을 유도해야 함
 - 사업수행능력과 제안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본 사업 특성에 맞게 선정된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을 적용함
 - 평가항목은 입찰자의 이행실적, 재무상태, 사업수행계획, 시설설비, 위생상태, 입찰가격 부문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권장함
 - 평가는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며, 위원회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을 갖춘 자 등으로 구성함
- 식품공급업체는 식품의 효율적 관리 및 대상자에게 질 높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일괄 선정하는 것을 권장함
 - ※ 이 경우에도 시군구에 따라 시·도에서 선정한 식품공급업체 외 타 식품공급업체와의 별도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약 체결 가능
 - 단, 지역 상황에 따라, 보건소 별로 별도의 식품공급업체와 계약 체결 가능함
 -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자치부 지방계약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근거하여 추진함

➔ 식품공급업체 현장심사 내용(예시)

구분	평가항목
시설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소독기, 소독발판, 장화건조기 설치 및 관리 여부 • 환풍기, 방충·방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여부 • 용도별 공간 구분 여부 등
식품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장 온도(5℃ 이하) 준수 및 온도계 부착 여부 • 식품 보관 상태 및 냉장고 청결 상태 등

※ 위 항목 중 지역에서 계약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제외 및 추가 가능함

➔ 식품공급업체 계약 시 고려사항

구분	내용
물품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종류 및 가격
계약기간 및 대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계약 이전까지 유효하도록 설정 • 계약기간적용 기준일 명확히 설정(발주시점 기준/ 납품일 기준 등) • 대상자 추가 모집 시 배달가구 추가 가능서
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방법 / 발주시기 / 발주주기 등
자부담료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의 자부담료 수령관련 사항
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규격(지침 명시 내용) • 검수방법, 검수 시기 및 주기, 업체 준비사항 • 농산물 원산지 증명서 제출 • 검수 후 조치
배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송 시 유의사항 • 배송 중 식품보관온도 유지방법, 배송위탁 허용여부 등 • 배송직원의 서비스 태도 • 대상자에 대한 사전 연락 및 부재 시 처리방법 • 배송완료 확인방법
업체소재지 및 기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물류창고 등) 실제 소재지 및 기타 조건 상 배송에 문제가 없는지 고려 *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 • 냉동, 냉장 차량 보유여부
불성실 이행 시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송 누락, 지연, 오배송,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성실 이행 및 시정요구 불이행 시의 조치사항(예.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귀속 등) • 배달원에 대한 교육 •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항

※ 업체 계약 시, 배송될 물품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을 권장함

■ 식품공급업체 관리

- 식품공급업체 선정 후 식품 배송, 대상자의 식품 수령·보관 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함
- 식품공급업체로부터 위생관리를 위한 확인서 및 대상자 개인정보 수집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확인서를 받도록 함
- 식품업체 계약 체결 후 연 2회 이상 영양플러스사업 관련 교육실시를 의무화 함
 - 여름철 식품위생 집중관리를 위한 5~8월 중 1회 이상
 - 사업취지 및 목적, 사업내용, 서비스 및 민원응대 등 포함
- 배달원이 대상자에게 불친절하게 대함으로서 대상자가 불쾌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식품공급업체와의 계약 시 이를 분명히 하여야 함
- 식품공급업체의 배송원에 대한 관리교육 내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함
 - 식품공급업체에서는 배송원에 대해 정기적인 서비스 및 친절 교육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신규직원에게 대하여 사업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교육

■ 위생관리를 위한 확인서

- 식품공급업체의 식품 배송 및 대상자의 식품 수령과 보관과정에서 식품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업체 및 대상자 모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함
- 식품공급업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받아 보관하여야 함



식품공급업체 확인서

본 식품공급업체()는 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의 보충식품 배송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식품의 관리소홀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배송 시점에 식품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상이 없는 동일한 식품으로 교환 제공하도록 조치하고, 보건소에 연락하겠습니다.

소 속 _____ 직급 _____
담당자 _____ (인)

○○ 보건소장 귀하

6 사업데이터 관리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통한 사업데이터 입력·관리

- 각 보건소에서는 영양플러스사업 관리시스템(PHIS내 운영)에 대상자 관리내역 및 영양상태 평가 결과를 빠짐없이 정확히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함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원)	영양솔루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 관련 전반적인 데이터 입력	영양섭취상태조사 결과 입력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입력 마감 후 데이터의 입력 및 수정 불가능
- 입력 마감기간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통해 사전 공지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으로 입력되지 않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입력내용 및 입력 마감기한 등 세부사항은 124~125쪽 참조

1 대상자 선정 및 관리 관련

내용분류	질문 및 답변
대상자 선정	<p>Q. 실제로는 관내에 거주하나 주민등록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A.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대상 자격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반장의 증명서나 가구방문 등으로 거주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지역의 보건소 영양 플러스 담당자에게 기 수혜(이중 수혜)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p>
대상자 선정	<p>Q. 등본상에 기재된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증에 올라와 있는 가구원 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중 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를 계산해야 하나요?</p> <p>A. 가구원 수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가구원 수를 파악하되,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및 직계존비속 (대상자 및 배우자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2촌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자가 해당 가구의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 포함된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하여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라면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가구원 수를 근거하여 판단하도록 합니다.</p>
대상자 선정	<p>Q. 대상 자격기간 만료로 2-3개월 밖에 참여를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p> <p>A. 유아와 출산·수유부는 2-3개월 밖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기간이 되면 자격이 종료됩니다. 영아와 임신부는 영양위험요인이 있으면 유아와 출산수유부로 전환되어 계속 자격이 유지됩니다. 유아의 경우, 대상자격은 생후 72개월 미만까지가 자격유지기간이나, 약 6개월간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시 66개월 이하의 유아로 한정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p>
대상자 선정	<p>Q. 대상자 선정 시 빈혈 검사의 결과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나요?</p> <p>A. 영양평가 항목 중 빈혈, 저체중 등 '영양의학적 위험요인' 은 '식생활 위험요인' 보다 우선순위가 높으므로 빈혈 검사의 결과만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상자를 신속하게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신청자/대기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대상만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도 4가지의 영양위험요인 평가(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 섭취상태조사, 기타 예외조항조사 등)는 모두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 교육·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의 데이터는 반드시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특히, 24시간 회상법을 통한 영양섭취상태 조사는 대상자의 섭취 실태 파악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이므로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고 데이터의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p>

내용분류	질문 및 답변
대상자격	<p>Q. 영아의 경우(0-5개월) 완전모유수유를 하면 대상자가 되어도 식품 패키지로 공급할 것이 없는데도 대상자 자격을 갖는 건가요?</p> <p>A. 네 그렇습니다. 식품패키지로 공급할 내용은 없지만 영아는 대상자격이 있으므로, 보호자는 영양 교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생후 6개월이 되어 식품패키지 2로 전환 되면 쌀, 달걀, 당근 및 감자를 공급 합니다. 대신 완전모유수유를 하는 영아의 어머니(완전모유수유부)는 더 많은 식품이 지원되며, 사업에도 더 오래 참여할 수 있습니다.</p>
대상자격	<p>Q. 대상으로 참여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A. 타 지역에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가 해당지역으로 이사 온 후 영양플러스사업의 참여를 신청한 경우, 해당보건소에서는 공문을 통해 이사 전 지역의 보건소로 대상자 관련 서류를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사업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이사 온 대상자가 즉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상자는 기타 자부담 적용을 비롯한 모든 규정은 이전 후 지역의 사업운영 원칙을 따르도록 합니다. 참고로 예산상의 이유로 이전된 대상자를 즉시 참여하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전된 대상자를 대기자의 최우선 순위로 배정합니다. 이러한 대상의 경우에도 대기 기간 중 해가 바뀌어 소득을 다시 판정하여야 하는 시점이 된다면 소득재판정을 실시합니다.</p>
대상자격	<p>Q. 임신부로 등록이 되었는데 사업 참여 중에 유산이 된 경우에 자격을 유지시키나요?</p> <p>A. 영양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출산부로 전환하여 자격을 유지합니다. 단, 영양교육에 있어서는 출산부와 영아가 묶여 있으므로, 내용을 선별하여 영양교육을 받도록 합니다.</p>
대상관리	<p>Q. 완전모유수유부로 등록했다가 혼합수유나 출산부로 바꾸어달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p> <p>A. 교육을 통해 모유수유를 지속하도록 최대한 설득하여야 하며, 완전모유수유부의 경우 보충 식품 수혜기간이 더 길고, 식품패키지 내용이 더 많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특히 출산부로 바뀌면 대상기간은 완전모유수유부의 절반의 기간인 6개월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을 알도록 교육 합니다. 출산 후 6개월 이후의 대상자라면, 이러한 경우 엄마는 즉시 자격이 종료됩니다.</p>
대상관리	<p>Q. 엄마가 임신부로서 사업 참여 하다가 출산 후 완전모유수유를 실시하는 경우, 엄마의 자격 재평가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되지 않으면 영아는 어떻게 되나요?</p> <p>A. 완전모유수유부로 전환 뒤 엄마가 빈혈이나 저체중 등 영양의학적 위험요인 있으면 엄마, 영아 모두 2순위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엄마에게 영양위험요인 없으면 엄마는 자격이 종료되고, 영아만 3순위로 생후 6개월까지 자격을 인정받습니다.</p>
대상관리	<p>Q. 임신부로 재등록한 엄마가 출산한 영아는 어떻게 되나요?</p> <p>A. 임신부로 재등록한 엄마가 출산한 영아도 3순위로 인정되며, 생후 6개월까지 별도의 영양평가 없이 사업의 대상으로 자동 등록 가능합니다.</p>

내용분류	질문 및 답변
대상관리	<p>Q. 엄마가 임신 중 사업에 참여하였던 영아의 등록 시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A. 엄마가 임신 중 사업에 참여하였던 영아는 별도의 평가 없이 출생 후 자동등록이 되고 생후 6개월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일(식품배송 시작)은 가능한 생후 6주 이내로 할 것을 권장합니다.</p>
대상관리	<p>Q. 퇴락한지 1년이 안된 임신부가 바로 다시 재등록이 가능한가요?</p> <p>A. 퇴락한 대상자 중 임신부 자격으로 재등록을 희망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퇴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자격기준에 부합하면 재등록 가능합니다.</p> <p>※ 재등록한 임신부의 사업수혜기간은 임신부 자격만료시점인 출산 후 6주까지로 제한함</p>
대상관리	<p>Q. 임신 8~9개월인 임신부가 재등록할 경우 사업수혜기간은 출산 후 6주까지로 제한해야 하나요?</p> <p>A. 그렇지 않습니다. 재등록 임신부가 출산예정일까지 2-3개월 미만 참여하게 될 경우 출산·수유부로 전환가능하며, 총 사업수혜기간은 6개월로 한정합니다.</p>

2 소득 판정 관련

내용분류	질문 및 답변
소득기준	<p>Q. 건강보험료로 판정한 경우와, 기타 서류로 판정한 경우 소득기준의 판정결과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A. 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이나 차상위 증명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소득판정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기타의 자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참고자료로 이용합니다. 단, 위의 서류로 판정되지 않으나 사업 참여가 필요한 긴급한 대상자의 경우, 시군구청장이나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 혹은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p>
소득기준	<p>Q. 대상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출산 휴가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산출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A. 출산휴가는 휴직이 아니고 '재직'인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건강보험료 산출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p>
소득기준	<p>Q.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많으나 예산상 다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 지침상의 소득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80% 보다 기준을 낮추어 적용할 수 있나요?</p> <p>A.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이 더 낮은 대상에게 더 우선순위를 주어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침 상에서 대기자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면서 영양 위험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 1순위에 해당하며, 기타 대상의 경우에 대해 우선순위 2-7을 적용하되, 같은 우선순위 내에서 추가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더 낮은 대상에 추가로 우선순위를 두거나, 같은 우선순위 안에서 유아 중 1-2세의 유아에게 더 높은 순위를 부여하거나,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3인이상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족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p>
소득기준	<p>Q. 대상자 중 임신부의 수가 적어 선정의 어려움이 있는데 임신부의 경우에 소득기준을 완화할 수 없나요?</p> <p>A. 소득기준은 대상에 따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소득기준은 그대로 지켜서 적용해야 합니다.</p>
소득기준	<p>Q. 대상으로 참여한 임신부가 출산한 영아가 자동으로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소득 재심사가 필요한가요?</p> <p>A. 이와 같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영아의 경우에는 등록 당시에 반드시 소득재심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아의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후 자격재판정 시 소득 재심사를 실시합니다.</p>

3 보충식품 관련

내용분류	질문 및 답변
식품패키지	<p>Q. 대상자가 특별한 이유로 인해 특수분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상자에서 제외 시켜야 하나요?</p> <p>A.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특수분유에서 일반분유로 먹기 시작하는 시점에 대상자로 포함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보건소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분유를 먹고 중단하는 과정이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상담도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대상자를 의료기관에게 소개하여야 합니다.</p>
식품패키지	<p>Q. 대상자가 패키지 식품을 다른 가족과 나누어 먹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A. 패키지 식품은 해당 대상자가 섭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상자가 패키지 식품을 대부분 섭취 하도록 식사구성안 교육 등을 통해 식사계획을 하도록 하고 실천하게 하도록 합니다.</p>
식품패키지	<p>Q. 지급되는 식품 중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그 식품만 제외하고 공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머지 식품의 제공량을 조정하여 지급해야 하나요?</p> <p>A. 원칙적으로, 대체식품 외의 다른 식품으로 바꾸어 공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식품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체식품 범주에 속하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제품이 있다면, 보건소에 따라 이러한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p>
식품패키지	<p>Q. 12개월 유아로 패키지 3 지급대상이나, 아기의 발달저하로 이유식 섭취가 불가능하여 패키지 2 등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한, 조산아의 경우, 패키지2로 변환해야할 시기에 아기발달의 지연으로 수유를 하고 있는 경우 패키지 1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p> <p>A.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아이의 상태를 진단하여 효과적인 대상자 관리가 되도록 합니다.</p>
식품배달	<p>Q. 우유 공급에 있어 매일배송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아파트 지역이 아닌 일부 외곽 지역 가구에 대하여는 업체의 매일 배송에 어려움이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p> <p>A. 시유의 경우 2-3일에 한번 배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더 큰 포장단위의 우유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가격 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배송이 어려운 지역이라면 멸균우유를 공급할 것을 권장합니다.</p>
식품배달	<p>Q. 배송업체에서 월 2회 배송(당근, 달걀 등)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추가 1회의 배송을 하는 것은 배송비용의 낭비라고 생각 되는데 배송 횟수를 줄이면 안 되나요?</p> <p>A. 당근과 달걀, 감자 및 굴은 1개월분을 한꺼번에 배달할 수는 없으며, 배송간격의 원칙을 지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식품의 종류나 배송주기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지역 특성으로 인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및 한국건강증개발원(건강실천팀)과 협의 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p>
식품배달	<p>Q. 배송 시 수혜 대상자와 연락 등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p> <p>A. 대상자에게 배송날짜를 미리 알려주면 도움이 됩니다. 일부 읍면 지역의 경우 특정 일자에 보건 지소 등에 대상자가 방문하여 교육도 받고 식품을 받아가는 형태를 병행한 사례도 있습니다.</p>

4 영양교육 및 상담 관련

내용분류	질문 및 답변
단체교육	<p>Q. 여러 내용이 해당되는 가구의 대상자는 어떻게 교육해야 하나요?</p> <p>A. 한 가구에 여러 대상자가 함께 있는 경우 들어야 하는 교육의 내용도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건소의 상황에 따라 교육과 상담의 조합방법과 분반계획을 수립합니다. 관할 지역이 넓고 대상자의 보건소 방문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하루에 모든 대상의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계획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p>
가정방문	<p>Q. 가정방문교육 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예약하고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 교육 미출석으로 간주하여도 되나요?</p> <p>A. 이러한 세부 사항은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을 적용 하는 경우 사전에 이러한 원칙을 대상자들이 이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정환경이 어려운 대상의 경우 가정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대상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p>
교육방법	<p>Q. 농촌 지역의 경우 농번기 때는 대상자들이 농사일이 너무 바빠서 보건소에 와서 영양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합니다. 이런 경우에 영양교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p> <p>A. 대상자가 영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보건소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필요 합니다. 농사일을 끝내고 저녁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시간을 편성하거나, 농번기 시기에 맞춰 가정방문을 하여 개인 상담 등을 실시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지면교육이나, 전화 상담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p>
기타	<p>Q.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에서는 간혹 정신지체 등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상으로는 교육도 연속해서 3회 이상 받지 않으면 자격이 탈락될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p> <p>A. 원칙상 특별한 이유 없이 교육에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참석할 수 있는 다른 보호자가 있다면 그 보호자가 참여 하도록 하고, 보호자에 대한 교육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배려 합니다. 자격 지속 여부는 대상자 및 보건소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계속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식품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본 사업 참여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격을 취소하고 타 사업이나 의료기관 등에 연계할 수 있습니다.</p>

5 영양평가

내용분류	질문 및 답변
빈혈 검사	<p>Q. 대상자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p> <p>A. 보건소 내, 혹은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연결해 줍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소개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병원에 가도록 하면 스스로 병원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대상자를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주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합니다.</p>
섭취량	<p>Q. 한 가족에서 엄마와 영아는 위험요인이 있어 대상자가 되는데, 유아는 위험요인에 걸리는 것이 없는 경우, 탈락시켜야 하나요? 한 가족에서 식습관이 좋지 않는 것이라면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p> <p>A. 아무 영양위험이 없으면 같은 가족이라고 해도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의무 사항은 아니나, 영양교육은 유아보호자용 영양교육의 내용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p>
영양평가	<p>Q. 임신부가 출산 후 6주까지가 대상기간이나, 출산 후 6주 시점에 영양평가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p> <p>A. 이 경우 출산 후 10주까지 자격재평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재평가 기간에 의료기관에서의 검사한 혈중 헤모글로빈이나 신체계측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p>
영양평가	<p>Q. 자격재평가 시 대상 구분 변화로 인해 우선순위가 달라질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A. 우선순위는 대상자 선정 시 모든 대상을 수용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며, 이미 서비스가 개시된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선순위를 재적용하여 퇴록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격재평가 결과 영양위험요인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상구분 변화에 의해 우선순위가 변화되어도, 그와 관계없이 자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p>
영양평가	<p>Q. 임신부로 등록 후 유산된 대상자인 경우에도 출산수유부와 같이 유산 후 6주 이내에 자격 유지 평가가 필요한가요?</p> <p>A.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에 참여 중이던 임신부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별도의 영양평가 없이 출산부로 패키지를 변경하여 대상자격이 유지됩니다. 단, 영양상태 관리를 위해 출산부로 전환된 초기에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권장됩니다. 또한, 출산부로 참여한 후에는 자격재평가가 아닌 종료평가를 실시합니다.</p>
영양평가	<p>Q. 사업 종료 평가의 결과 영양위험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A. 대상자격 만료 기간까지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됩니다. 단, 평가 결과 영양위험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경우 1회(6개월간)에 한해 영양교육에는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p>
영양평가	<p>Q. 모든 대상자가 대상자 등록 후 6개월 시점에 자격재평가를 해야 한다면 사업 참여 6개월 이전에 만 6개월이 되는 영아의 경우 빈혈 또는 부적절한 이유식 도입 등의 식생활 위험요인을 모니터링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간평가 형식으로 영양평가를 진행해도 되나요?</p> <p>A. 영양평가는 사업초기평가, 자격재평가, 사업종료평가 등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해도, 대상자의 영양상태 파악을 통해 상담에 참고하고자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p>

6 데이터 관리

내용분류	질문 및 답변
데이터 관리	<p>Q. 접수 시에는 임신부였으나 사업 전(식품지급전)에 출산한 경우 대상구분 및 데이터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A. 대상구분이 출산부로 변화된 것으로 기록하고, 자격재평가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 종료 시 데이터와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서비스개시일이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상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참여 개시 시점에 출산부로서의 사업 전 영양평가를 실시할 것이 권장됩니다.</p>

7 기타

내용분류	질문 및 답변
담당자 교육	<p>Q. 전문인력 교육 참석 시 보건소에서 자주 출장을 간다며 싫어하여 출장 허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인력 교육이 꼭 필요한가요?</p> <p>A. 사업 및 대상자 교육에 대해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선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영양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교육 및 의견 교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본 사업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전문인력 교육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p>

Ⅳ-2 건강과일바구니사업

1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1 사업목적

- 식습관 형성 시기의 영양교육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 인식과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스스로 지속적인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평생의 건강 유지·증진
- 과일 및 채소의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에게 신선한 과일 및 채소를 간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과일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섭취량의 증가를 통해 건강식습관을 유도하여 비만 예방 및 성인기 만성 질환 예방

2 사업 대상

■ 대상자

- 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청소년
- 교내 「초등 돌봄교실」 이용 어린이 등
※ 지자체 실정에 맞게 아동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음

■ 지역아동센터 우선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어린이·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 담당부서에 등록되어있는 지역아동센터

3 사업 내용

■ 영양교육

➔ 개요

- (중점대상) 지역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어린이 등
- (교육장소) 지역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내

➔ 강사

- (공통) 보건소 영양사 또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영양사 파견
-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담당 교사
- (초등 돌봄교실) 돌봄교실 담당 교사 및 학교영양(교)사

※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 돌봄교실 담당 교사가 직접 교육을 할 경우 건강과일 바구니 교육프로그램 교수학습지도안 및 교사용 교육매체를 활용한 사전 지도자 교육 실시(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자료실-발간자료-지침/교육/홍보자료, 건강과일바구니 검색)

➔ 방법

- (교육횟수) 6차시(과일먹기 6차시, 채소먹기 6차시 중 선택가능) 현장의 실정에 따라 확대, 축소 조정가능
- (교육시간) 각 40분
- (교육방법) 체험중심의 교육진행
- (교육내용 및 매체의 구성) 교육매체는 보건소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지원하며, 그 내용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발간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함

차수	주제	내용	교육매체 종류				
			학습 지도안	파워 포인트	활동지	가정 통신문	동영상 자료
과일 1차	간식을 안전하게 먹는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 내가 먹고 있는 간식 살펴보기 • 식중독 예방하기 	○	○	○	○	○
과일 2차	간식으로 무엇을 먹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좋아하는 간식 고르기 • 건강한 간식 이야기하기 	○	○	○	○	○
과일 3차	과일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야기하기 • 건강도우미 과일이야기 • 알록달록 색깔별 과일이야기 	○	○	○	○	○
과일 4차	건강하게 간식을 먹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자전거에 대해 알아보아요 • 인스턴트 간식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 건강간식 OX 퀴즈 	○	○	○	○	○
과일 5차	건강한 어린이 튼튼한 어린이-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식생활 지침이야기 	○	○	○	○	X
과일 6차	내가 만드는 과일 요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일을 이용한 요리만들기 • 가로세로 낱말퍼즐 	○	○	○	○	X
채소 1차	과일이랑, 채소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 과일에 대한 애정도 테스트 • 과일과 채소의 공통점 알기 	○	○	○	○	X
채소 2차	꿀꺽꿀꺽 채소 맛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소 반찬 먹기 • 채소는 왜 먹어야 할까요? • 채소 먹는 방법 	○	○	○	○	X
채소 3차	채소야 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소밭 꾸미기 • 과일채소 빙고게임 	○	○	○	○	X
채소 4차	건강한 내 몸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체중의 의미알기 • 나의 건강체중 알기 • 건강체중유지의 좋은 점 	○	○	○	○	X
채소 5차	건강한 어린이 튼튼한 어린이-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식생활 지침이야기 	○	○	○	○	X
채소 6차	내가 만드는 채소요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소를 이용한 요리만들기 • 도전 골든벨 	○	○	○	○	X

➔ 교육자료

- 중앙배포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http://www.khealth.or.kr>)→ 자료실→ 발간자료 → 지침/교육/홍보자료에서 확인가능
- (가정연계) 영양교육 종료 후 가정통신문을 전달배부하고, 가능한 경우 학부모대상 교육도 실시하여 가정 내에서도 연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건강간식 제공

➔ 건강간식의 종류 및 배식량

- 건강간식으로 제철 생과일, 생채소 제공
 - 제공 간식의 종류는 단가 범위 내에서 제철식품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며, 어린이 및 청소년의 기호를 고려하여 다양한 종류가 번갈아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건강간식 종류 및 대상별 1회 배식분량
 -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예시로 제시함

구분	건강간식 종류	6~11세 어린이 가식분량 및 눈대중량	12~18세 청소년 가식분량 및 눈대중량
과일류	딸기, 수박, 참외	150g - 딸기 7개 - 참외(중) 1/2개 - 수박(중) 1쪽	300g - 딸기 14개 - 참외(중) 1개 - 수박(중) 2쪽
	귤, 감, 바나나, 망고, 키위, 사과, 배, 복숭아, 오렌지, 포도, 파인애플	100g - 귤(중) 1개 - 감 1개 - 바나나 1개 - 사과(중) 1/2개 - 오렌지 1/2개 - 포도 1/3송이	200g - 귤(중) 2개 - 감 2개 - 바나나 2개 - 사과(중) 1개 - 오렌지 1개 - 포도 1/2송이
채소류	오이, 당근, 단호박, 샐러리, 토마토(방울토마토)	70g	140g

㉠ 배식 시 주의사항

- 복숭아, 토마토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으로 분류되므로 배식 시 주의가 필요함
- 채소류를 간식으로 제공할 경우 1회 섭취 분량의 열량은 15 kcal로 과일의 50 kcal 보다 부족하므로, 과일과 함께 제공할 것을 권장함
- 식사섭취에 지장이 없도록 간식시간을 고려함
- 청소년의 경우 학교 또는 가정에서 과일을 이미 섭취하였을 경우 6~11세 어린이와 같은 분량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건강간식 전처리 방법에 따른 유의사항

-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 돌봄교실에서 직접 전처리를 할 경우
-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 돌봄교실 내에서 간식을 전처리(세척, 껍질 및 씨 제거,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기 등)하여 배식할 경우 1인 1회 제공량을 맞추는데 유의함
- 위생관리에 특히 유의함
 - 칼과 도마, 고무장갑 등 조리기구 및 용기를 통한 교차오염방지를 위해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수시로 세척, 소독해야함
 - 생채소, 생과일 담금세척을 하는 등 충분히 세척, 소독해야함
 - 전처리한 채소와 과일은 2시간 이내에 제공이 되어야 함
 - ※ 자세한 위생관리 및 급식업무는 지역아동센터 건강급식 길라잡이(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참조
- 식품납품업체에서 전처리를 할 경우
 - 사과와 같이 껍질까지 섭취하는 과일의 경우 특히 세척을 철저히 하며, 껍질 및 씨 등을 제거하여 1인 1회 제공량에 맞추어 포장함
 - 포장은 파우치, PET 용기 등 밀폐포장하며, 규격과 원산지를 표시함

㉢ 배송 및 검수

- 건강간식(과일 및 채소) 배송
 - 전처리한 과일 및 채소(신선편의 식품)는 지정하는 수령자(지역아동센터 및 초등 돌봄교실 등의 담당교사 및 조리원 등)의 주소지로 직접 배송
 - 당일배송을 원칙으로 하며, 배송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간식시간 이전에 규칙적으로 배송함
 - ※ 방학기간과 학기 중 식사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배송시간 사전 조정 필요
 - 수령자에게 정확히 배달되었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는 수령자로부터 수령 확인증을 받아야 하며, 1개월 단위로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 전처리하지 않은 통과일로 배송할 경우 수박 및 파인애플이 배식되는 날은 과일껍질의 폐기량이 많기 때문에 음식쓰레기 배출요일과 맞추어 해당 시설에 배송 할 것을 권장함

- 건강간식(과일 및 채소)검수
 - 보건소에서는 과일 및 채소의 배송 전 식품납품 업체 및 지역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을 수시 방문하여 직접 검수함
 -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 돌봄교실 담당자는 공급 과일에 대하여 배송일별로 검수, 검수서 작성을 권장함
 - 검수기준에 부적합한 과일 및 채소는 자체규정에 따라 반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검수자는 그 조치내용을 검수일지에 기록·관리함

2 학교기반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1 사업 목적

- 학교기반의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의 중요성 인식과 태도변화를 유도하여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평생의 건강 유지 도모

2 사업 내용

■ 영양교육

➔ 개요

- (중점대상) 초등학교
- (교육장소) 초등학교 각 교실 및 영양상담실

➔ 강사

- 초등학교 영양(교)사, 영양(교)사가 직접 교육하기 어려울 경우 보건소 영양사 또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영양사 파견
 - ※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직접 교육을 할 경우 건강과일 바구니 교육프로그램 교수학습지도안 및 교사용 교육매체를 활용한 사전 지도자 교육 실시

■ 방법

- (교육횟수) 반별 6차시(과일먹기 6차시, 채소먹기 6차시 중 선택가능) 현장의 실정에 따라 확대, 축소 조정가능

- (교육시간) 각 40분
- (교육방법)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진행
- (교육내용 및 매체의 구성) 교육매체는 보건소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지원하며, 교육하며 내용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개발한 자료 활용 가능
※ 한국건강증진개발원(<http://www.khealth.or.kr>) → 자료실 → 발간자료 → 지침/교육/홍보자료
- (가정연계) 영양교육 종료 후 가정통신문을 전달 배부하고, 가능한 경우 학부모 대상 교육도 실시하여 가정 내에서도 연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건강 메뉴급식 실시

➡ 개요

- (중점대상) 영양사를 통한 단체급식과 영양교육이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 (급식장소) 급식실 또는 각 교실
- (주요방법) 급식 시 가당주스, 음료, 유색우유 등 가공식품을 대신하여 제철 생과일, 생채소를 활용한 건강 메뉴 급식 실시
- (기타사항) 군고구마, 찐감자, 삶은 달걀, 찐 옥수수, 흰우유, 플레인요구르트 등 지방, 나트륨, 당류 및 첨가물의 함량이 적은 자연식품 간식도 권장할 수 있음

■ 사업평가

➡ 평가대상

- (주요대상) 영양교육 및 건강간식을 급식 받은 어린이 및 청소년
- (간접대상)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동돌봄 교실, 영양(교)사, 조리사 및 조리원, 학부모 등

➡ 평가방법

- 어린이 및 청소년 : 사업 참여 전·후 설문조사 실시(초등학교 저·중·고학년용 3종 구성)
- 간접대상 : 사업 후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설문지 및 평가방법 한국건강증진개발원(<http://www.khealth.or.kr>) → 자료실 → 발간자료 → 지침/교육 자료에서 확인 가능

➡ 평가내용

- 어린이 및 청소년 : 건강간식 선호도 및 섭취빈도, 식태도 및 지식 변화 등
- 간접대상 : 어린이 및 청소년 태도 및 식습관 변화 관찰 결과, 사업만족도 등
- 평가결과는 사업참여 대상자 및 학부모에게 환류하여 지속참여와 관심을 유도함

IV-3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 영양관리사업

1 사업목적

- 비만 및 만성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주민 대상의 영양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유도

2 사업대상

■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지역주민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희망자

- 보건소 의사 등 의사검진에 의해 건강위험군 또는 질환관리군으로 진단된 자
- 건강위험군으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보건소에 내소하여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 영양관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단, 보건소 실정에 따라 필요 시 기타 연령에 대해서도 서비스 가능

■ 대상자 구분 및 건강위험요인 기준

- 대상자 구분 기준

대상자 구분	구분 기준
건강군	• 건강단계 선정 기준에 따라 항목 모두 '건강'으로 판정되었으나 서비스를 희망한 자
건강위험군	• 검진·검사결과 '건강위험'요인* 7개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111쪽 참조)
질환관리군	• '질환의심' 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또는 의사의 확진을 받거나 치료제를 복용중인 경우

● 건강위험요인* 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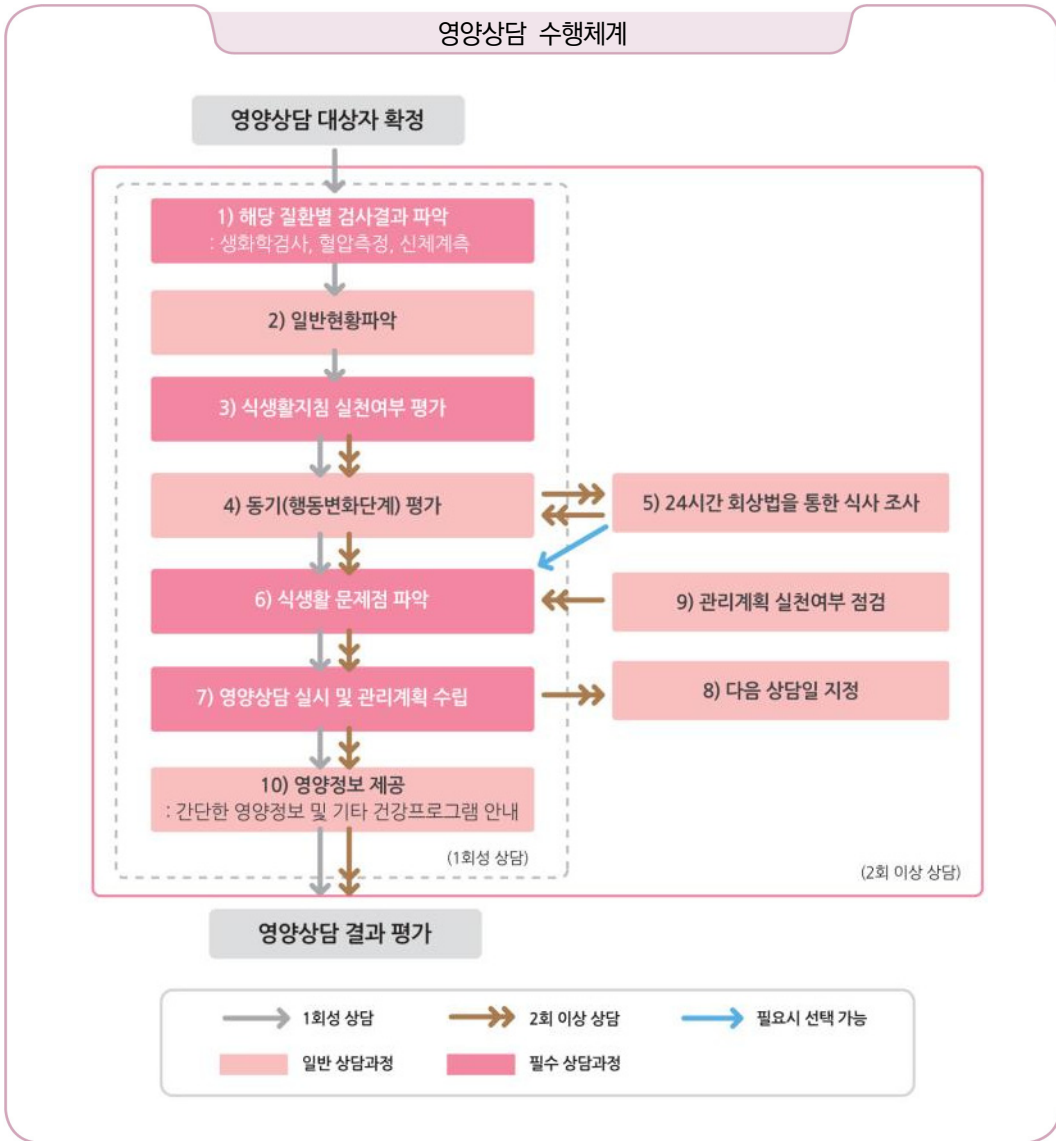
위험요인		판정수치	위험군분류	판정	
①	수축기혈압	120mmHg 미만	정상	건강	
		120-140 미만	고혈압 전단계	건강위험	
		140 이상	고혈압	질환의심	
②	이완기혈압	80mmHg 미만	정상	건강	
		80-90 미만	고혈압 전단계	건강위험	
		90 이상	고혈압	질환의심	
③	공복 혈당	100mg/dL 미만	정상	건강	
		100-126 미만	당뇨병 전단계	건강위험	
		126 이상	당뇨병	질환의심	
④	허리둘레	남	90cm 미만	정상	건강
			90 이상	위험	건강위험
		여	85 미만	정상	건강
			85 이상	위험	건강위험
⑤	중성지방	150mg/dL 미만	정상	건강	
		150-200 미만	경계역 중성지방혈증	건강위험	
		200 이상	고지혈증	질환의심	
⑥	총콜레스테롤	200mg/dL 미만	정상	건강	
		200-240 미만	경계역 콜레스테롤혈증	건강위험	
		240 이상	고콜레스테롤혈증	질환의심	
⑦	HDL-콜레스테롤	남	40mg/dL 이상	정상	건강
			40 미만	위험	건강위험
		여	50mg/dL 이상	정상	건강
			50 미만	위험	건강위험

* 건강위험요인 : 건강원스톱서비스 상담매뉴얼(2011,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재단)

■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 영양상담

- 24시간 회상법 또는 식품섭취빈도조사를 이용한 식품섭취조사를 통한 식생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향 맞춤상담
- 아래의 내용은 건강검진결과상담 매뉴얼 영양전문상담 자료를 활용함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http://www.khealth.or.kr>) → 자료실 → 발간자료 → 지침/교육/홍보자료 참고
 - (비만개선을 위한 영양상담) 목적, 목표, 대상자별 비만개선 목표 및 실천전략, 영양상담 내용, 식품별 열량 및 지방함량, 비만개선을 위한 조리요령 및 레시피, 비만개선 영양상담 관련 Q&A
 - (혈당관리를 위한 영양상담) 목적, 목표, 대상자별 혈당관리 목표 및 실천전략, 영양상담 내용, 식품별 당분함량, 혈당지수 및 식이섬유 함량, 혈당관리를 위한 조리요령 및 레시피, 혈당관리 영양상담 관련 Q&A
 - (혈압관리 위한 영양상담) 목적, 목표, 대상자별 혈압관리 목표 및 실천전략, 영양상담 내용, 식품별 나트륨함량, 혈압관리를 위한 조리요령 및 레시피, 혈압관리 영양상담 관련 Q&A
 - (혈중지질관리를 위한 영양상담) 목적, 목표, 대상자별 혈중지질관리 목표 및 실천전략, 영양상담 내용, 식품별 콜레스테롤 및 포화지방 함량, 혈중지질관리를 위한 조리요령 및 레시피, 혈중지질 관리 영양상담 관련 Q&A

영양상담 수행체계



■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 영양관리프로그램 운영

- 건강위험요인별(당뇨, 고혈압, 비만 등) 집단 영양교육 실시(질환별 지침 활용 권장)
- 식사구성안, 식생활지침,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활용 가이드북 등 교육
- 비만 및 만성질환 관리의 경우 신체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신체활동 교육과 연계 서비스 제공 권장
-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연계 권장
 - ※ 2021년 보건소 모일 헬스케어사업 안내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운영 안내서(영양)

IV-4 어르신 영양관리사업

1 어르신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1 사업 목적

- 노년기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고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어르신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

2 사업 대상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무료경로식당, 경로당, 노인정, 노인복지관 등)

3 사업 내용

■ 운영방법

- 교육 방법 : 강의, 시범·실습
- 교육 횟수 : 8주 과정
- 교육 시간 : 강의-30분, 시범·실습-2시간 내
- 교육 매체 : 교육용 PPT 자료, 교육용 궤도 자료, 그림 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http://www.khealth.or.kr>) → 자료실 → 발간자료 → 지침/교육/홍보자료 참고

■ 주제별 프로그램 내용

● 일반 어르신 대상용 프로그램(안)

회차	주제	내용
1	식생활 관리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밥상 평가를 통한 문제점 파악 • 나의 영양 위험도 평가 • 노화에 따른 신체의 변화 • 식생활과 건강한 노후의 관계
2	식품구매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구매 행동 중 바른 행동과 바르지 못한 행동 • 올바른 장보기의 필요성 • 올바른 장보기를 위한 구매 원칙 (경제적, 영양적, 위생적인 장보기 방법)
3	식생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활지침이란? (신체기관에 좋은 음식) • 노인 식생활지침과 관련 문제점
4	식사와 노년기 질환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가 필요한 식행동과 문제점 설명 • 단 음식 줄이기 • 짠 음식 줄이기 • 고기, 생선, 녹색 채소를 충분히 먹기
5	식품위생의 중요성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식품 위생에 대한 개념 • 올바른 식품 사용 방법 • 오래된 식품 관찰
6	식품위생의 중요성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 보관된 식품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7	건강한 조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로리와 염도 조절하기 위해 평소에 자주 먹는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조리방법을 소개 (저지방, 고식이섬유, 저염 음식)
8	식품구매 실습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만의 건강밥상 만들기 • 건강밥상을 위한 재료 구매 실습 • 식품구매 후 평가

● 고혈압 어르신 대상용 프로그램(안)

회차	주제	내용
1	식생활 관리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영양 위험도 평가 • 노화에 따른 신체의 변화 • 식생활과 건강한 노후의 관계
2	고혈압 식사관리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덜 먹어야 할 음식 찾기 • 건강한 식단 계획 • 소금과 혈압
3	실제 식생활에 적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금과 건강식사 • 다양한 색의 채소 먹기 • 기름은 다 나쁜 걸까요?
4	고혈압 식사관리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체중 유지하기 • 건강체중을 위한 건강식생활 • 비만과 혈압
5	식품위생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식품 위생에 대한 개념 • 올바른 식품 사용 방법 • 식품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 보관된 식품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6	올바른 외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표시제 알기 • 외식에 함유된 소금의 양 알아보기 • 외식 시 소금 섭취를 줄이는 방법 (올바른 메뉴 선정, 식사요령 등)
7	저염 조리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염 음식 만들기 • 다양한 음식의 저염 조리법 소개 • 저염 드레싱 및 식이섬유소
8	올바른 식단 체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염 음식 체험 • 고혈압 관리를 위한 식단 제시 • 음식선택 및 평가

주요변경내용

I. 개요

II. 추진방향

III. 사업내용

IV. 사업지침

V. 행정사항

VI. 참고자료

VII. 관련 서식

● 당뇨 어르신 대상용 프로그램(안)

회차	주제	내용
1	식생활 관리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영양 위험도 평가 • 노화에 따른 신체의 변화 • 식생활과 건강한 노후의 관계
2	당뇨 식사관리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덜 먹어야 할 음식 찾기 • 규칙적 식사 계획 (식사시간, 양, 속도 및 골고루 먹기 등)
3	실제 식생활에 적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색의 채소 먹기 • 올바른 지방섭취 방법 • 단순당과 복합당이란?
4	당뇨 식사관리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체중 유지하기 • 건강체중을 위한 건강식생활 • 비만과 당뇨
5	식품위생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식품 위생에 대한 개념 • 올바른 식품 사용 방법 • 식품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 보관된 식품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6	올바른 외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표시제 알기 • 건강한 간식 선택하기 • 외식 시 올바른 메뉴선정 및 식사요령
7	저열량 조리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열량 식단 제안(현명한 양념 선택) • 다양한 채소 음식 만들기
8	올바른 식단 체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열량 음식 체험 • 당뇨병 관리를 위한 식단 제시 • 단순당 함량 차이에 따른 간식 비교 체험

2 실버 건강식생활 사업

1 사업 목적

- 노인의 영양섭취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어 노인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의 필요성 증가
 - 식품구입과 조리 등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식생활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과일 및 유제품 등 건강간식을 제공함

2 사업 대상

■ 대상자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

3 사업 내용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연령기준 및 소득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 2단계 : 건강 스크리닝 실시
- 3단계 : 맞춤형 식생활관리(영양교육 방법 및 내용) 계획
- 4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게 식생활관리 및 건강간식도시락 서비스 제공

- ※ 영양사 : 대상자선정,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제공모니터링 등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타사업과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노인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 전문의 : 대상자의 구강기능(저작, 삼킴 등), 치매 등 신체상태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영양사와 필요시 수시 연계하여 진행
- ※ 건강 스크리닝 : 대상자의 건강상태(신체기능, 영양상태, 구강기능, 만성질환 여부 등)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건강 관리사업과 연계하여 결과 공유 권장

■ 식생활 관리 서비스 및 영양교육 실시

- (방법) 개인별 영양상태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 및 상담을 월 1회 실시
- (이론교육)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단체교육과 개인·가정방문 상담 선택
 - ※ 본 안내서 116~118쪽 참조
- (실습교육) 거동이 가능한 대상자인 경우, 스스로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동급식 조리 실습을 포함하여 교육
 - ※ 단체교육 시 이론과 실습교육을 함께 진행할 것을 권장
 - ※ 단, 거동 불편자의 경우 가정방문 상담 시 관련 정보를 공유

* 공동부역을 통한 실습교육

- (목적) 노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고립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사회적 서비스 및 사교의 기회를 제공
- 가까운 거리의 10명 내외의 노인들이 모여 한 가정의 공동부역을 이용하여 식사 마련하는 방식으로 조리 교육 실시
 - 노인들이 잘 모이는 곳이면서 공동부역이 가능한 취사시설을 갖춘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또는 공공시설에 식재료 제공
 - ※ 지역농산물(로컬푸드) 활용하여 제철 신선식품 선택
- 영양사는 사전 교육 계획을 설계하고 이를 위한 식재료를 결정
 - 메뉴는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대상자가 집에서 쉽게 조리 가능한 것
 - ※ 조리 실습 시 영양사를 중심으로 안전·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
 - ※ 조리 실습 교육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건강간식 제공

- (방법) 과일과 우유 및 유제품을 주 3회 제공
 - ※ 대상자 가구의 식품 저장 시설 및 공간 상태에 따라 횟수 조절
- 간식의 종류 및 제공분량

구분	세부내용
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2회 분량 제공(1회 분량 = 100g) ● 주 당 2~3가지 종류의 신선한 제철 과일을 제공 ● 원칙적으로 전처리(세척, 껍질 제거, 씨 제거)된 과일을 제공하나, 대상자의 소화 및 치아 상태에 따라 같은 형태 또는 주스도 제공 가능
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1회 분량 제공(1회 분량 = 우유 1개 또는 떠먹는 요구르트 1개)

■ 타사업과의 연계

- 노인 영양관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타사업과의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

* 연계 가능 사업

□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 (내용)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 큰 취약계층 대상자 가구별로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건강문제 스크리닝 :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파악
 - 건강관리 서비스 : 건강행태 개선,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생애주기별 건강문제관리 등
 -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 ※ (참고자료) 2021년 방문건강관리사업안내서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 (목적)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내용)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복지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등의 서비스 제공
 - (대상자)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 ※ (참고자료)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서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영양]

V



행정사항

- 1 영양플러스사업 현황 및 실적보고
- 2 현장 모니터링
- 3 사업설명회

V 행정사항

1 영양플러스사업 현황 및 실적보고

■ 주요 입력내용

- 내용 : 대상자 및 대기자, 보충식품비 예산, 인력, 영양교육 실시 현황
 ※ 자부담 대상자 및 보충식품제공 현황 등 추가 실적은 필요 시 요청
- 방법 : 매월 현황 및 실적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 입력하고 관리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_영양플러스_[NPC320]에서 입력 가능
- 입력마감 기한 : 반기별 보고('21년 7월 15일/ '22년 1월 15일)
 ※ 당해 연도 대상자 관리 정보 입력은 매년 말일 마감

■ 실적양식

① 대상자 및 신청대기자 현황					② 예산 현황		③ 인력 현황	
대상자				대기자	2021년 보충식품비		국비 인력 수	지자체 인력 수
목표 대상자수	총 수혜 대상자수	총 퇴락자수	현재 관리 대상자수	현재 대기자수	편성액	집행액		

④ 영양교육 실시 현황										
대면교육						기타교육				
단체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	온라인교육	우편 발송	전화 상담	SMS 및 인터넷 활용 정보전달	
교육대상	교육주제	교육 횟수	참여자 수	상담자 수	방문가구 수	수료 가구 수	건수	횟수	횟수	

■ 실적양식 가이드

구분	실적명	세부설명
대상자 현황	목표 대상자 수	2021년 계획서 예산상의 목표대상자 수
	총 수혜대상자 수	(누계값) 2021년 대상으로 있었던 모든 대상자 수 * '20년도 이월대상자 + '21년도 신규등록자
	총 퇴록자 수	(누계값) 2021.1.1.부터 현재까지의 퇴록자 수
	현재 관리대상자 수	실적 작성일 기준 현재 관리중인 대상자 수 * 실적 작성일 : 매월 말 * 퇴록자는 제외
신청대기자 현황	현재 신청대기자 수	실적 작성일 기준 현재 관리 중인 신청대기자 수 * [NPA015] 대기자 등록을 통해 자동 산출된 숫자를 기입하며, 대상자로 전환된 자는 제외함
예산 집행 현황 (2021년 보충식품비)	편성액	2021년 계획서 상 보충식품비 예산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집행액	(누계값) 2021년 1월부터 해당월까지 집행된 보충식품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사업담당자 현황 (전담 영양사 수)	국비인력 수	국비로 채용된 사업 전담영양사 수
	지자체 인력 수	지자체 예산으로 채용된 사업 전담영양사 수
영양교육 실시 현황	교육대상	임신부, 출산수유부, 유아, 보호자(영아, 유아, 영유아)
	교육주제	사업설명회, 조리실습(이유식, 간식 등), 식생활관리, 식품위생, 모유수유, 저체중, 빈혈, 편식, 식생활지침, 비만 등
	교육횟수	월별 실시 횟수
	참여자 수	교육대상별 참여인원 * 보호자대상 교육일 경우에는 영유아는 산출 제외
	기타교육	대면교육 외 실시하는 교육

주요변경내용

I. 개요

II. 추진방향

III. 사업내용

IV. 사업지침

V. 행정사항

VI. 참고자료

VII. 관련 서식

2

현장 모니터링

■ 현장방문 모니터링

- 2021년 중 시·도 및 보건소 영양사업과 관련하여 현장방문 모니터링 실시
- 현장방문 목적
 - 영양사업 추진현황 확인 및 사업운영 방법에 대한 현장 컨설팅
 - 사업운영 시 나타나는 문제점 확인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 현장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우수프로그램 발굴 등
- 현장방문 시 모니터링 사항
 - 사업 담당인력 채용 현황 및 업무내용
 - 대상자·대기자 관리 현황
 - 보충식품 공급 및 식품배송업체 관리 현황
 - 영양교육 및 상담, 가정방문교육 실시 현황
 - ※ 필요한 경우, 교육 현장 참관 실시
 - 사업데이터 입력 및 사업운영 관련 서류 관리 현황
 - 지역별 사업운영 특이사항 파악

3

사업 설명회

■ 연중 사업 및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개최
- 영양사업 안내서 개정 방향 안내 및 신규 개발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VI



참고자료

1. 영양플러스사업 관련 활용 가능한 매체
2. 어린이·청소년 대상 영양사업 관련 활용 가능한 매체
3.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사업 관련 활용 가능한 매체
4. 어르신 영양관리사업 관련 활용 가능한 매체

VI 참고자료

1 영양플러스사업 관련 활용 가능한 매체

※ 출처 및 다운로드

한국건강증진개발원(<http://www.khealth.or.kr/>) → 자료실 → 발간자료 → 지침/교육/홍보자료 → 검색
EBS육아학교(<https://www.ebspin.co.kr/>) → 영양+

번호	제목	표지	목차 및 주요내용
1	영양플러스사업 디자인 표준 자료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Basic system 2. Application item <p>* 영양플러스사업 로고 및 사업 홍보물 제작 시 활용 가능한 디자인 시안 수록(ai)</p>
2	모유수유 성공비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유 제대로 알기 2. 모유 제대로 먹이기 3. 모유수유 제대로 실천하기 <p>* 모유의 이해, 올바른 모유수유 방법과 노하우 등 수록 * 영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교육매체 제공</p>
3	영양만점 이유식 성공비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유식 손쉽게 시작하기 2. 이유식 실천요령 3. 부록 (식생활지침 등) <p>* 이유식의 기초와 이해, 실천요령 등의 자료 수록 * 영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교육매체 제공</p>
4	영양만점 단계별 이유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기 이유식(5~6개월) 2. 중기 이유식(7~8개월) 3. 후기 이유식(9~11개월) 4. 완료기 이유식(12~15개월) <p>* 단계별 표준 발육, 이유식 가이드, 이유식 레시피 수록 * 영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교육매체 제공</p>

번호	제목	표지	목차 및 주요내용
5	행복한 식사시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 아이는 지금 2. 유아식 즐겁게 시작하기 3. 유아기 주요 영양문제와 대처방법 4. 부록 (식생활지침 등) <p>* 표준 발육, 유아식의 이해, 영양문제와 해결법 관련 자료 수록</p>
6	행복한 식사, 즐거운 요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 아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2. 우리아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3.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요리활동 <p>* 권장 배식량, 레시피 및 요리활동 관련 자료 수록</p>
7	보충식품 맛있게 활용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미 및 보리 2. 국수 3. 고구마 4. 팥 5. 호박 6. 레시피 플러스 <p>* 보충식품을 이용하여 만드는 다양한 음식 레시피 수록</p>
8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이유식가이드 소책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Breastfeeding 2. What is baby food? 3. Preparatory baby foods(4-5 months) 4. Stage 1 baby foods(6-7 months) 5. Stage 2 baby foods(8-9 months) 6. Stage 3 Baby Foods(10-11 months) 7. Stage 4 Baby Foods(12-24 months) 8. Food Allergies and Eczema 9. Feeding Guide for Your Baby 10. Important notes and precautions <p>* 영어, 중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이유식 가이드</p>
9	우리 가족을 위한 건강한 밥상 차리기 (결혼이민자 가족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중독이란 무엇인가? 2. 음식을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 3. 자주 발생하는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기 4. TIP!! 보충식품 관리 및 보관 <p>* 식품위생 관리에 관한 교육용 PPT 및 유인물 자료</p>

번호	제목	표지	목차 및 주요내용
10	식품 위생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 음식 알기 2. 식품 구매하기 3. 식품 장보기 4. 식품 보관하기 5. 건강밥상 차리기 tip <p>* 영어, 중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한식 밥상 차리기 가이드 PPT 자료</p>
11	임신·수유기 때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신·수유기의 식생활 특성 2. 임신·수유기 단계별 영양소 섭취기준 3. 성인여성 권장식단에 임신·수유단계별 추가권장 식품의 예 <p>*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활용한 식사 계획 임신·수유부편 PPT 자료</p>
12	우리 아이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기의 식생활 특성 2. 유아기 권장식단 알아보기 3. 우리 아이에게 맞는 식단계획 해보기 <p>*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활용한 식사계획 유아양육자편 PPT 자료</p>
13	영양플러스 사업설명회 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양플러스란? 2. 영양플러스 참여 안내 3. 영양플러스 제공 서비스 4. 영양플러스 가족이 꼭 지켜야 할 사항 <p>* 대상자 선정 직후 수행하는 사업설명회 시 활용 가능한 한국어 및 베트남어 PPT 자료</p>
14	영양플러스사업 홍보 리플렛		<p>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플러스에 참여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영양플러스 참여를 위한 자격기준을 확인하세요 영양플러스 참여 신청, 이렇게 하세요</p> <p>* 사업홍보 시 활용 및 배포 가능한 한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영어, 중국어 리플렛 PDF 파일</p>
15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시스템 매뉴얼 (보건소 담당자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라인 교육과정 개요 2. 대상자 사이트 이용방법 3. 관리자 사이트 이용방법 <p>* 담당자용 소책자</p>

번호	제목	표지	목차 및 주요내용
16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시스템 이용안내 (대상자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라인 교육과정 접속 2. 로그인 3. 과정보록 4. 강의수강 5. 퀴즈 응시 및 이수완료 6. 교육이수 내역 확인 <p>* 대상자 배포용 리플렛</p>
17	모유수유성공비결 (임산부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유수유의 효율성 2. 모유수유의 장점 3. 모유수유의 성공조건 4. 모유수유의 기준선 5. 모유수유의 기간 <p>*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연계 교육자료(PPT)</p>
18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유방관리 (임산부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유 수유를 위한 준비 과정 2. 유방관리 이론 <p>*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연계 교육자료(PPT)</p>
19	출산수유부의 건강식생활 (출산수유부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산 후 영양 관리의 중요성 2. 출산·수유부의 식생활 지침 3. 출산·수유부의 건강 밥상 포인트 <p>*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연계 교육자료(PPT)</p>
20	이유식 성공비결 (출산수유부/ 영아 보호자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유식 손쉽게 시작하기 2. 이유식 식천요령 3. 이유식, 이런 것이 궁금해요 <p>*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연계 교육자료(PPT)</p>
21	유아식 성공비결 (유아 보호자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식 손쉽게 시작하기 2. 유아식 주요 영양문제와 대처방법 3. 유아식, 이런 것이 궁금해요 <p>*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연계 교육자료(PPT)</p>
22	영유아 변비예방법 (영유아 보호자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비란 2. 배변의 기전 3. 변비의 원인 4. 영유아 기능성 변비 발생 원인 5. 변비의 예방 <p>*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연계 교육자료(PPT)</p>

주요변경내용

I. 개요

II. 추진방향

III. 사업내용

IV. 사업지침

V. 행정사항

VI. 참고자료

VII. 관련 서식

번호	제목	표지	목차 및 주요내용
23	임신 중 변화와 관리 (임신부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신 중 엄마와 아기의 몸의 변화 2. 임신기 위험요인 <p>*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시리즈 교육용 소책자</p>
24	임신부 영양 및 식생활 관리지침 (임신부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신기 영양섭취 2. 임신기 체중관리 <p>*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시리즈 교육용 소책자</p>
25	임신부 건강문제 (임신부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신기 건강문제 2. 임신기 운동 3. 산후조리 <p>*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시리즈 교육용 소책자</p>
26	임신기 영양관리 중요성 (임신부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신기 영양 식사관리 중요성 2. 임신 단계별 올바른 영양관리(필수영양소) 3. 임신 주 피하여야 할 식품 4. 임신기 체중관리를 위한 식사 <p>*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연계 교육자료(PPT)</p>
27	임신기 체중관리 (임신부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신기 체중관리 중요성 2. 바람직한 체중 증가량 3. 임신기 고혈압, 당뇨, 임신중독 등 위험 4. 출산 후 체중조절 필요성 <p>*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연계 교육자료(PPT)</p>
28	영유아의 비만예방과 관리법 (영유아 보호자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체중, 비만 체크 2. 비만 원인 및 문제 3. 영유아 비만관리 유의점 <p>*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연계 교육자료(PPT)</p>
29	유아 비만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유아 보호자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 비만아의 문제 식습관 2. 소아비만 사례 및 상담 방법 <p>*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연계 교육자료(PPT)</p>

번호	제목	표지	목차 및 주요내용
30	섭식행동 문제아동 행동 전략 (유아 보호자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섭식문제의 원인 이해하기 2. 섭식행동(편식 등) 문제아동 행동전략 <p>*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연계 교육자료(PPT)</p>
31	보충식품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활용하기		<p>보충식품이란 보충식품의 안전한 보관 및 이용 방법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체크리스트 올바른 손 씻기</p> <p>*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연계 교육자료(리플렛)</p>
32	빈혈 예방과 조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빈혈의 원인 2. 빈혈 증상과 검사 3. 빈혈 예방과 조절 4. 철 보충제의 올바른 사용법 <p>*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연계 교육자료(PPT)</p>
33	단계별 이유식 (이론편, 실습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계별 이유식 시기 및 가이드라인 2. 단계별 이유식 제공 형태와 분량 3. 이유식 레시피 <p>*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연계 교육자료(PPT)</p>
34	보충식품을 활용한 유아간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기 간식의 필요성 2. 유아기 식습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3. 유아 보충식품 활용 레시피 <p>*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연계 교육자료(PPT)</p>
35	식품 알레르기 바로 알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 알레르기 원인과 진단 2. 식품 알레르기 증상과 경과 3. 식품 항원의 특징 4. 식품 알레르기 관리방안 <p>*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연계 교육자료(PPT)</p>

주요변경내용

I. 개요

II. 추진방향

III. 사업내용

IV. 사업지침

V. 행정사항

VI. 참고자료

VII. 관련 서식

2

어린이·청소년 대상 영양사업 관련 활용 가능한 매체

※ 출처 및 다운로드

한국건강증진개발원(<http://www.khealth.or.kr/>) → 자료실 → 발간자료 → 지침/교육/홍보자료 → 검색

번호	제목	표지	목차 및 주요내용
1	학생용 차시별 종합 교육 자료		과일 먹기 6차시, 채소 먹기 6차시 총 12차시의 교수학습지도안, ppt 자료, 가정통신문, 활동지, 동영상 등이 종합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자료 * 목차 및 수록된 내용은 ※ 참고
2	채소랑 과일이랑 학생용 활동 교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디서 왔을까? (과일의 일생 등) 2. 내가 사과야, 나는 호박인데? (과일, 채소 관찰하기) 3. 언제 먹어야 할까요? (과일의 선택과 보관) 4. 왜 먹어야 할까요? (과일의 영양소) 5. 나를 변신시켜줘 (뽀뽀한 요리) 6.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채소, 과일 1회 섭취 분량) 7. 만들기 (나만의 농장만들기)
3	채소랑 과일이랑 학생용 활동교재 교사지침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요 2. 교재 구성 3. 지도내용 4. 교수·학습 과정안 사례 <p>* '채소랑 과일이랑 학생용 활동 교재'를 위한 교사용 지침서</p>
4	학생용 가정통신문 및 활동지 모음집		과일 먹기 6차시, 채소 먹기 6차시 총 12차시의 가정통신문과 활동지가 수록되어 있는 PDF 자료

번호	제목	표지	목차 및 주요내용
5	건강과일 바구니 사업 매뉴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요 2. 계획 3. 내용 4. 행정 5. 기타사항 6. 관련 서식 및 실적보고 양식 <p>* 사업의 소개와 운영, 세부 내용, 행정사항, 관련된 각종 양식의 안내</p>
6	청소년을 위한 바른 식생활 지침 '건강한 미래'		<p>식품구성, 권장섭취량, 나트륨 및 지방 줄이기, 건강체중, 아침먹기 등의 내용을 수록한 리플렛(총 6쪽)</p>
7	어린이 식생활지침서 건강한 식생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사는 알맞게, 골고루 먹자 2. 바르게 선택한 간식을 먹자 3. 다양한 운동으로 건강 체중을 가꾸자 <p>* 편식, 아침, 나트륨, 식사예절, 영양표시, 적정체중 관련 교육자료</p>
8	아동비만예방 프로그램		<p>건강체중, 당, 나트륨, 지방, 간식, 식사, 영양표시, 식품구성, 신체활동 등 관련 교육 안내서 1종과 포스터 12종으로 구성</p>
9	청소년의 평생건강, 건강체중 만들기로		<p>비만, 과일 및 채소 섭취, 식생활지침에 관한 정보를 그림으로 나타낸 인포그래픽 자료</p>
10	나는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기의 식생활 현황 2. 청소년기 권장식단 알아보기 3. 나에게 맞는 식단계획 해보기 <p>*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활용한 식사계획 청소년편 PPT 자료</p>

주요변경내용

I. 개요

II. 추진방향

III. 사업내용

IV. 사업지침

V. 행정사항

VI. 참고자료

VII. 관련 서식

3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 영양관리사업 관련 활용 가능한 매체

※ 출처 및 다운로드

한국건강증진개발원(<http://www.khealth.or.kr/>) → 자료실 → 발간자료 → 지침/교육/홍보자료 → 검색

번호	제목	표지	목적 및 주요내용
1	건강검진결과 상담 매뉴얼 '영양전문상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검진결과상담 개요 2. 건강검진결과상담에 따른 영양상담 3. 비만개선을 위한 영양상담 4. 혈당관리를 위한 영양상담 5. 혈압관리를 위한 영양상담 6. 혈중 지질관리를 위한 영양상담 7. 영양상담을 위한 참고자료 8. 영양상담을 위한 관련 서식
2	만성질환관리 고혈압, 당뇨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필요성 및 목적 2. 집중관리군 선정 기준 3. 업무 흐름도 4. 동의서 <p>* 고혈압 및 당뇨병관리 교육용 소책자와 표준 매뉴얼 PDF파일 수록</p>
3	점차 감소하고 있는 건강체중 '성인여성'		성인여성의 비만, 건강체중, 신체활동 등의 정보를 그림으로 나타낸 인포그래픽 자료
4	성인여성 건강체중을 위한 신체활동 가이드 '성인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활동 알아보기 2. 체중, 근육, 지방 바로알기 3. 운동과 건강체중 4. 건강체중을 위한 운동 실천하기 <p>* 건강체중과 비만을, 신체활동에 관한 실천방안 수록</p>

번호	제목	표지	목차 및 주요내용
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활용한 개인의 식사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의 식사 기억해보기 2. 식사구성안과 식품군 알아보기 3. 나에게 맞는 권장식사 패턴 알아보기 4. 나의 식사 평가 해보기 5. 나의 식사 계획 해보기 6. 국민 공통식생활 지침 알고 실천하기 <p>* 식사평가 소책자 PDF파일</p>
6	나는 잘 먹고 있는 걸까?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활용한 개인의 식사평가' 소책자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PPT 교육자료
7	나는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인기의 식생활 현황 2. 성인기 권장식단 알아보기 3. 나에게 맞는 식단계획 해보기 <p>*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활용한 식단계획성인편 PPT 자료</p>
8	국민공통식생활지침 (국문, 영문)		<p>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 및 올바른 식습관 등 국민의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한 9가지 가이드라인</p> <p>* 국민공통식생활지침 영상, 리플렛, 카드뉴스, 포스터, 미니배너</p>

4

어르신 영양관리사업 관련 활용 가능한 매체

※ 출처 및 다운로드

한국건강증진개발원(<http://www.khealth.or.kr/>) → 자료실 → 발간자료 → 지침/교육/홍보자료 → 검색

번호	제목	표지	목차 및 주요내용
1	어르신을 위한 영양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년기의 신체변화 2. 어르신의 영양상태 확인하기 3.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 4.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지침 5.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안전가이드 6.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한 식생활 7. 폭염 시 영양관리 <p>* 노년기 신체 변화 및 영양상태 확인,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지침 등을 포함하는 교육용 프리젠테이션 PDF파일</p>
2	노인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아!흔에도 자신있게 건강식생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의 식생활은 건강한가? 2. 식품구매 방법 알뜰, 깨끗, 건강하게 식품 구매하는 방법 3. 식생활지침 <p>* 교육용 PPT 8종과 교육용 권도자료 3차시, 교육운영 매뉴얼, 기타 그림 자료를 포함</p>
3	나는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년기의 식생활 현황 2. 노년기 권장식단 알아보기 3. 나에게 맞는 식단계획 해보기 <p>*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활용한 식사계획 어르신편 PPT 자료</p>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영양]

VII



영양플러스사업 관련 서식



VII 영양플러스사업 관련 서식

[서식 1] 대상자 신청 관련 양식

- ※ 신청 접수 시에는 필요한 일부 항목만 조사하여도 무방함
- ※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 시작 시점까지 모든 항목이 조사되도록 함
 - 1) 대상자 가구정보 : 신청자 작성 가능
 - 2) 대상자 개인정보 : 신청자 작성 가능
 - 3) 대상자 개인정보-영양상태평가 : 담당자 작성
 - 관리프로그램 입력을 위한 참고자료
 - 서식에 포함된 내용조사는 필수이나, 본 서식 사용은 선택사항
 - 모든 영양평가 결과는 반드시 관리프로그램에 입력
 - 4) 식품섭취조사표

[서식 2] 사업 참여 확인 및 서명 양식

- 1) (필수) 대상자등록 서약서 :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확인 및 서명
- 2) (필수)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모든 사업대상자에 대해 확인 및 서명
- 3) (필수) 개인정보처리 보안서약서 : 식품공급업체 확인 및 서명

[서식 3] (필수) 영양지식 및 태도 조사지

- 1) 영아보호자용
- 2) 유아보호자용
- 3) 임신부용

[서식 4] (필수) 사업만족도 조사지

[서식 5] 대상자 신청 관련 기타 양식

- ※ 타지역 대상자 연계 요청서, 실제 거주지 확인서 양식 등

[서식 6] 대상자 관리 양식

- ※ 대상자 영양평가 및 구분변화 기록, 영양교육 및 상담일지, 보충식품 수령확인증, 식품보관 및 이용상황 기록지, 대상자 졸업(퇴락) 확인서 양식 등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신청서

대상자 가구정보 #1

※ 신청자는 굵은 선 안의 내용만 작성합니다.

시·도명		보건소명	
가구 ID			
세대주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
집 주소	(우편번호: -)		
기타 주소 (필요한 경우)	(우편번호: -)		
집 전화번호		휴대폰 1	
		휴대폰 2	
이메일주소		신청일	년 월 일

사업 참여를 원하는 가구원		※사업참여(희망) 가구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작성	
가구원번호	이름	생년월일	대상자유형
01			<input type="checkbox"/> 임신부(P) <input type="checkbox"/> 출산수유부(W) <input type="checkbox"/> 영아(I) <input type="checkbox"/> 유아(C)
02			<input type="checkbox"/> 임신부(P) <input type="checkbox"/> 출산수유부(W) <input type="checkbox"/> 영아(I) <input type="checkbox"/> 유아(C)
03			<input type="checkbox"/> 임신부(P) <input type="checkbox"/> 출산수유부(W) <input type="checkbox"/> 영아(I) <input type="checkbox"/> 유아(C)
04			<input type="checkbox"/> 임신부(P) <input type="checkbox"/> 출산수유부(W) <input type="checkbox"/> 영아(I) <input type="checkbox"/> 유아(C)
총 사업참여(희망) 가구원수	명		가구대상종류구분 ※ 담당자 작성 (예) 임신부+영아가구=PI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신청서

대상자 가구정보

#2

※신청서는 굵은 선 안의 내용만 작성합니다.

가구 ID ※ 담당자 작성	
-------------------	--

총 가족수	명 (태아포함)			
소득구분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대상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input type="checkbox"/> 기타	
모·부자 가정여부	<input type="checkbox"/> 모자가정	<input type="checkbox"/> 부자가정	<input type="checkbox"/> 조부모가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건강보험료 납부액 (본인부담금)				
가구원 1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지역	월	원	
가구원 2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지역	월	원	
가구원 3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지역	월	원	
합 계 ※ 담당자 작성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지역 <input type="checkbox"/> 혼합(직장+지역)	월	원	

참여 중인 기타 보건소 사업	수혜 중인 기타 복지/지원 사업
1. 2. 3.	<input type="checkbox"/>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조제유 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
위와 같이 영양플러스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작성란		
가족수 및 주거 확인을 위한 방법	기타 소득관련 참고자료 (선택사항)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 등본 <input type="checkbox"/> G4C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증명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증명 <input type="checkbox"/> 의료수급대상 증명 <input type="checkbox"/> 소득금액증명원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input type="checkbox"/> 월급명세서 <input type="checkbox"/> 고용·임금발행서 <input type="checkbox"/> 미과세증명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시군구청장/읍면동 사회복지사 추천 <input type="checkbox"/> 기타()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포함 확인 (필수)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카드/사본 ※ 건강보험료 확인: 다음 중 택 1 (필수)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고지서 <input type="checkbox"/> 월급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포함) <input type="checkbox"/>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포함)		
소득기준판정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보충식품비 자부담 대상여부 판정	<input type="checkbox"/> 자부담 대상	<input type="checkbox"/> 자부담 제외
특이사항 :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신청서

대상자 개인정보 [영 유아용]

※신청자는 굵은 선 안의 내용만 작성합니다.

대상자 ID					
이름	성별	□남 □여	국적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신청일	신청 시 연령/월령		[만]	년	개월

보호자명	※어머니가 있는 경우 어머니 이름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친척 □기타())				
주요 육아담당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친척 □기타())				
보호자(임신부 또는 출산부)가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 ('예'인 경우) 참여했다면 언제 참여하셨나요? □과거(년도) □현재 참여 중					

영아 (12개월 미만) - 건강·영양상태 및 식생활 관련 문항			
수유형태	□완전모유수유 □혼합수유 □조제유	신청일 이전 총 모유수유기간	개월
		신청일 이전 완전모유수유기간	개월
출생 시 신장과 체중은 얼마였습니까?	cm kg		
이유식을 먹고 있나요?	□예 □아니오 ※ ('예'인 경우) ■ 몇 개월에 이유식을 시작했나요? 만 () 개월 ■ 하루에 이유식은 몇 번 먹나요? () 회		
하루 수유 횟수와 양은 얼마나 되나요?	()회 (하루 총)ml		
일반우유(시유)를 먹고 있나요?	□예 □아니오		
어머니가 임신 중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사업참여 자격이 있었나요?	□예 □아니오		
[영아 중 모유수유아] 어머니가 영양불량으로 판정되었나요?	□예 □아니오		
영아 및 유아 - 알고 있는 질환 및 건강관련 특이사항이 있으면 써주세요			

※ 담당자 작성란입니다(자격판정 이후 작성)

자격판정일		접수자				
서비스개시일						
최초자격분류	□대상자 □부적합 □대기자					
신청 시 대상자 구분	□영아(12개월 미만)	□유아	우선순위	□1 □2 □3 □4 □5 □6 □7		
식품패키지 구분	□1 □2 □3 □4 □5 □6		영아용 (상세구분)	□모유 □혼합 □조제유		
				□시판이유식 공급		

주요변경내용

I. 개요

II. 추진방향

III. 사업내용

IV. 사업지침

V. 행정사항

VI. 참고자료

VII. 관련 서식

※관리프로그램에서 일부 항목은 자동 계산되므로, 기본사항과 측정치만 기록해도 무방합니다.

대상자 ID			평가일		
대상자 이름			평가일 당시 대상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P <input type="checkbox"/> W <input type="checkbox"/> I <input type="checkbox"/> C	
영양평가목적	<input type="checkbox"/> 초기대상자판정 <input type="checkbox"/> 자격재판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중평가 <input type="checkbox"/> 사업종료시평가				
위험요인 분류	측정항목	신장	체중	BMI	신장별체중
영양학적인 요인-신체계측	측정치	cm	kg	kg/m ²	X
	백분위수				
	영양학적인 위험판정	<input type="checkbox"/> 위험 <input type="checkbox"/> 비위험	<input type="checkbox"/> 위험 <input type="checkbox"/> 비위험	<input type="checkbox"/> 위험 <input type="checkbox"/> 비위험	<input type="checkbox"/> 위험 <input type="checkbox"/> 비위험
영양학적인 요인-빈혈	헤모글로빈 농도	g/dL	<input type="checkbox"/> 위험 <input type="checkbox"/> 비위험		본인(보호자) 서명
판정기준	지침참조				
영양학적인 요인 종합 판정		대상자격 기준에 적 합 () 부적합 ()			

판정일자		분석 도구	<input type="checkbox"/> 영양솔루션 <input type="checkbox"/> Can-Pro3.0 <input type="checkbox"/> 기타		
그룹명()		아이디()	프로그램 상의 평가일()		
위험요인 분류	측정항목(부적합 영양소에 √ 표시)		판정기준	식생활요인 위험판정	
식생활요인- 영양섭취조사 ※섭취조사지 및 영양솔루션 결과지 첨부 ※영양소 섭취 측정치 입력생략가능	<input type="checkbox"/> 에너지 <input type="checkbox"/> 단백질 <input type="checkbox"/> 칼슘 <input type="checkbox"/> 철분 <input type="checkbox"/> 비타민A <input type="checkbox"/> 리보플라빈 <input type="checkbox"/> 나이아신 <input type="checkbox"/> 비타민C <input type="checkbox"/> 티아민		지침참조	<input type="checkbox"/> 위험 <input type="checkbox"/> 비위험	
특이기타 사항					
식생활 요인 종합 판정		대상자격 기준에 적 합 () 부적합 ()			

※담당자가 작성합니다.

대상자 ID		
위험요인 분류	측정항목	영양의학적 위험판정
예외조항1 (영양의학적) ※ 자격재평가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임신부] 이전에 조산, 사산, 유산, 저체중아 혹은 선천성 기형아 출산 경험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위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비위험)
	[임신부/출산·수유부] 현재 쌍생아 이상을 임신/출산 하였나요? <input type="checkbox"/> 증명서제출확인	<input type="checkbox"/> 예(위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비위험)
	[출산·수유부] 저체중아를 출산하였나요?(2.5kg 미만)	<input type="checkbox"/> 예(위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비위험)
	[영아] 저체중아로 출생하였나요?(2.5kg 미만)	<input type="checkbox"/> 예(위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비위험)
예외조항2 (식생활요인)	[영아 3개월 미만] 이유식을 먹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위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비위험)
	[영아 6개월 이상] 이유식을 먹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비위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위험)
	[영아] 몇 개월에 이유식을 시작했나요?	<input type="checkbox"/> 만 3개월미만, 혹은 6개월 이상(위험) <input type="checkbox"/> 만 3-6개월 사이(비위험)
	[영아] 수유횟수는 하루에 몇 번인가요?()회 → 수유횟수가 월령에 비해 너무 적은가요?	<input type="checkbox"/> 예(위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비위험)
	[영아, 12개월 미만] 일반우유(시유)를 먹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위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비위험)
기타예외조항 ※ 자격재평가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영아] 어머니가 임신 중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사업참여 자격이 있었나요? ※이 경우 영아는 우선순위 3군으로 적용	<input type="checkbox"/> 예(위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비위험)
	[영아, 모유수유아] 어머니가 영양불량으로 판정되었나요? ※이 경우 영아는 어머니와 같은 우선순위군으로 적용	<input type="checkbox"/> 예(위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비위험)
	[수유부] 영아가 영양불량으로 판정되었나요? ※이 경우 수유부는 영아와 같은 우선순위군으로 적용	<input type="checkbox"/> 예(위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비위험)
	[기타요인]	<input type="checkbox"/> 예(위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비위험)
기타 예외조항 판정	대상자격 기준에 적 합 () 부적합 ()	

영양위험 종합판정 (예외조항 포함)
적 합 () 부적합 ()

식품패키지 구분					
1. 영아용 0-5개월 2. 영아용 6-12개월 3. 유아용 만1세-만6세미만 4. 임신, 수유부용 5.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후 여성용 6. 완전 모유수유를 실시하는 수유부용 4-2. 우유(혼합수유부, 출산후6개월 이상)	판정일	우선순위	식품패키지 판정	수유방법 (식품패키지 I, II의 경우)	시판이유식 공급여부 (식품패키지 II의 경우)
				모유, 혼합, 분유	비공급, 공급
				모유, 혼합, 분유	비공급, 공급
특이사항					

식품섭취조사표 [임신출산부 및 유아용]

성명: _____ (남, 여) 생년월일: _____ ID : _____
 날짜: _____ 면담자: _____ 분석도구: 영양솔루션 Can-Pro3.0 기타
 대상구분: 유아(1-5세) 임신전기(1-12주) 임신중기(13-26주) 임신후기(27-40주)
출산부 혼합수유부 완전모유수유부

★ 주의사항

- 하루 동안 먹은 모든 것을 기록해주세요
- 어제 먹은 내용이 평상시 식사패턴과 크게 다르다면 다른 날을 선택해주세요.

※ 위 날짜에 먹은 내용이 평상시 식사패턴과 같습니까? 예 아니오
 ※ 평소 하루 세 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십니까? 예 아니오
 ※ 평소 우유는 얼마나 드십니까? 하루에 _____ 회, 1회 _____ ml
 일주일에 _____ 회, 1회 _____ ml

※ 임신부가 사업 참여 중 출산한 경우
 출생 시 영아 신장 (_____) cm 체중 (_____) kg
 출산상태: 정상출산 유산 사산 조산 선천성기형 기타문제(_____)

식사구분	음식명	재료명	목적량(섭취량)	식사장소	비고
간식 (시분)					
아침 (시분)					
간식 (시분)					
점심 (시분)					
간식 (시분)					
저녁 (시분)					
간식 (시분)					

※ 식습관 관련 특이사항 및 상담 내용

주요변경내용

I. 개요

II. 추진방향

III. 사업내용

IV. 사업지침

V. 행정사항

VI. 참고자료

VII. 관련 서식

식품섭취조사표 [영어용]

성명: _____ (남, 여) 생년월일: _____ ID : _____

날짜: _____ 면담자: _____ 분석도구: 영양솔루션 Can-Pro3.0 기타

★ 주의사항

- 하루동안 먹은 모든 것을 기록해주세요
- 어제 먹은 내용이 평상시 식사패턴과 크게 다르다면 다른 날을 선택해주세요.

- ※ 영아는 밤중 수유를 합니까? 예 가끔 아니오
- ※ 영아는 식구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자주 가끔 아니오
- ※ 영아는 정해진 자리에서 식사합니까? 예 (아기용식탁 상) 아니오
- ※ 다음 중 이유식에 도입한 식품군은? 선택한 식품군에서 주로 요리에 사용하는 식품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식품군	도입여부	이유식에 도입한 식품 (모두 표시)				이유식 조리 시 자주 사용하는 식품
곡류군	○, ×	<input type="checkbox"/> 쌀	<input type="checkbox"/> 잡곡	<input type="checkbox"/> 감자	<input type="checkbox"/> 고구마	
채소군	○, ×	<input type="checkbox"/> 당근	<input type="checkbox"/> 호박	<input type="checkbox"/> 시금치	<input type="checkbox"/> 버섯	
과일군	○, ×	<input type="checkbox"/> 사과	<input type="checkbox"/> 배	<input type="checkbox"/> 바나나	<input type="checkbox"/> 귤	
어육류군	○, ×	<input type="checkbox"/> 고기	<input type="checkbox"/> 생선	<input type="checkbox"/> 달걀	<input type="checkbox"/> 두부	
우유군	○, ×	<input type="checkbox"/> 치즈	<input type="checkbox"/> 우유	<input type="checkbox"/> 요구르트		
유지류	○, ×	<input type="checkbox"/> 식용유	<input type="checkbox"/> 버터	<input type="checkbox"/> 마요네즈		

- ※ 식품 중 알레르기나 이상반응을 보이는 식품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있다면 어떤 식품입니까? _____

수유구분	시간	소요시간	(조제유) 상표	(조제유) 제품명	섭취량(ml)	비고
모유/조제	(시 분)					
모유/조제	(시 분)					
모유/조제	(시 분)					
모유/조제	(시 분)					
모유/조제	(시 분)					
모유/조제	(시 분)					
모유/조제	(시 분)					
모유/조제	(시 분)					
모유/조제	(시 분)					
모유/조제	(시 분)					

이유 (시간)	음식명	재료명	목적량(섭취량)	음식상태	비고
(시 분)				<input type="checkbox"/> 미음 <input type="checkbox"/> 죽 <input type="checkbox"/> 진밥 <input type="checkbox"/> 밥 <input type="checkbox"/> 주스	
(시 분)				<input type="checkbox"/> 미음 <input type="checkbox"/> 죽 <input type="checkbox"/> 진밥 <input type="checkbox"/> 밥 <input type="checkbox"/> 주스	
(시 분)				<input type="checkbox"/> 미음 <input type="checkbox"/> 죽 <input type="checkbox"/> 진밥 <input type="checkbox"/> 밥 <input type="checkbox"/> 주스	
(시 분)				<input type="checkbox"/> 미음 <input type="checkbox"/> 죽 <input type="checkbox"/> 진밥 <input type="checkbox"/> 밥 <input type="checkbox"/> 주스	

* (선택)식품섭취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상담시 이용

성명: _____ (남, 여) 생년월일: _____ ID : _____

날짜: _____ 면담자: _____ 분석도구: 영양솔루션 Can-Pro3.0 기타

※ 식품군별 섭취 상태

아침(아침 간식 포함)	<input type="checkbox"/> 곡류 및 전분류 <input type="checkbox"/> 고기, 생선, 달걀 및 콩류 <input type="checkbox"/> 유지, 견과 및 당류	<input type="checkbox"/> 채소 및 과일류 <input type="checkbox"/> 우유 및 유제품
점심(점심 간식 포함)	<input type="checkbox"/> 곡류 및 전분류 <input type="checkbox"/> 고기, 생선, 달걀 및 콩류 <input type="checkbox"/> 유지, 견과 및 당류	<input type="checkbox"/> 채소 및 과일류 <input type="checkbox"/> 우유 및 유제품
저녁(저녁 간식 포함)	<input type="checkbox"/> 곡류 및 전분류 <input type="checkbox"/> 고기, 생선, 달걀 및 콩류 <input type="checkbox"/> 유지, 견과 및 당류	<input type="checkbox"/> 채소 및 과일류 <input type="checkbox"/> 우유 및 유제품

적절성 및 평가: 적합 부적합

평가 내용: _____

※ 주요 관리 영양소별 섭취 상태

에너지 섭취량은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단백질 섭취량은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칼슘 섭취량은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철 섭취량은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비타민A 섭취량은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티아민 섭취량은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리보플라빈 섭취량은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나이아신 섭취량은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비타민C 섭취량은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기타 식습관 평가

식사 장소나 시간은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식사를 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간식의 양과 형태는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식습관 관련 특이사항 및 상담 내용

영양플러스+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서는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정기적 영양평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귀하 및 귀하의 자녀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양플러스사업의 참여를 위해서는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충식품의 잘못된 보관과 이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해를 방지하고, 대상자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읽고 확인 표시(√)를 한 후 서명을 하시면 대상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수집된 귀하의 정보는 서비스 제공 및 국가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도명: _____ 보건소명: _____ 대상자명: _____ ID: _____

I. 영양플러스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사항

- 본인은 본 사업의 수혜 자격여부 판정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겨서 수혜자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충식품제공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반환하고 그 외 불이익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영양플러스사업 참여는 거주지 관할 1개 보건소에서만 가능하며, 동시에 2개 이상의 보건소에서 혜택을 받는 경우 보충식품의 제공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반환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는 조제유지원 사업(영유아 대상)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임산·출산수유부 대상) 등 식품을 지원받는 유사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나/내(가 보호 중인) 아이가 개선하여야 할 영양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 나/내(가 보호 중인) 아이의 영양문제 개선을 위해, 담당자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II. 보충식품패키지 관련 사항

- 나/내(가 보호 중인) 아이에게 제공되는 보충식품패키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 보충식품만 먹는다고 하여 영양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보충식품을 다른 식품과 함께 다양하게 이용하여 영양위험이 개선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보충식품의 안전한 수령과 변질 예방을 위해 보충식품 배달기사와의 약속시간을 지켜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시간에 배달기사가 도착하였으나 대상자가 이를 2회 이상 지키지 않은 경우 업체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보충식품은 본인 혹은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수령 즉시 검수하고 확인 서명을 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보충식품 검수 시에는 1. 종류와 수량 확인, 2. 유통기한 확인, 3. 식품의 상태(신선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야 교환이 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당일에 연락을 하지 않아 수령 당시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 보충식품은 올바른 보관방법에 따라 바르게 보관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부주의로 식품이 변질/파손된 경우에는 교환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 보충식품을 임의로 다른 식품이나 물건으로 교환하거나 판매 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것은 범법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고, 발견되는 즉시 대상 자격이 자동 취소됨을 알고 있습니다.
- 보충식품의 제품 선정 및 분량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운영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정 원칙·범위 내의 식품만 공급 가능하므로, 대상자가 다른 식품이나 공급 가능한 범위의 다른 제품을 원하더라도 그러한 요구는 수용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충식품 중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식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식품을 제외하고 식품패키지가 처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식품패키지 이용 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12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달걀흰자는 알레르기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식품패키지 2에서 제공되는 달걀 중 노른자만 섭취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영아의 경우 보충식품 중 이전에 섭취하지 않았던 식품을 줄 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여 서서히 양을 늘려가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혼합수유 및 조제유수유 영아의 경우 분유가 이전에 먹던 제품과 다르다면, 기존 제품과 혼합하여 서서히 그 비율을 증가시켜가며 적응기간을 가져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보충 식품은 가능한 한 공급받은 해당 월에 섭취도록 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폐기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III. 영양교육 관련사항

- 영양교육과 상담을 위한 담당자와의 약속시간을 지켜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영양플러스사업에서는 영양교육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영양교육·상담에 참여하여야함을 알고 있습니다.
- 충분히 수처에 걸쳐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육에 여러 회 불참하는 경우 대상자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IV. 기타 사항

- 대상자의 영양위험 해소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정기적인 영양평가(빈혈검사, 신체계측, 식사섭취평가) 및 설문조사에 협조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일정기간 사업에 참여하여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되거나 자격인정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에서 '졸업(퇴락)' 하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 [기타 추가 협의사항] 위의 사항 외에 보충식품 공급 및 기타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대상자와 담당자 간에 다음과 같이 협의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추가 협의 내용 :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_____ 대상자 서명 _____

본 사업과 관련하여 측정된 영양평가 결과나 설문내용은 본 사업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이용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나 세부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으며, 사업 참여 자격여부판정, 보충식품배송 및 본 사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분석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제공 등)를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위의 내용을 빠짐없이 대상자에게 설명하였으며, 대상자격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_____

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사업 참여 중 위의 내용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상자 서명 _____

《영양플러스사업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영양플러스사업에서는 귀하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 가정방문, 보충식품 배송을 원활히 제공하고 신체계측, 혈액 분석, 설문조사자료 기록 보존 및 결과처리에 이용함으로써 귀하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기타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영양플러스사업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합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름, 국적, 주민등록번호, 성별, 세대주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대상자 등록 및 관리, 원활한 영양 교육·상담 및 가정방문, 보충식품 제공 등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서면 및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수집	수집 후 3년간

- ※ 주민등록번호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수집처리하고 대상자 등록 관리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영양플러스사업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민감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합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소득정보) 총 가족 수, 소득수준, 모·부자 가정여부, 건강보험료 납부액, 수혜 보건복지 사업 참여 내용	대상자 등록, 자격재판정, 보충식품 자부담 대상 선정 등 대상자 관리	수집 후 3년간
(건강정보) 혈액분석치, 신체계측치, 식생활 조사치, 기타 영양위험요인	대상자 등록, 자격재판정, 맞춤형 영양상담 및 교육 제공	

- ※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상자 등록 및 영양교육, 보충식품 배송 등 영양플러스사업 서비스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계속)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의 원활한 배송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정보제공 범위	정보의 제공대상	정보의 보유기간
이름, 집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보충식품 배송업체 : (보건소에서 수정하여 쓰도록 함)	보충식품 납품 및 배송하는 기간까지

- 영양플러스사업의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의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에 아래의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보제공 범위	정보의 이용목적	정보의 보유기간
연구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	사업의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해당 연구의 진행기간

- 전자정보의 관리 : 개인정보에 대한 전자화 정보 관리는 지역보건법 제30조의 4에 의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행 관리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충식품은 배송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 : 20 년 월 일
(서명)

법정대리인 : 20 년 월 일
(서명)

(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____년 ____월 ____일부로 (____)보건소 영양플러스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영양플러스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또는 퇴직 후에도 타인이나 공중에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영양플러스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납품 및 배송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며 납품 및 배송 기간이 지나 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
4. 본인은 지입차량(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차량 등) 기사를 통한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영양플러스사업 개인정보를 취급하는데 있어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6. 본인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및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서명)

○ ○ ○ 구청장 귀하

영양플러스사업
- 영아(12개월이하) 보호자용 설문지 1-

시·도명	보건소명	대상자 성명 : _____ (연령 _____ 세)
		응답자 성명 : _____ (대상자와의 관계 _____)
		조 사 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사업참여 전, 중, 종료)
		조 사 원 : _____ 서명

◇ 이 설문을 작성하기 전까지 교육에 참여한 횟수는? _____ 회

- ※ 사업 중과 사업 후의 응답자는 사업 전의 응답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 ※ 설문지 1을 수거한 후에 설문지 2로 진행합니다.

A. 다음의 사항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O,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X로 대답해 주십시오.

1. 생후 6개월까지는 모유만으로도 영아의 충분한 영양공급이 가능하다. ()
2. 일반우유(생우유)는 생 후 12개월이 지나서 먹이는 것이 좋다. ()
3. 모유에는 모유만 갖는 면역물질이 있어 아기의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
4. 모유에는 영양소가 부족하므로 조제분유를 먹이는 것이 아기의 건강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
..... ()
5. 생후 6개월이 되면 가능한 한 빨리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 ()
6. 이유보충식으로 생후 4-6개월경에 쌀을 갈아 조리한 미음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 ()
7. 이유보충식 진행에서 달걀은 노른자보다 흰자를 먼저 주는 것이 좋다. ()
8. 이유보충식을 준비할 때에는 아기가 잘 먹도록 간을 적당히 하여 준다. ()
9. 이유보충식을 먹일 때 아기가 설사를 하거나 두드러기 반응을 보여도 곧 익숙해질 것이므로
계속 주는 것이 좋다. ()
10. 이유보충식을 먹일 때는 아기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젓병에 넣어서 먹이는 것이 좋다. ()

영양플러스사업
- 영아(12개월이하) 보호자용 설문지 2 -

B. 다음의 사항에 대해 당신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단, 아직 이유식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안의 글을 보고 생각을 답해주세요

	문 항	1	2	3	4	5	6	0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닌 편이다	약간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모체와 아기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	아기가 잠잘 때 젖(병)을 물고 자지 않도록 노력한다(노력할 것이다)							
3	시판 이유보충식 보다는 가정에서 만든 이유보충식을 먹이려고 노력한다(노력할 것이다)							
4	이유보충식으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할 때는 한번에 한 가지씩 소량을 주어 반응을 살펴려고 노력한다(노력할 것이다)							
5	아기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이유보충식을 진행하려고 노력한다(노력할 것이다)							
6	이유보충식을 젖병이 아닌 손가락으로 먹이도록 노력한다(노력할 것이다)							
7	음식을 흘리더라도 아기가 스스로 먹도록 격려한다(격려할 것이다)							
8	이유보충식에 간을 하지 않는다(않을 것이다)							
9	이유보충식을 만들 때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사용하여 위생적으로 조리하려고 노력한다(노력할 것이다)							
10	이유기부터 다양한 식품을 소개하여 편식을 예방하고 좋은 식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일생의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양플러스사업

- 유아(만1세~만6세미만) 보호자용 설문지1 -

시·도명	보건소명	대상자 성명 : _____ (연령 _____ 세)
		응답자 성명 : _____ (대상자와의 관계 _____)
		조 사 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사업참여 전, 중, 종료)
		조 사 원 : _____ 서명

◇ 이 설문을 작성하기 전까지 교육에 참여한 횟수는? _____ 회
 ※ 사업 종과 사업 후의 응답자는 사업 전의 응답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 설문지 1을 수거한 후에 설문지 2로 진행합니다.

A. 다음의 사항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O,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X로 대답해 주십시오.

1. 어린이의 경우 세 끼 식사만 잘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 ()
2.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곡류와 채소보다는 고기나 생선 위주의 식사가 필요하다. ()
3. 어린이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 하루에 우유를 두 컵 이상은 마셔야 한다. ()
4. 어린이의 적절한 성장을 위해 매일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중의 적어도 한 가지는 먹이는 것이 좋다.
..... ()
5. 채소와 과일은 모두 같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종류를 먹일 필요는 없다
..... ()
6. 과자와 음료수는 어린이의 간식으로 적당한 식품이다. ()
7. 어린이의 빈혈 예방을 위해 권장되는 식품은 살코기와 달걀 등이다. ()
8. 어린이가 끼니를 거르면 다음 끼니에 과식을 하게 되어 비만이 될 수도 있다. ()
9.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우유는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 ()
10. 성장기 어린이에게 건강한 뼈의 성장을 위해서는 철의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

영양플러스사업
- 유아(만1세-만6세미만) 보호자용 설문지2 -

B. 다음의 사항에 대해 당신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1	2	3	4	5	6	0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닌 편이다	약간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어린 시절에 좋은 식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	아이가 여러 가지 채소를 매끼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3	아이가 우유를 하루 2컵 이상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한다.							
4	아이의 매 끼 식사에 곡류, 채소류 및 단백질 식품(고기, 생선, 달걀, 콩제품)을 포함시켜 균형 있는 식사가 되도록 배려한다.							
5	아이가 가능한 한 밖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권하는 편이다.							
6	아이가 세 끼 식사와 간식을 규칙적으로 하도록 배려한다.							
7	아이가 다양한 음식을 접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8	아이의 간식으로 과자류나 탄산음료, 가당음료 보다는 과일이나 우유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9	아이가 식구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10	식사 전에 아이가 손을 깨끗이 씻도록 가르친다.							

영양플러스사업
- 임신부용 설문지 1-

시·도명	보건소명	대상자 성명 : _____ (연령 _____ 세)
		응답자 성명 : _____ (대상자와의 관계 _____)
		조 사 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사업참여 전, 중, 종료)
		조 사 원 : _____ 서명

◇ 이 설문을 작성하기 전까지 교육에 참여한 횟수는? _____ 회

※ 사업 중과 사업 후의 응답자는 사업 전의 응답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 설문지 1을 수거한 후에 설문지 2로 진행합니다.

A. 다음의 사항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O,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X로 대답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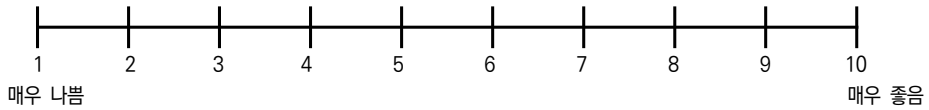
1. 임신부에게 권장되는 칼슘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루에 우유 1컵을 마시면 된다. ()
2. 임신·수유부의 빈혈예방을 위해 권장되는 식품은 살코기와 달걀 등이다. ()
3. 채소와 과일은 모두 같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 두가지만 섭취하면 된다. ()
4. 임신 중 1-2잔의 술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만 많이 마실 경우 유산이나 기형아 출산 등을 가져올 수 있다. ()
5. 엄마와 아기의 튼튼한 뼈와 치아를 위해서는 칼슘의 섭취가 중요하다. ()
6. 임신 중 적절한 체중 증가는 10-14kg 정도이다. ()
7. 임신 중 운동을 할 경우 유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로 피하여야 한다. ()
8. 모유 수유는 엄마의 체중 및 체형관리에는 방해가 되지만 아기의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 ()
9. 조제분유에는 모유보다 면역물질이 더 많이 들어있다. ()
10. 임신 중 적절한 양의 식사와 운동으로 적절한 체중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임신중독증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

영양플러스사업
- 임신부용 설문지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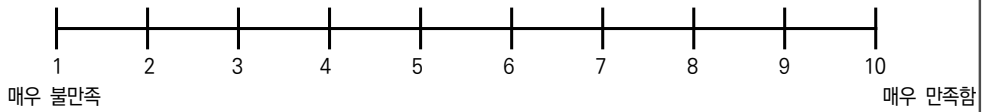
B. 다음의 사항에 대해 당신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1	2	3	4	5	6	0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닌 편이다	약간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자신과 아기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	자신과 아기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려고 노력한다.							
3	하루에 우유를 3컵 이상 마시려고 노력한다.							
4	매끼 식사에 곡류, 채소류 및 단백질 식품(고기, 생선, 달걀, 콩제품)을 함께 섭취하여 균형 있는 식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5	가능한 한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6	술을 절대로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7	카페인(커피, 홍차, 콜라 등)을 적게 마시려고 노력한다.							
8	적당한 활동량을 유지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9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식품을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10	나는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도록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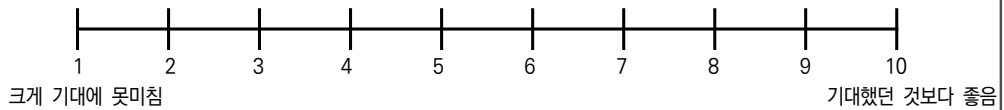
8. 본 사업의 전반적인 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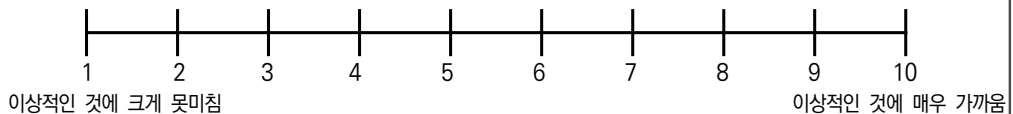
9. 전반적으로, 영양플러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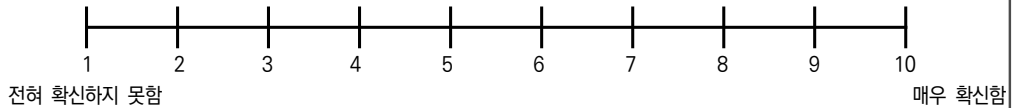
10. 본 사업이 귀하가 기대하셨던 것과 비교하여 어떠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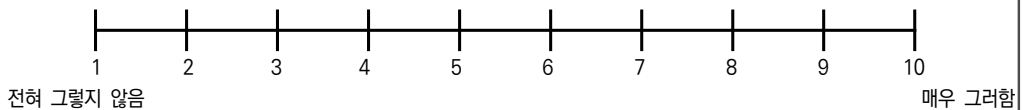
11. 본 사업이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 본 사업이 앞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좋은 사업이 될 것임을 확신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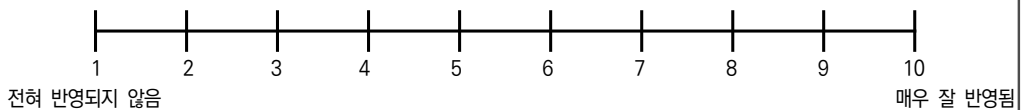
13. 주위에 영양플러스 사업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본 사업에의 참여를 권하고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4. 본 사업에 참여하시는 중에 담당자에게 사업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점이나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점을 이야기하신 일은 몇 회나 됩니까?

() 회

15. 14번의 경험이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이야기 한 부분이 얼마나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6. 본 사업에서 불만스러웠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양플러스사업 실제 거주지 확인서

실제 거주지 확인서

대상자 _____

세대주 _____

본인은 위 가구의 실제 거주지가 (주소) _____ 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에 의한 위 가구의 거주지 확인이 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으며, 위 주소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연락처) _____ (실거주 확인자) _____ (인)

담당자 _____ (인)

영양플러스사업 방문교육 (개인화일용)

가구ID		대상자대표 성명	
가구주성명		대상자대표 주민등록번호	
주소			
집전화번호		핸드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예/아니오	자부담대상	예/아니오

※ 대상자대표가 아래 대상구분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정보

(영유아) 보호자명		(영아/출산수유부) 수유방법	완전모유수유/혼합수유/조제유
(임신부) 임신주수		(출산수유부) 출산후개월수	

가족 중 영양플러스사업 수혜자					
	ID	성명	대상구분	보충식품 패키지명	연령
1					
2					
3					
4					

대상구분변경 및 패키지 구분변경기록				
판정일	대상자ID	대상구분	보충식품패키지	기타사항

주요변경내용

I. 개요

II. 추진방향

III. 사업내용

IV. 사업지침

V. 행정사항

VI. 참고자료

VII. 관련 서식

보충식품 배달 확인증(1차)

- 대상자 성명 :
- 배달장소 :
- 전화번호 :

보충식품패키지						
1 (0~5개월)	2 (6~12개월)	3 (1~5세)	4 (임신·수유부)	4-1 (출산 후 7~12 개월까지 혼합 수유부)	5 (출산부)	6 (완전모유 수유부)
<input type="checkbox"/> 조제분유 배달양:	<input type="checkbox"/> 조제분유 배달양: ----- <input type="checkbox"/> 쌀 <input type="checkbox"/> 달걀 <input type="checkbox"/> 당근 /애호박 <input type="checkbox"/> 감자 ----- <input type="checkbox"/> 이유식 배달양:	<input type="checkbox"/> 쌀 /보리 /현미 <input type="checkbox"/> 감자 /국수 /고구마 <input type="checkbox"/> 검정콩 /닭가슴살 통조림 /볶은팥 /시리얼 <input type="checkbox"/> 김 <input type="checkbox"/> 달걀 <input type="checkbox"/> 우유 <input type="checkbox"/> 당근 /애호박	<input type="checkbox"/> 쌀 /보리 /현미 <input type="checkbox"/> 감자 /국수 /고구마 <input type="checkbox"/> 검정콩 /닭가슴살 통조림 /볶은팥 /시리얼 <input type="checkbox"/> 김 <input type="checkbox"/> 미역 <input type="checkbox"/> 달걀 <input type="checkbox"/> 우유 <input type="checkbox"/> 당근 /애호박	<input type="checkbox"/> 우유	<input type="checkbox"/> 쌀 /보리 /현미 <input type="checkbox"/> 감자 /국수 /고구마 <input type="checkbox"/> 검정콩 /닭가슴살 통조림 /볶은팥 /시리얼 <input type="checkbox"/> 김 <input type="checkbox"/> 미역 <input type="checkbox"/> 달걀 <input type="checkbox"/> 우유 <input type="checkbox"/> 당근 /애호박	<input type="checkbox"/> 쌀 /보리 /현미 <input type="checkbox"/> 감자 /국수 /고구마 <input type="checkbox"/> 검정콩 /닭가슴살 /볶은팥 /시리얼 <input type="checkbox"/> 김 <input type="checkbox"/> 미역 <input type="checkbox"/> 달걀 <input type="checkbox"/> 우유 <input type="checkbox"/> 당근 /애호박 <input type="checkbox"/> 닭가슴살 통조림 <input type="checkbox"/> 꿀 /오렌지주스

년 월 일

배달자 성명 : (서명)
 수령자 성명 : (서명)
 (수혜대상자와의 관계 : _____)

보충식품 배달 확인증(2차)

- 대상자 성명 :
- 배달장소 :
- 전화번호 :

보충식품패키지						
1 (0~5개월)	2 (6~12개월)	3 (1~5세)	4 (임신·수유부)	4-1 (출산 후 7~12 개월까지 혼합 수유부)	5 (출산부)	6 (완전모유 수유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당근 /애호박 <input type="checkbox"/> 감자	<input type="checkbox"/> 당근 /애호박 <input type="checkbox"/> 감자 /고구마 <input type="checkbox"/> 달걀 <input type="checkbox"/> 우유	<input type="checkbox"/> 당근 /애호박 <input type="checkbox"/> 감자 /고구마 <input type="checkbox"/> 달걀 <input type="checkbox"/> 우유	<input type="checkbox"/> 우유	<input type="checkbox"/> 당근 /애호박 <input type="checkbox"/> 감자 /고구마 <input type="checkbox"/> 달걀 <input type="checkbox"/> 우유	<input type="checkbox"/> 당근 /애호박 <input type="checkbox"/> 감자 /고구마 <input type="checkbox"/> 달걀 <input type="checkbox"/> 우유 <input type="checkbox"/> 꿀

년 월 일

배달자 성명 : (서명)
 수령자 성명 : (서명)
 (수혜대상자와의 관계 : _____)

보충식품 수령확인증 (전체리스트용)

년 월 일

번호	수령인		보충식품배달장소	보충식품패키지	보충식품패키지 특이사항	확인서명
	대표가구원	가구원				

영양플러스사업 방문교육 (식물보관 및 이용상황 기록지)

가구ID	대표가구원ID
대표가구원 성명	

식품명	가구 해당식품	주요확인사항	보관상황			이용상황			
			양호	불량	불량사유	규칙적섭취	불규칙적섭취	미섭취	사유
조제분유	○, X	개봉 후 사용기간							
		기타							
감자	○, X	보관장소							
		신선도유지							
당근() 달걀()	○, X	기타							
		방장보관여부							
생() خم미() 보리쌀()	○, X	신선도유지							
		기타							
우유	○, X	보관장소							
		기타							
		별판유유 : 개봉 전 그늘진 서늘한 곳 보관							
		별판유유 : 개봉 후 방장보관							
		시유: 방장보관							
		유통기한							
		기타							

식품명	기구 해당식품	주요확인사항	보관상황			이용상황			
			양호	불량	불량사유	규격적심취	불규격적심취	미심취	사유
검정콩 () 검 () 미역 ()	○, X	개봉 후 보관방법							
		기타							
닭가슴살 통조림	○, X	개봉 후 보관용기							
		개봉 후 냉장보관							
		기타							
꿀	○, X	냉장보관여부							
		신선도 유지							
		기타							
오렌지주스	○, X	개봉 후 냉장방법							
		기타							
시판이유식	○, X	개봉 후 사용기간							
		기타							

종합의견	추가방문 필요 () 추가방문 필요없음 ()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상담 필요 () 필요치않음 ()

대상자 퇴록 확인서

시도명: _____ 보건소명: _____ 대상자명: _____ ID: _____

<보건소 보관>

대상자 퇴록 확인서

대상자 _____는 _____보건소가 시행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의 대상자로 참여하여 보충식품 및 영양교육 서비스를 충실히 받았으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퇴록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참여시작일: _____ 퇴록일: _____

퇴록 사유 :

- 영양상태 향상
- 기간만료
- 이사
- 소득수준 향상
- 영양교육 참여 및 보충식품 수령 관련 사유
- 본인 의사
- 기타 _____

년 월 일

대상자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보건소장

주요변경내용

I. 개요

II. 추진방향

III. 사업내용

IV. 사업지침

V. 행정사항

VI. 참고자료

VII. 관련 서식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영양]

발간종류		업무편람
관리번호		정책-03-20201-004-01
등록월		2021년 3월
발행월		2021년 3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층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화번호		044-202-2835 (보건복지부) 02-3781-350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www.mohw.go.kr www.khealth.or.kr
인쇄처		(주)이문기업
